2013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2014.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 차 ||

제Ⅰ장 총괄편 ····· 1

1. 추진실적 점검 개요 ····· 3
2. '1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4
3. 2013년도 투융자 실적 ····· 5

제Ⅱ장 분야별 평가편 ····· 9

제1절 보건·복지증진 ·····11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13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15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 17
1-1-3-2.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 20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23
1-1-4-1.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 26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 30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34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 37
1-1-5-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40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42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50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53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 56
1-2-1-7.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 58
1-2-1-8.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61
1-2-1-9. 분만취약지 지원 ····· 65
1-2-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68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73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75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78
1-3-2-3. 경영이양직불제 ····· 81
1-3-3-1.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농촌보육여건 개선 ··· 84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89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93
1-3-3-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95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99
1-3-4-1.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 102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104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07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 109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 112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114
1-4-3-1.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117

제2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91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121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124

2-1-3-1.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 128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 132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135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140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 143
2-2-4-1.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 145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148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 151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153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156

제3절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9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 161
3-1-1-2.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 164
3-2-1-1.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 166
3-2-1-2.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169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 171
3-2-3-1. 지역거점 기능향상 ····· 175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 179
3-3-1-2.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 182
3-3-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185
3-3-1-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188
3-3-2-1. 농어촌 도로정비 ····· 191
3-3-2-2. 교통서비스강화 ····· 193
3-3-2-3. 국고여객선건조 ····· 196

3-3-2-4. 내항여객선운임보조 ····· 198
3-3-3-1. 정보화마을 조성 ····· 200
3-3-3-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 202
3-3-3-4.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 ····· 205

제4절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9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 211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 216
4-1-3-1. 농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 221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 227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 231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235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238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 244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247
4-2-1-4. 말산업 육성 지원 ····· 250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252
4-2-2-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 256
4-2-3-1.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258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260
4-2-4-2.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 ····· 265

제5절 문화·여가여건 개선 ····· 8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269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272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274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 276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 279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 281
5-2-1-2.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운영 ····· 284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291
5-2-1-4. 문화나눔사업 ····· 294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296
5-2-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298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 300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304

제6절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309

6-1-1-1. 경관보전직불제 ····· 311
6-1-1-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314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 317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321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 323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 327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330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 332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 335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340
6-2-3-1. 해양폐기물 정화 ····· 344
6-2-3-2. 소하천 정비 ····· 347

6-2-3-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 351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 353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 356
6-3-1-3. 축산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 362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 ····· 366
6-3-1-5. 농산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369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375
6-3-2-2.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 382

제7절 지역역량 강화 ····· 385

7-1-1-0. 단계별 ·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 387
7-1-2-0.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 392
7-2-2-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 394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395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 396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398
7-4-1-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401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 403
7-4-2-2.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 ····· 405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 94

제Ⅰ장
총 괄 편

1 추진실적 점검개요

❏ **점검 주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 **점검 대상** :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14개 시·도에서 수행한 '13년도 시행계획 127개 과제

❏ **점검 절차**

- ○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 통보(사무국, '14.1월)
- ○ 과제별 '13년도 추진실적 작성(각 부처, '14.2월)
- ○ 추진실적 종합·분석(사무국) 및 위원회 보고(5월)
- ○ 국회 제출(6월까지)

❏ **점검 방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추진성과, 예산집행률 등 분석

❏ **점검 방식**

기존 방식

모든 과제

추진실적 + 자체점검평가
(각 부처 제출)
⇩
점검평가단 평가
(2개월 동안 서면 평가)

이원화

새로운 방식('11년~)

모든 과제(127개)

추진실적(각 부처 제출)
⇩
사무국에서 종합 · 정리

주요 정책(2개 과제군)

전문지원기관에서 심층평가
(각 부처·지자체 협조)

2 '1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2013년도 투융자 실적**은 **7조 5,390억원**으로 2013년도 투융자 계획(7조 6,249억원) 대비 98.8% 집행

❑ **(보건·복지)** 농어업인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개선(1조 6,035억원, 계획대비 100.9%)

❑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특성화 학교 육성**,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교육 기회 제공(5,667억원, 계획대비 112.6%)

○ 전원학교(156개교), ICT 활용 지원(300개교),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20개교)

❑ **(기초인프라) 읍-면 중심지 등 거점지** 정비, 주택·상하수도·교통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지원(2조 3,200억원, 계획대비 100%)

○ 지역개발 정책을 **생활체감형**으로 전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립(9개소), 현장포럼 확산(234개소) 등 **주민주도형 마을발전 지원**

❑ **(경제활동)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촌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7,468억원, 계획대비 99.7%)

○ 지역특화자원을 바탕으로 특화농공단지 조성(22개소)

❑ **(문화·여가) 농어촌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순회 서비스 확충**으로 문화향유 기회 증진(1,704억원, 계획대비 99.5%)

❑ **(환경·경관)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2조 763억원, 계획대비 103%)

❑ **(지역역량)** 귀농귀촌종합지원을 통해 **농어촌 인구유입·정착 지원,** 주민·마을리더 교육을 통해 발전역량 강화(553억원, 계획대비 96.7%)

3 2013년도 투융자 실적

❑ **2013년도 투융자 실적은 7조 5,390억원으로 계획**(7조 6,249억원) **대비 98.8% 집행**

○ **재원별 : 국비** 4조 1,636억원(55.2%), **지방비** 2조 7,748억원(36.8%), **민자 등 기타** 6,006억원(8.0%)으로 구성

○ **분야별 :** 보건·복지 1조 6,035억원, 교육 5,667억원,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2조 3,200억원, 경제활동다각화 7,468억원, 문화·여가 1,704억원, 환경·경관개선 2조 763억원, 지역역량강화 553억원

○ **기관별 :** 미래부 155억원, 교육부 3,810억원, 안행부 221억원, 문체부 1,714억원, 농식품부 3조 6,187억원, 복지부 8,844억원, 환경부 1조 2,195억원, 고용부 10억원, 여가부 739억원, 국토부 849억원, 해수부 1,619억원, 소방청 5,166억원, 농진청 363억원, 산림청 1,879억원, 지자체 1,639억원

❑ **주요 사업별 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집행율
합 계			76,249	75,390	98.8
보건복지증진	소 계		15,887	16,035	100.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761	1,761	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059	1,059	100.0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농식품부	736	736	100.0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해수부	14	14	100.0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수부	782	782	100.0
	농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농진청	4	4	100.0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안전기술 개발	농진청	8	8	100.0
	농작업안전모델시범 및 편이장비 지원	농진청	85	84	98.8
	농작업재해예방체험매체개발 등	농진청	6	6	100.0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식품부	15	15	100.0
	농어촌응급의료인프라확충	복지부	199	234	117.6
	농어촌응급의료인프라확충	산림청	-	5	-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집행율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복지부	891	882	99.0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1,137	1,120	98.5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복지부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복지부	6	6	100.0
	농어촌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복지부	40	40	100.0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79	79	100.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복지부	496	496	100.0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자체	70	307	438.6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복지부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농식품부	237	227	95.8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식품부	18	18	100.0
	경영이양 직불제	농식품부	624	624	100.0
	①농산어촌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49	50	102.0
	②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농식품부	646	582	90.1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복지부	5,900	5,900	100.0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가부	1	1	100.0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진청	84	78	92.9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부	11	10	90.9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지자체	50	47	94.0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농식품부	13	13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여가부	646	646	100.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여가부	92	92	100.0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71	71	100.0
	농업인 복지시책 홍보강화*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28	28	100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식품부	29	11	37.9
교육 여건 개선	소 계		5,034	5,667	112.6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부	134	190	141.8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737	973	132.0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교육부	160	247	154.4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지자체	60	95	158.3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농식품부	145	144	99.3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자체	-	1	-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195	191	97.9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육부	25	25	100.0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교육부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부	65	167	256.9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지자체	631	419	66.4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311	311	100.0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117	117	100.0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부	1,787	2,017	112.9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지자체	31	99	319.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자체	636	671	105.5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교육부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집행율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소 계		23,200	23,200	100.0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사업)**	농식품부	13,202	11,585	87.8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식품부	375	330	88.0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농식품부	3	-	-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농식품부	241	-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식품부	42	59	140.5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5,000	4,718	94.4
	농어촌주택 스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환경부	480	480	1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환경부	4,524	4,519	99.9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38	38	100.0
	농어촌 도로정비	안행부	145	146	100.7
	교통서비스강화	국토부	877	849	96.8
	국고여객선건조	해수부	8	8	100.0
	내항여객선운임보조	해수부	180	180	100.0
	정보화마을 조성	안행부	75	75	100.0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농식품부	81	75	-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해수부	-	12	-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미래부	127	127	100.0
경제 활동 다각화	소 계		7,488	7,468	99.7
	포괄보조사업(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	5,436	5,088	93.6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진청	4	5	125.0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농식품부	23	23	100.0
	소규모농업인 창업활동 및 소득화 지원	농진청	106	106	100.0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진청	5	5	100.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	295	256	86.8
	농가-마을-거점별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해수부	-	160	-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청	972	972	100.0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361	363	100.6
	말산업 육성 지원	농식품부	-	209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174	167	96.0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	-	6	-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문체부	48	45	93.8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진청	64	64	100.0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	농식품부			
문화 여가 여건 개선	소 계		1,713	1,704	99.5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체부	156	156	100.0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미래부	37	28	75.7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문체부	38	38	100.0
	농어촌작은도서관 조성	문체부	15	15	10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문체부	8	8	100.0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체부	29	29	100.0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체부	9	9	100.0
	지방문화원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41	41	100.0
	문화나눔사업	문체부	493	493	100.0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계 획	실 적	집행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체부	12	12	100.0
	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체부	134	134	100.0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문체부, 농식품부	11	11	100.0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확대	문체부	730	730	100.0
환경 경관 개선	소 계		20,157	20,763	103.0
	경관보전직불제	농식품부	200	201	100.5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식품부	483	489	101.2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243	243	100.0
	농어촌형 경관보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	15	15	100.0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기술 구축	농진청	3	3	100.0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4,909	4,924	100.3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89	89	100.0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농식품부	2,530	3,490	137.9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농식품부	819	818	99.9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64	98	153.1
	해양폐기물 정화	해수부	175	172	98.3
	소하천 정비	소방청	5,166	5,166	100.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204	204	100.0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206	271	131.6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지원	농식품부	1116	792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지원	해수부	-	281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2,213	1,879	84.9
	가축분뇨처리 지원	농식품부	1,425	1,334	93.6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농식품부	83	77	-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해수부	-	8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	환경부	2	2	10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	산림청	25	25	100.0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농식품부	187	182	97.3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572	553	96.7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254	251	-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해수부	-	3	-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지자체	-	1	-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농식품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농식품부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부	-	1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식품부	276	257	93.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	농식품부	42	40	95.2

* : 비예산 과제

**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실적은 기존 과제 중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소생활권 및 지역거점 기능 향상을 포함

*** :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업은 기존 과제 중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을 포함함

**** : 각 사업별 투융자 금액은 국비, 지방비, 민간 등 기타금액을 합산한 총액임

제Ⅱ장
분야별 평가편

제1절

보건·복지증진

1-1-1-1(계속)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사업목표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 사업비 정산(공단→농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 사업규모 : 월 평균 393천세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보건복지부 경감지원 22% 포함 시 5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50	8,446	-	-	-	-	-	8,446
'10	435	1,626	-	-	-	-	-	1,626
'11	413	1,608	-	-	-	-	-	1,608
'12	402	1,669	-	-	-	-	-	1,669
'13	405	1,750	-	-	-	-	-	1,750
'14	395	1,793	-	-	-	-	-	1,79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63	1,516	-	-	-	-	-	1,516
'11	413	1,718	-	-	-	-	-	1,718
'12	402	1,676	-	-	-	-	-	1,676
'13	393	1,761	-	-	-	-	-	1,76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이 전년('12) 대비 5.6%가 증가하여, 당초 목표치 대비 70.0% 달성

* 1인당 건강보험료 지원액 : ('12) 779천원 → ('13) 823천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당해년도 1인당 지원액 -전년도 1인당지원액)/전년도 1인당 지원액×100	%	8.0	5.6	7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3년 월평균 393천세대의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

1-1-2-1(계속)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사업시행주체 : 국민연금공단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 사업비 정산(공단→농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인 가입자
  -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초과 : 35,550원/월 정액 지원
- 사업규모 : 월 평균 285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최대 5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0	5,058	-	-	-	-	-	5,058
'10	230	940	-	-	-	-	-	940
'11	229	905	-	-	-	-	-	905
'12	230	924	-	-	-	-	-	924
'13	248	1,084	-	-	-	-	-	1,084
'14	263	1,205	-	-	-	-	-	1,20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34	861	-	-	-	-	-	861
'11	256	984	-	-	-	-	-	984
'12	266	924	-	-	-	-	-	924
'13	285	1,059	-	-	-	-	-	1,05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당해년도 1인당 지원액-전년도 1인당 지원액)/전년도 1인당 지원액×100	%	8	1.2	1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경영주가 아닌 여성협업농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월 평균 285천명에게 1,059억원 지원

○ 미흡한 점

- '10년 기준소득금액 동결 이후 상향조정이 없어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최대 지원금액이 월 35,550원으로 유지되어, 1인당 지원액의 상승폭이 저조

1-1-3-1(계속)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재해보험팀	담 당 자	김신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792	이메일	naoko66@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 총사업비 : - ('13년까지 기투자액 3,154억원)

○ 사업규모('13) : 농림업인 805천명, 농기계 40천대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시행주관 :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실익증대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을 연차적으로 산재보험 수준까지 확대

- '14년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를 산재보험 수준인 1억원으로 확대하고 및 재해장해·장제비·임작업재해보장 특약 등 상품개선

* 사망시 보장수준 : ('06) 25백만원 → ('07) 35 → ('08) 45 → ('09) 60 → ('10) 60 → ('11) 70 → ('12) 80 → ('13) 90 → ('14)100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을 위한「농어업인안전보험법」제정 추진으로 안정된 법적근거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31	1,996	-	-	-	-	1,996	3,992
'10	835	332	-	-	-	-	332	664
'11	848	360	-	-	-	-	360	720
'12	865	392	-	-	-	-	392	784
'13	883	443	-	-	-	-	443	886
'14	900	469	-	-	-	-	469	93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804	332	-	-	-	-	332	664
'11	816	360	-	-	-	-	360	720
'12	803	358	-	-	-	-	358	716
'13	805	368	-	-	-	-	368	736

- '13년 상품개선 등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가입률 정체, 향후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가입률 제고 필요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업인재해공제는 목표 가입률 57.7% 대비 2.0%P 부족한 55.7%로 계획대비 96.5% 달성으로 목표 미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재해공제 지원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률(%)	(당해년도 재해공제 가입자 수 / 공제가입대상 농림업경제활동 인구수) × 100	%	55.7	54.2	97.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대하여 58천건에 64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안정에 기여
  - · 최고 84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지병(암·뇌졸증·심근경색 등)이 있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의 사업대상 및 보장수준 지속 확대
  - ·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시 보상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
    - * 사망 시 보상금액 : ('09~'10)60백만원 → ('11)70 → ('12)80 → ("13)90 →('14)100
- 농업인안전보험 의료비 부(不) 담보형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실손 의료비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낭비 방지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법안 제출, '13.12.27)을 추진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등 농업인안전보험의 안정된 법적근거 마련

○ 미흡한 점 및 향후 추진과제

-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현재 가입연령 만 15~84세를 최고 87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예산·보험료 등의 문제로 미반영, 향후 가입연령 연장 필요
- 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 등 고가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종합보험 예산 조기소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현재 4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의 전국사업으로 확대

○ 건의사항

- 보험료 인상 및 가입자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 담당자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1-1-3-2(계속)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담 당 자	김붕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0-5467	이메일	kbh934@korea.kr

1. 사업목표

○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이 일상적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배우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 및 임의 가입자 제외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어업인 72천 명 및 어업인의 배우자 1.4천여 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 지원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50%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제2항

3. 연차별 추진계획

○ 어업인 감소(통계청 자료)를 감안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대상의 기준을 축소 조정

- '09년~'10년 : 78천 명, '11년~'13년 : 72천명, '14년 이후 : 62천 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 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2,021	7,388						7,388
'11	24,423	1,274						1,274
'12	26,613	1,263						1,263
'13	30,266	1,440						1,440
'14	24,741	1,509						1,509
'15	25,978	1,902						1,902

- 2014년 이후 어업인 감소에 따른 가입대상의 축소로 인하여 당초 기본계획 보다 지원금액 감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 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24,441	1,084						1,084
'12	26,097	1,186						1,186
'13	30,294	1,354						1,354

4. 성과목표 달성도

○ '12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가입률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어업인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대상 어업인) × 100	%	40	41.2	103.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수산업 종사자의 국가 복지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인 안전공제의 인수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입 심사 간소화
  · 과거 재해 치료이력 존재 시 : ('12년) 가입 불가 → ('13년) 가입 가능
- 특약보험료도 국고보조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가입제고에 기여
  · 2014년부터 특약 2종(장제비지원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대해 추가 국고보조가 가능토록 예산에 반영

○ 미흡한 점

- 성과목표 초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공제료 부담을 이유로 고액형 가입 보다 절약형 및 표준형에 가입을 하고, 중도 가입해지(어선원 보험으로 전환 또는 어업활동 중단·전업 등에 의한 중도 계약 해지) 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액(13백만 원) 및 보조금 불용액(96백만 원) 발생

* **(계획)** 30,266명 보조 1,440백만 원 → **(실적)** 30,294명(100.1%) 보조 1,344백만 원(93.3%)

○ 건의사항

- 어업인의 경우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가 농업인 대비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동일한 국고 보조율(50%)을 적용하고 있어 자담분이 많아 보험가입을 꺼리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
- 따라서 수산인안전공제의 국고 보조율을 농업인과 차등(50→70%) 하여 어업인들의 공제료 부담 완화로 가입 활성화 필요

1-1-3-3(계속)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담 당 자	이진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471	이메일	zavane@korea.kr

1. 사업목표

○ 어선원 및 어선 보험가입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 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8 ~ 계속(2004년부터 정책보험으로 전환)

○ 총사업비 :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4,501억 원)

○ 사업규모 : 어선원 117천 명, 어선 67천 척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 지원(15~71%)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위탁)

○ 추진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9조, 제1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2,172		130,635				382,807
'10	어선원 35,016명 어 선 5,389척			62,921				62,921
'11	어선원 35,156명 어 선 6,364척			67,714				67,714
'12	어선원 35,366명 어 선 7,233척	72,700						72,700
'13	어선원 36,651명 어 선 9,415척	78,222						78,222
'14	어선원 37,837명 어 선 10,872척	101,250						101,25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어선원 34,899명 어 선 7,233척			62,921				62,921
'11	어선원 36,112명 어 선 8,494척			51,569				51,569
'12	어선원 37,426명 어 선 10,360척	72,700						72,700
'13	어선원 38,504명 어 선 11,591척	78,222						78,222

- '11년 국고지원 예산 대비 실적 부진 사유
  - ·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移用 감액(16,145백만원)되었으나, 보험사업 운용상 결손금 지원을 1년간 유예한 것으로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보험료는 계획대로 지원됨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104.4%,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126.5% 달성
  - ·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험 가입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어선원보험 가입어선 척수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어선 척수) × 100	%	16.0	16.7	104.4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어선보험 가입어선 척수 / 어선보험 가입대상 어선 척수) × 100	%	13.6	17.2	126.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재해보상 정착에 기여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어선원보험 가입률	14.3%	16.1%	16.7%
어선보험 가입률	11.9%	15.4%	17.2%

- 어선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선기관 무상점검 서비스 시행으로 미가입어선에 대한 보험가입 유도

○ 미흡한 점

- 보험가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어선의 87%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대상)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5톤 미만 가입 현황>

구분	2012년말			2012년말			증(△)감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가입	가입률
어선원보험(명)	82,885	6,293	7.6	82,885	7,062	8.5	769	0.9
어 선보험(척)	58,523	4,884	8.3	58,523	5,776	9.9	892	1.6

○ 건의사항

- 5톤 미만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행 10톤 미만 일괄 적용하고 있는 국고 보조율 차등 지원 필요
  - **(현행)** 5톤 미만 70% → **(조정)** 5톤 미만 80%

1-1-4-1(계속)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 당 자	채혜선
전화번호	031-290-1939	이메일	hyeseon@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직업성 질환 발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지원

○ 농업·의료·공학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정보교류를 통한 농작업안전보건 쟁점 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 사 업 비 : ('13) 4억

○ 사업규모 : 1소과제 2세부과제

○ 지원형태 : 시험연구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 주요사업 내용

-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한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 통계 마련
- 농작업성질환 예방센터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운영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통계 제 14303호)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
  - · 농업인 건강연구회 및 농업인 현장지원 등 수행
  - · 전문가 세미나, 심포지엄, 학회활동 활성화 등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000농가 , 78마을			1,860				1,860
'10	38			380				380
'11	40			370				370
'12	10,000농가			370				370
'13	10,000농가			370				370
'14	10,000농가			370				37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8			370				370
'11	40			370				370
'12	10,000농가			370				370
'13	10,000농가			370				37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농작업재해 조사	조사대상 표본추출수	호	10,000	10,000	100
	대내외 협력건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 건수	회	20	22	11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전국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 업무상 손상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대책수립의 근거자료 마련
  - · 조사대상 : 전국 400개 동읍면의 10,000농가, 19세 이상 농업인
  - · 주요 분석내용 : 농작업 관련 손상의 규모 및 분포, 손상으로 인한 휴업 및 치료 일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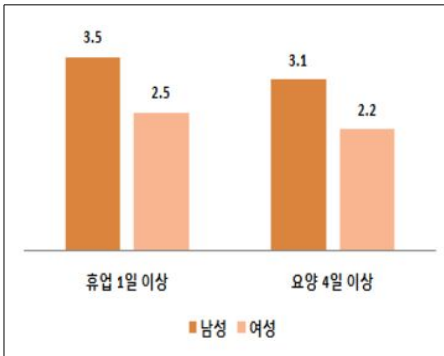

<성별 농작업관련 손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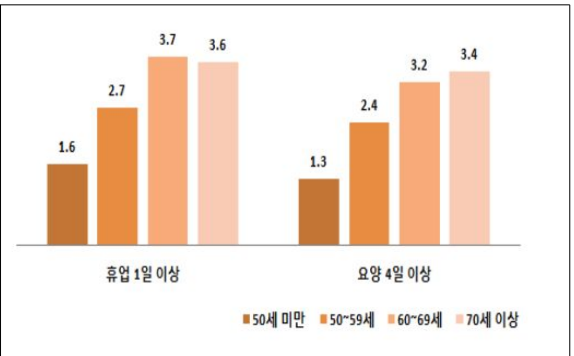

< 연령별 농작업관련 손상률>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연중)
  - · 농업인 건강연구회 개최(6회) 및 뉴스레터 발송(7회)
  - · 농업인 현장 기술 및 교육 지원(6회)
  - · 농작업안전 한일공동 심포지엄(8.9, 농촌진흥청)
  -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공동학술대회(11. 8, 울산)
  - · 해외과학자 초청 세미나(1회, 12.9) : 동핀란드대학, 끼모라사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공동개최_원장(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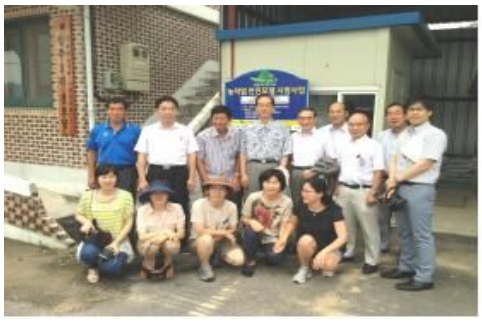
<한일 심포지엄 및 현장방문(8. 9)>

<농업인건강연구회 세미나(매월)>

<농업인건강연구회 뉴스레터(매월)>

○ 건의사항

- 농업활동으로 인한 건강안전 특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연구 과제 선정 및 연구인력 확보 필요
- 관련 전문가 활용과 지속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1-1-4-2(계속)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 당 자	이경숙
전화번호	031-290-1937	이메일	leeks81@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인 유해환경 노출조사를 통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정 근거 마련

○ 농작업 유해요인 증가에 따른 농작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관리기술 개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

○ 사 업 비 : ('13) 8억

○ 사업규모 : 3 소과제 8 세부과제

○ 지원형태 : 시험연구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주요 사업내용

-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고령농업인 농업활동 영향요인에 따른 지원 방안 연구
- 기능성 농작업화 개발
- 고령농업인의 상지작업 개선 연구
- 축산작업자의 보호장비 개발 등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지역농업의발전과 농촌주민 복지증진, 농업관련 기술·연구 진흥,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등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 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 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작목별/작업별 유해요인 노출조사 및 편이장비 개발 사업 추진
- 작목/작업을 중심으로 작업특성에 맞춘 유해환경 노출 조사 및 개인보호구/편이장비를 다양하게 개발·상품화 지원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과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			3,400				3,400
‘10	5			400				400
‘11	5			800				800
‘12	8			900				900
‘13	8			800				800
‘14	20			500				500

- 일반예산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			400				400
'11	5			800				800
'12	8			900				900
'13	8			800				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2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안전기술 개발	영농활용	제안자 참여	건수	5	6	120
	산업재산권 획득	발명자 참여	건수	5	13	26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작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를 개발하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현장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 활성화 지원
  - · 산업재산권 출원(8종) : 농업용 가위, 재귀반사 기능 작업복 등
  - · 산업재산권 특허등록(5종) : 무릎보호 삼각쿠션, 전동식 가위 등
  - · 산업체 기술이전(2종) : 손잡이 회전 가위, 전동식 전지가위
- 양돈작업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작업지침서 개발 보급 : 1,000부

<기술이전>
손잡이 회전가위

<기술이전>
농약 방제복 및 여름용 농작업복

양돈 작업자
안전보건관리

- 농작업 현장의 유해요인 노출평가를 통하여 경감방안 기술개발의 기초 및 유해요인 안전관리 자료집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 대상작목 : 생강(서산, 태안), 백합(인제, 태안), 옥수수(인제, 홍천)
  - · 측정항목 : 총분진, 엔도톡신, 가스,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생강 작목 작업 및 작업별 측정 유해요인>

	정식	생강 반출(생강저장고)	수확
작업방식			
작업 시기 및 일 작업시간	기간 : 4월~5월 시간 : 4~8시간/일	기간 : 5월~ 9월 시간 : 5~8시간/일	기간 : 11월초순 시간 : 6~8시간/일
측정 유해요인	근골격계 위험요인, 분진	근골격계 위험요인, 산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근골격계 위험요인, 분진

○ 미흡한 점 : 조사대상 농가 확대가 필요하나 연구인력이 부족함

○ 건의사항

- 농업활동 유해요인들이 농업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농가의 유해요인 노출평가와 더불어 작업자의 건강영향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범위 확대 및 연구인력 확보 필요

1-1-4-4(계속)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 당 자	농촌지도사 유지현
전화번호	031-299-2673	이메일	puppy337@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13) 85억원

○ 사업규모 : 181개소

- 안전모델 시범 33개소, 편이장비 지원 140개소, 위원회 운영 8개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절차

- 사업신청(마을) → 신청마을 심사 및 확정(시군, 시도)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마을)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군) → 사업추진 → 기술지원 및 평가(시도, 중앙)

○ 추진내용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안전보건 문제진단·개선방안 컨설팅, 마을·품목별 작업개선, 농작업 안전 교육, 건강관리 등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지역·작목별 컨설팅을 통한 편이장비 선정, 개선·개발 및 보급 등

-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도단위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지원(회의, 현장방문 컨설팅, 현장 교육, 행사, 농작업 안전자료 제작 등)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제②항(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안전모델	농작업위원회	편이장비	농약중독예방	포도작업개선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79	32	744	36	30	5,635	18,500	1,250		25,385		50,770
'10	38	8	135	10	20	1,360	3,369	450		5,179		10,358
'11	40	8	143	10	10	1,240	3,585	400		5,225		10,450
'12	26		141	16		1,160	3,520	400		5,080		10,160
'13	33	8	140			785	3,461			4,246		8,492
'14	42	8	185			1,090	4,565			5,655		11,31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안전모델	농작업위원회	편이장비	농약중독예방	포도작업개선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10	38	8	135	10	20	1,360	3,369	450		5,179		10,358
'11	40	8	143	10	10	1,240	3,585	400		5,225		10,450
'12	26		141	16		1,160	3,520	400		5,080		10,160
'13	33	8	140			785	3,461			4,246		8,49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사업 전후 농작업 안전 보건 실천 현황 점검	백분율 (%)	31.3	33	105.4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 효율 개선율	편이장비 도입 전후 연간 농가당 농작업 시간 분석	백분율 (%)	28	45.1	161.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의학, 인간공학, 농학 등 농작업 전문가 협력 활성화
  -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38명), 편이장비 컨설턴트(39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기술지원

  * 협의회, 사업자문, 컨설팅, 교육, 훈령개정, 책자 감수 등

- 농업인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지침서 지원
  - 현장 지도용「농작업 유해요인 개선방안」발간·보급(36작목)
  - 안전관리 기록부(2종), 폭염대비 리플릿 제작(5,000부), 농작업 안전실천 자료·장비 전시(2회)
  - 편이장비 우수개발·개량 사례집(1,000부), 변경검정 의무화 등

○ 미흡한 점

- 농업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위원 중심의 전국 협의체 육성 필요

○ 건의사항

- 고령화, 여성노동력 증가, 유해요인 증가 등에 따른 농작업 재해 발생이 높지만, 농작업 재해예방 지원 미흡

  * 재해율('12, 고용노동부) : 농업 1.3% 〉 전체산업 0.59(전체산업의 2.2배↑)

1-1-4-5(계속)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 당 자	김경란 연구관
전화번호	031-290-1888	이메일	kimgr@korea.kr

1. 사업목표

○ 유비쿼터스 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농작업 안전 가상 체험교육 등 재해예방, 안전교육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 사 업 비 : ('13) 6억

○ 사업규모 : 2 과제, 정보화 용역 1과제

○ 지원형태 : 시험연구사업 및 정보화 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 주요사업 내용

-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 고도화 사업
- 농기계 운전조작 세뮬레이터 개발
- 농기계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 등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농작업 안전관리 정보를 위한 교육 매체 개발, 보급하여 농업인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의 농작업 안전보건 사업 관리지원 강화
- 농기계 안전운전 조작 시뮬레이터 개발 보급으로 농기계 운전능력 강화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			3,300				3,300
'10	3			300				300
'11	5			1,000				1,000
'12	6			1,200				1,200
'13	3			600				600
'14	3			200				2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			300				300
'11	5			1,000				1,000
'12	6			1,200				1,200
'13	3			600				600

- ICT 정보화 사업예산 미확보에 따라 중장기 예산 감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및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발	자료개발수	개	3	3	100
	농업인 건강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자수	접속자수	회	100,000	227,430	22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작업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DVD 개발 보급 : 12개 작목, 1,000부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화 고도화 사업 추진 : http://farmer.rda.go.kr
  · ASP에서 JSP로의 컴퓨터 활용 언어기반 전환 등
- 실제운전 상황 구현가능한 트랙터 시뮬레이터 개발 1종
  · 구성요소 : 모의 운전조작장치, 컴퓨터 모델, 플랫폼, 영상장치 등
  · 교육생이 가상화면을 보면서 코스, 도로주행, 농작업 등 연습가능

<시뮬레이터 모습>

<코스연습모드>

<양돈작업 안전보건지침>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ICT 기반 U-SafeFarm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 예산 지원

1-1-5-1(계속)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사·연구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지정신청(대학병원 등→ 농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농식품부 → 신청기관) ⇒ 예산배정(농식품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농업안전보건센터 → 농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규모(사업량) :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각 센터당 연간 최대 3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액의 10%이상 자부담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5	15	-	-	-	-	-	15
'14	7	21	-	-	-	-	-	2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5	15	-	-	-	-	-	1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 운영	5개소 지정·운영	개소	5	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지정·운영을 통해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1-2-1-1(계속)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담 당 자	서민수
		담 당 자	임영실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57	이메일	resmith@naver.com
	044-202-2559	이메일	tree7070@korea.kr

1. 사업목표

○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추진체계

- (신청절차) 의료기관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선정절차) 서면평가(중앙센터) → 현지평가(중앙센터, 복지부)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 추진내용

- 응급진료권(59개) 중 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수 대비 부족한 진료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지원
- 군(郡) 지역(84개)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등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운영 지원
- 병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지원('10~'11)
- 해양경찰청 함정에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09~'12)하여 해상,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시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이송 중 필요한 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하여 치료시간 단축

○ 추진근거

- **국정과제 7-48-3 :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6조(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13년 86개소 23,372백만원 지원, '06년부터 '13년까지 992억원 지원**

연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수	-	28	37	44	48	45	52	71	86
지원액	99,187	3,667	3,275	4,305	5,950	21,549	18,558	18,511	23,372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3,342			
'10	67				23,020			
'11	69				23,400			
'12	70				22,122			
'13	63				19,890			
'14	93				24,91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5				21,549			
'11	52				18,558			
'12	71				18,511			
'13	86				23,372			

- '13년 계획대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13년 사업계획	'13년 실적
취약지역 지역기관 운영지원	64	76
취약진료권 지역센터 운영지원	8	10
취약진료권 지역센터 설치지원	2	* 운영지원으로 전환
합계	74	86

-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대상 확대(43개 군 → 모든(84개) 군 지역)와 지원액 증액 및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품질 개선 노력 유도

· 취약지 운영비 지원 중 군(郡) 지역 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13년 당초 59개 군 → 84개 군) 및 지원 예산 확보('13.06.)

· 응급진료권·지역별 응급의료인프라 수준에 따라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지역센터·기관 육성, 인프라 부족지역은 당직의료기관·야간 응급진료기간 등으로 지정·운영)

·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인을 위해 운영비를 증액하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운영비를 많이 지원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해당 센터 설립에 따른 인력 확보 불가, 사업 효과성 저조 예상에 따라 추진이 중지됨

- ‘12년 관련예산 미편성, ’11년 예산 불용, ‘10년 사업내용 변경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는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었음.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4				7,040	7,040		14,080
‘10	50				2,500	2,500		5,000
‘11	50				2,500	2,500		5,000
‘12	34				2,040	2,040		4,080
‘13	-				-			
‘14	-				-			

<시행계획 추진실적> : 인력 확보 불가, 사업 효과성 저조 예상에 따라 추진이 중지됨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0			
‘11					0			
‘12					0			
‘13					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와 실적 제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당초 43개 군(郡) 지역에서 12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기본계획 성과 목표대비 105%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郡)지역 비율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郡)단위 개수/85* 개 군(郡)) x 100	%	85	89.4**	105.2

*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어 당초 측정산식 개소수 조정(86→85)

**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67개소),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중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 및 당직의료기관(7개소), 지자체 계획(2개소)에 의한 지원 기관 수임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06년 이후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온 결과 응급의료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예산규모 : ('06년) 37억원 -> ('13년) 239억원

  * 응급의료기관 없는 군(郡) 지역: ('07)43개 -> ('10)35개 -> ('13)12개

○ 미흡한 점

-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한 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지속 향상 중이나, 아직도 **응급의료기관 지정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 존재**

  * 그간 지원육성된 33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중 **법정기준 충족기관** '12년 9개 -> '13년 20개

  *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충족율 '12년 37.5% -> '13년 59.8%

○ 건의사항

- 농식품부 제도를 활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에 따른 지자체 평가 및 보상체계 요구

  * 우리부 추진사항) 지자체합동평가에 법정기준에 충족율 포함

1-2-1-1(계속)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항공본부	담 당 자	박동선
전화번호	033-769-6039	이메일	pds1004@forest.go.kr

1. 사업목표

○ 산악사고 대비 산림청 보유 헬기 호이스트 장착을 통한 응급구조와 (사)대한산악구조협회의 산악구조대 응급구조차량 지원으로 산악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등산인구 증가로 각종 산악사고가 급등함에 따른 사고 대비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호지원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조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사)대한산악구조협회
- 사업규모(사업량) :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차량(3대), 산악구조장비(3셋트)
- 지원금액 및 형태 : 111만원(민간보조)
- 지원조건 : 보조율 100%
- 지원내용 :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차량(3대), 산악구조장비(3셋트) 구입비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3. 연차별 추진계획

○ 산악사고 대비 산림청 보유 헬기 호이스트 장착을 통한 응급구조와 (사)대한산악구조협회의 산악구조대 응급구조차량 지원으로 산악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 구축

○ 헬기 호이스트 장착 : ('10) 6대→('11) 2대→('12) 0대→('13) 0대

○ 환자 이송차량 지원 : ('10) 5대→('11) 5대→('12) 3대→('13) 4대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백만원)

	사업규모 (차량/장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	-	-		-	-	-
'10		-	-	-	3,000	-	-	-
'11		-	-	-	2,021	-	-	-
'12		-	-	-	1,859	-	-	-
'13		-	-	-	495	-	-	-
'14		-	-	-	111	-	-	-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차량/장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10		-	-	-	1,692	-	-	1,692
'11	-	-	-	-	1,683	-	-	1,683
'12	-	-	-	-	109	-	-	109
'13	-	-	-	-	495	-	-	495

4. 성과목표 달성도 : 100% 달성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환자이송차량 구입 : (계획 4대, 실적 4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응급의료 이송체계지원	산악구조 응급차량 지원율	환자이송차량 구입대수	대	4	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등산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산행 중 조난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산악사고 구조건수 : ('10) 7,781건 ('11) 7,825건 ('12) 7,935건
- 전체 구조건수 중 산악에서 의 산악에서의 구조건수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므로 산악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공 및 지상산악구조대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체계 및 구조이송을 위한 구조장비 지원

1-2-1-4(계속)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 당 자	김욱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2816	이메일	k1008w123@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2014년

○ 사업규모 : ('13)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155개소, 의료장비·차량 423개소, 도서지역 병원선 5척 수리비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2/3, 지방비 1/3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2, 지역보건법 제1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155개소, 의료장비·차량 423개소, 병원선 5대 수리비 등 총 58,801백만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4,043	-	-	-	147,022	-	441,065
'10		62,503	-	-	-	31,252	-	93,755
'11		58,931	-	-	-	29,466	-	88,397
'12		56,814	-	-	-	28,407	-	85,221
'13		58,801	-	-	-	29,401	-	88,202
'14		56,994	-	-	-	28,497	-	85,491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62,503	-	-	-	31,252	-	93,755
'11		58,931	-	-	-	29,466	-	88,397
'12		56,814	-	-	-	28,407	-	85,221
'13		58,801	-	-	-	29,401	-	88,20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 이용자 만족도 목표(91%) 대비 100% 달성
- 이용자 증가율 목표(1.5%) 대비 103%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이용자 만족도(%)	외부기관 리서치 결과	%	91	91	100
	이용자 증가율(%)	보건기관 실적자료	%	1.5	1.55	1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시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코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건기관 모델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추진

○ 미흡한 점

- 농어촌 보건기관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수요에 대응 필요

※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지원과 더불어 보건기관 인력의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도 증가

○ 건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필요) '13년 기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 69.7%을 '18년까지 85% 이상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소 3개소, 보건지소 33개소, 보건진료소 50개소 이상 신축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증진 사업 확대에 따른 기존 보건소 등 증축, 기 지원받은 보건기관노후화 진행에 따른 개보수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보건기관 건축공사비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1㎡당 공사비 지원 단가(신·증축 1,620천원)는 건설공사비지수(신·증축 1,966천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매해 노임비, 자재비 상승 등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국고지원 단가 조정 필요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자본보조와 더불어 보건기관 인력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상보조 지원 필요

1-2-1-5(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 당 자	유동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33	이메일	ydy3344@hanmail.net

1.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동 병원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13년까지 기능보강 지원실적 : 4,445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지자체자본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적십자병원 기능보강(민간자본보조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31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시설개선 및 장비를 보강하는 기능보강 예산 약 600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개소			249,744		214,344		464,088
'10	26			39,542		31,342		70,884
'11	26			50,012		41,012		91,024
'12	28			47,290		39,090		86,380
'13	30			54,000		49,000		103,000
'14	30			58,900		53,900		112,8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6			39,542		31,342		70,884
'11	26			50,012		41,012		91,024
'12	28			47,290		39,090		86,380
'13	36			59,975		51,975		111,950

- '13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경예산(104억원)이 편성되어 계획 대비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이 증가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방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및 운영평가 평균 점수 모두 목표치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의료원 육성 등	지방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의료원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점	82.9	84.2	100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총점수 / 지역거점공공병원 수	점	67.9	69.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업인 많이 이용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등이 향상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됨

○ 미흡한 점

-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도의 지방비 매칭이 어려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건의사항

- 농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1-2-1-6(계속)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 당 자	김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09	이메일	hs3903@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함

○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으로 확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등에 배차하여 의료공백 최소화

2.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등과 같은 보건의료 취약지 위주로 적정 배치

- 특히,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 인원을 확충 배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 지역주민의 진료공백 최소화

- '13년 말 기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3,876명 중 3,244명(83.7%)으로 전년 대비 1.9% 상향 배치

※ '12년 3,311명 (81.8%) → '12년 3,244명 (83.7%)

구분	2012년				2013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합 계	**4,046**	**2,528**	**569**	**949**	**3,876**	**2,411**	**485**	**980**
보건(지)소	3,282	1,839	535	908	3,215	1,848	457	910
병원선, 이동진료반	29	15	7	7	29	15	7	7
국·공립병원	305	282	3	20	273	219	1	53
보건단체·복지시설	57	54	0	3	31	30	0	1
교정시설 등	72	53	19	0	69	53	16	0
국가보건기관	122	107	4	11	95	82	4	9
응급의료센터 등	179	178	1	0	164	164	0	0

○ 추진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5항

3. 연차별 추진계획

○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외 예산 수반 내용이 없어 작성 생략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공중보건의사 세부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1-2-1-7(계속)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 당 자	오혜영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2816	이메일	o.hy@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정책개발·전문기술자문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2014년

○ 사업규모 : ('13) 농어촌 지역 시·군 보건소 152개소 및 하부 보건기관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건강증진재단(지역보건사업지원단)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2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기능강화 및 사업모델개발, 지자체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전문기술자문 수행,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행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8	-	-	-	-	-	2,808
'10		550	-	-	-	-	-	550
'11		533	-	-	-	-	-	533
'12		533	-	-	-	-	-	533
'13		572	-	-	-	-	-	572
'14		620	-	-	-	-	-	62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50	-	-	-	-	-	550
'11		533	-	-	-	-	-	533
'12		533	-	-	-	-	-	533
'13		572	-	-	-	-	-	572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코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건기관 모델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모형개발 및 지침개정 등 전문기술지원 수행

- 농어촌 등 지역보건취약지역에 대한 선정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관련 통계관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 지원해야할 지역 선정 및 지역특성별 사업 개발·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미흡한 점

- 농어촌 보건기관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 투자방향 정립 및 신규 사업 콘텐츠 개발 등 기술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지원과 더불어 보건기관 인력의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도 증가

○ 건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13년 기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 69.7%로 건강증진 사업 확대에 따른 기존 보건소 등 증축, 기 지원받은 보건기관 노후화 진행에 따른 개보수 등 지속적인 보건기관 시설개선 소요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사업기간 연장 필요

- (기술지원 투자 강화)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과 더불어 보건기관 인력 역량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필요

1-2-1-8.(종료)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오형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28	이메일	ohsidcd@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단년도 신규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80개 보건기관(강원도 18개 시・군)

- 강원도 보건기관 u-Health(원격건강관리) 설치현황(붙임 참조)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자, 치매환자 원격건강관리 지원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보건기관 80개소			2,000		2,000		4,000
'10								
'11								
'12				0		0		0
'13	80개소			2,000		2,000		4,000
'14				0		0		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12	80개소			2,000		2,000		4,000
'13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만성질환자, 대사증후군 및 건강증진 요구자들을 대상으로 u-IT기술을 활용한 원격관리 서비스 구현으로 농어업인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

○ 미흡한 점

- 도농 복합, 농산어촌으로 구성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편차가 큰 한계가 있음

○ 건의사항

- 향후 원격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강수준의 개선, 주요질환의 예방효과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찰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붙임>

강원도 보건기관 u-Health(원격건강관리) 설치현황

시군별	설치현황	기 추진 (2012년 말)				'13년 계획 (2013. 12월)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신규설치 / 총설치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기능 개선
계	기 관 수	249	18	102	129	80	2	30	48	24
	설 치 수 (설 치 율)	**68 (27.3%)**	**14 (77.8%)**	**12 (11.8%)**	**42 (32.6%)**	**148 (59.4%)**	**16 (88.9%)**	**42 (41.2%)**	**90 (69.8%)**	
춘천시	기 관 수	24	1	10	13	-				
	설 치 수	3		1	2	3		1	2	
원주시	기 관 수	18	1	9	8	10		5	5	
	설 치 수	2	1		1	12	1	5	6	
강릉시	기 관 수	17	1	8	9	4		2	2	6
	설 치 수	9	1	2	6	13	1	4	8	
동해시	기 관 수	3	1	3		-				
	설 치 수	없음				-				
태백시	기 관 수	2	1		1					
	설 치 수	2	1		1	2	1		1	
속초시	기 관 수	1	1			1	1			
	설 치 수	없음				1	1			
삼척시	기 관 수	15	1	8	6	1			1	
	설 치 수	6	1	2	3	7	1	2	4	
홍천군	기 관 수	27	1	8	18	18		4	14	6
	설 치 수	8	1	3	4	26	1	7	18	
횡성군	기 관 수	17	1	8	8	11		6	5	2
	설 치 수	3	1		2	14	1	6	7	
영월군	기 관 수	14	1	8	5	-				
	설 치 수	2	1		1	2	1		1	
평창군	기 관 수	23	1	7	15	12	1	5	6	
	설 치 수	3		1	2	15	1	6	8	
정선군	기 관 수	19	1	7	11	13		5	8	1
	설 치 수	3	1		2	16	1	5	10	
철원군	기 관 수	12	1	4	7	4		2	2	2
	설 치 수	4	1	1	2	8	1	3	4	
화천군	기 관 수	11	1	4	6	1			1	
	설 치 수	4	1		3	5	1		4	
양구군	기 관 수	8	1	4	3	-				2
	설 치 수	4	1		3	4	1		3	
인제군	기 관 수	11	1	5	5	-				3
	설 치 수	7	1	1	5	7	1	1	5	
고성군	기 관 수	14	1	4	9	2		1	1	1
	설 치 수	5	1	1	3	7	1	2	4	
양양군	기 관 수	11	1	5	5	3			3	1
	설 치 수	3	1		2	6	1		5	

※ 협력병원 : 4개소 → 5개소

(강원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동인병원, 속초의료원_신규)

1-2-1-9(계속)	분만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 당 자	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34	이메일	hwon0815@korea.kr

1. 사업목표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1년~ (단년도 계속)

○ 사업내용 : 분만 취약지를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능 여부로 구분하여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및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

○ 사업규모 :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9개소, 외래 산부인과 2개소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분만산부인과 9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에 40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1	3			1,875		1,875		3,750
'12	7			2,200		2,200		4,400
'13	11			3,950		3,950		7,900
'14	30			4,875		4,875		9,75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3			1,875		1,875		3,750
'12	7			2,200		2,200		4,400
'13	11			3,950		3,950		7,9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 분만취약지 지원 11개소 목표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개소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목표 대비 설치 개소수	개소	11	1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1년 시범사업 이후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외래 산부인과 등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확대(’11년 3개소→ ‘13년 11개소)

- 사업지역의 관내 분만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여 취약지 산모·신생아의 의료지원을 강화

* ‘11년~‘12년 선정기관 관내분만율 개선 : 17.1%(’11) → 18.8%(‘12) → 32.4%(’13)

○ 미흡한 점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적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모델 유연화 필요

○ 건의사항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예산의 현실화 필요

1-2-2-1(계속)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 당 자	하진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05	이메일	trevi99@korea.kr

1. 사업목표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을** 통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도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30 시군구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국비50%, 지방비50%)

○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 230 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911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시군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0	-	-	-	187,939	-	-	375,878
'12	-	-	-	-	-	-	-	-
'13	230	-	-	-	91,143	91,143	-	182,286
'14	230	-	-	-	96,796	96,796	-	193,592

- ‘13년 시도(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4,783	24,783		49,565
부산기장군					288	288		577
대구달성군					347	347		694
인천강화군					316	316		631
인천옹진군					154	154		309
울산울주군					338	338		676
경기소계					1,353	1,353		2,706
여주군					398	398		796
연천군					242	242		483
가평군					318	318		636
양평군					395	395		790
강원소계					3,056	3,056		6,112
홍천군					357	357		714
횡성군					263	263		526
영월군					279	279		558
평창군					285	285		571
정선군					272	272		545
철원군					252	252		505
화천군					236	236		472
양구군					323	323		645
인제군					265	265		530
고성군					286	286		573
양양군					237	237		474
충북소계					3,050	3,050		6,101
청원군					460	460		920
보은군					300	300		600
옥천군					361	361		723
영동군					433	433		865
진천군					295	295		589
괴산군					284	284		568
음성군					359	359		719
단양군					323	323		645
증평군					236	236		472
충남소계					2,041	2,041		4,082
금산군					380	380		760
부여군					244	244		488
서천군					310	310		619
청양군					215	215		431
홍성군					291	291		583
예산군					327	327		655
태안군					274	274		547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북소계					2,244	2,244		4,488
완주군					364	364		728
진안군					324	324		649
무주군					204	204		407
장수군					233	233		466
임실군					274	274		548
순창군					256	256		511
고창군					279	279		558
부안군					310	310		621
전남소계					5,270	5,270		10,540
담양군					295	295		590
곡성군					277	277		553
구례군					221	221		443
고흥군					305	305		610
보성군					273	273		547
화순군					328	328		656
장흥군					382	382		765
강진군					294	294		587
해남군					366	366		732
영암군					326	326		651
무안군					312	312		625
함평군					328	328		656
영광군					300	300		601
장성군					349	349		698
완도군					282	282		564
진도군					296	296		593
신안군					335	335		671
경북소계					3,555	3,555		7,110
군위군					266	266		532
의성군					324	324		648
청송군					233	233		465
영양군					276	276		552
영덕군					301	301		602
청도군					298	298		596
고령군					266	266		531
성주군					308	308		616
칠곡군					332	332		664
예천군					253	253		506
봉화군					257	257		515
울진군					308	308		616
울릉군					134	134		268
경남소계					2,769	2,769		5,539
의령군					244	244		489
함안군					269	269		539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창녕군					263	263		526
고성군					271	271		543
남해군					267	267		534
하동군					354	354		709
산청군					288	288		576
함양군					264	264		529
거창군					266	266		531
합천군					282	282		56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시군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	-	-	-	-	-	-	-
'12	-	-	-	-	-	-	-	-
'13	230	-	-	-	91,143	91,143	-	182,286
'14	230	-	-	-	96,796	96,796	-	193,59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단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지역사회 주민대상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	60	61.28	1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시·도 중심 지역 보건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시·군·구 보건사업에 대한 중앙의 모니터링 및 환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내실있는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

○ 미흡한 점

신규 사업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도·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

- 지자체 **능동적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저항 및 낮은 이해도**가 사업 추진에 장애로 작용, **기술지원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 건의사항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괄한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만을 위한 사업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음

1-3-1-1(계속)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 당 자	김영미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3057	이메일	kymrs1031@korea.kr

1. 사업목표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산정시 소득·재산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연중)

○ 사업주체 : 시·군·구청장(보장기관)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농어업인 가구

○ 사업금액 : 별도예산 없음(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 추진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적용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 · 농지 1ha미만 소유한 자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 농어민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료 15만원 이내
  -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완화된 소득 환산기준 적용
  - ·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액과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 추진체계 : 급여신청→조사(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급여결정
→급여실시→확인조사(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적정여부)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지속 적용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민가구 특례 적용하여 수급자로 509가구 보호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농어민가구 특례적용 수급가구 수	행복e음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가구	500	509	1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담당부서	농지과	담 당 자	이창학
전화번호	044-201-1742	이메일	lchak@korea.kr

1. 사업목표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내용 :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무회수

○ 추진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금관리법 제10조, 제24조의5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5년간('11~'25년) 고령농업인 15,000호 가입목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호,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32호				803			803
'10	사업준비				22			22
'11	500				15			15
'12	1,500				190			190
'13	2,547				237			237
'14	3,432				339			33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사업준비				22			22
'11	911				72			72
'12	2,202				153			153
'13	2,927				227			22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 농지연금 가입율은 17.4%로 당초 목표치 17.0%를 초과 달성
- '11년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후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정책에 대한 높은 호응 도출
  - · 농업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활용(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지연금사업	농지연금 농가가입율	(당해연도 유지농가수/목표 농가수)×100 * 목표농가수: 15,000호 ('11~'25/한국정책능력진흥원) * '13년지원농가수 :2,547호(목표치) * '13년지원농가수 :2,610호(실적치)	%	17.0	17.4	102.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연금지급을 통한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 연금지급을 통한 노후생활 부족자금(가계지출-농가순소득) 지원

  < 고령농가 가계지출 18.9백만원('11년 70세이상), 농가순소득 12.7백만원 ('11년), 연간 연금지급 9.7백만원('13년 월81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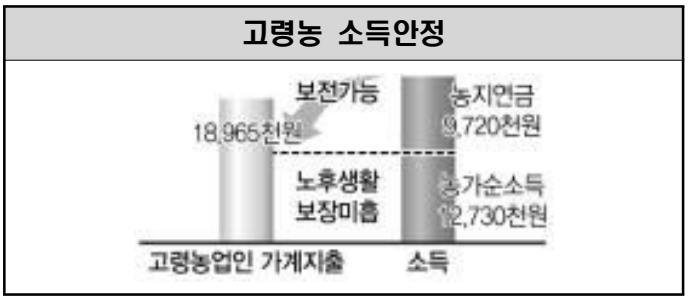

  * 가입자 평균연령 74세, 담보농지 면적 4,217㎡, 농가평가액 130백만원

  * 총 2,927호 가입, 452억원 지급('13말)

- 농지연금 제도개선 시행('14.1~)

  * 담보농지 평가방법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가입자가 하나를 선택

  * 가입비 : 농지가격의 2% 부과 → 폐지

  * 금리 : 이자율 인하(4% → 3), 기대이율(5.11% → 4)

  ⇒ 제도개선을 통해 월평균 지급액이 81 → 92만원으로 약 14% 증가 효과

○ 미흡한 점 : 현행 가입연령 조건이 부부 모두 65세로 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등 부부의 연령차가 큰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도 가입이 불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함

  ⇒ 관련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14.상반기 가입연령 완화 추진

  * 가입연령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만 65세 이상

○ 건의사항

- 연차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예산 확보 필요

1-3-2-2(계속)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박헌춘 전문관
전화번호	044-201-1555	이메일	hcpark77@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의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집 고쳐주기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주관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연계

○ 자원봉사자 등으로 농어촌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 농촌지역 결손가정,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농어촌 소외계층 대상
- 대상자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엌, 화장실 등 수리

○ 농어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생활 홈 조성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홈 조성

* 추진실적(가구/세대) : ('11) 1/3 → ('12) 2/6 → ('13) 4/12

○ 사업규모 : 21.6억원(마사회 특별적립금 15.5, 기부금 등 6.1)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한국마사회법 제42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 제7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비예산) : 15.5억원(마사회특별적립금)

* 사업비 규모(마특) : ('11)10억원 → ('12)15 → ('13)15.5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90			600				600
'11	309			1,200				1,200
'12	408			1,700				1,700
'13	436			1,750				1,750
'14	436			1,750				1,750

* 기타회계는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의 기부금(일반후원, 모금회 후원 등)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90			600				600
'11	309			1,200				1,200
'12	408			1,700				1,750
'13	436			1,750				1,7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대비 106.3% 달성('13.12.31 기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영세·고령 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실적(가구)	다솜둥지복지재단 성과보고 자료확인	가구	410	436	106.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민간단체·자원봉사자·지역대학 등과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민관학 협력 복지사업 모델로 활성화

  * 추진실적 : ('10)190가구 → ('11)309 → ('12)408 → ('13)436

-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사업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개선

  * 공동생활 홈 추진 실적(가구/세대) : ('11) 1/3 → ('12) 2/6 → ('13) 4/12

○ 미흡한 점

- 대학생들의 일회성 봉사가 아닌 평생 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마일재능뱅크와 연계할 필요

○ 건의사항

- 영세·고령농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1-3-2-3(계속)	경영이양직접지불(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 당 자	최춘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772	이메일	ctchoi@korea.kr

1. 사업목표

○ 목　　적

-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지원 및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총사업비 : _ ('13년까지 기투자액 : 4,360억원, 72.6천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요건 : 고령 농업인(65~70세)이 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 등에게 경영이양 할 경우 보조금(매월 25만원/ha) 지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이후 신규 경영이양 면적을 연도별 1,500~750ha 달성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000	311,965	-	-	-	-	-	311,965
'11	3,000	62,282	-	-	-	-	-	62,282
'12	3,000	65,907	-	-	-	-	-	65,907
'13	1,500	62,420	-	-	-	-	-	62,420
'14	750	61,737	-	-	-	-	-	61,737
'15	750	59,619	-	-	-	-	-	59,619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445	53,254						53,254
'11	2,877	58,786						58,786
'12	2,752	61,897						61,897
'13	1,952	62,304						62,30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경영이양 면적은 1,952ha로 목표 대비 130.1% 달성

-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율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목표치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면적 목표달성율(%)	당해년도 경영이양달성면적 ÷ 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면적(1,500ha) × 100	%	100	130.1	130.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통한 고령농 소득보전에 기여
  · 고령농 10만명에게 4,000억원(1인당 연간 4,012천원) 지원 ('97~'13년도)
    * 최근 5개년 실적 : ('09) 324 ('10) 533 ('11) 588 ('12) 619 ('13) 623
- 경영이양직불 사업 참여의사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 65~70세의 사업 대상 고령농업인 257천여명의 전수 상담 실시(연중)
  · 기 사업참여 농업인(1,019명) 대상 제도개선 사항, 만족도 등 조사(9월)
- 생활 체감형 홍보를 통한 고령 농업인의 사업 참여 촉진
  · 좌담회(121회 3천명) 및 찾아가는 고객센터(373회 7천명) 운영
  · 지역케이블방(8개, 2월), 애니메이션 영상물 홍보, 지역(농업인) 행사 등을 통한 현장 홍보
  · 리플릿 30천매, 포스터 10천부, 안내문 70천매, 현수막 167개 제작 배포

○ 미흡한 점

- 고령 은퇴농의 소득안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경 의지가 강하고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영농 편리성 증대 등으로 은퇴를 기피하여 사업 확대 곤란
  · 신규이양 목표 : ('11) 3,000ha →('12) 3,000→('13) 1,500ha
  · 신규이양 실적 : ('11) 2,877ha →('12) 2,752→('13) 1,952ha
  ·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 ('11)70만원/ha→('12)70→('13)80

○ 건의사항

- 고령화 시대 등 여건변화에 맞는 사업대상 연령 및 지원 단가 상향 조정 필요

1-3-3-1(계속)	①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 당 자	양진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579	이메일	jhyang80@korea.kr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의 안정된 사회참여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어린이집기능보강 : 단년도 계속사업('91 ~)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군·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제도개선(보건복지부) → 사업추진(시·군·구)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읍·면)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설치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 (신축 1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신축비 지원 : 396백만원/개소 (지방비 포함)
  - · 공동주택리모델링 : 50백만원 (지방비 포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6			1,400		1,200		2,600
'11	25			2,300		1,800		4,100
'12	13			2,100		2,100		4,200
'13	15			2,500		2,500		5,000
'14	10			1,500		1,500		3,000

* '14년이후 국공립 확충은 10개소(신축 7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3개소)임

** '12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확충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목표치를 제외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6/19			1,500		1,200		2,700
'11	25/22	9		1,400		1,800		4,100
'12	13/14			2,100		2,100		4,200
'13	15/16			2,515		2,515		5,03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	개소	15	16	106.7

1-3-3-1(계속)	농촌보육여건개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강봉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6	이메일	kangbg21@korea.kr

1. 사업목표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비 지원과 농촌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국비 70%, (운영비) 국비 100%(정액지원)
-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 국비 40~60%(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 사업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 농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월 11만원)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 여건개선·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을 10개소 이상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	7,202	-	-	-	2,461	-	9,663
'10	-	-	-	-	-	-	-	-
'11	-	-	-	-	-	-	-	-
'12	10	910	-	-	-	273	-	1,183
'13	36	4,810	-	-	-	1,732	-	6,542
'14	10	1,482	-	-	-	456	-	1,938

- '12년부터 복건복지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되어 사업 추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7	637	-	-	-	273	-	910
'13	6	820	-	-	-	286	-	1,106

나. 농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 :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월 11만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070	82,413	-	-	-	89,280	-	171,693
'10	-	-	-	-	-	-	-	-
'11	-	-	-	-	-	-	-	-
'12	41,958	26,585	-	-	-	28,800	-	55,385
'13	44,056	27,914	-	-	-	30,240	-	58,154
'14	44,056	27,914	-	-	-	30,240	-	58,154

- '12년부터 복건복지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되어 사업 추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42,572	26,858	-	-	-	29,337	-	56,195
'13	42,940	27,196	-	-	-	29,851	-	57,04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6개소 설치
- 사업 이관('12년) 후 지자체(농정부서)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준비 등이 부족하여 신청 저조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설치개수	개수	15	6	4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지역에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

1-3-3-3.(계속)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 당 자	오춘수
전화번호	044-202-3562	이메일	ocsoch@korea.kr

1. 사업목표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사업내용

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장애아는 만12세 이하)
- 사업 규모(사업량) : 1,475천명('13.12월말 기준 보육료 지원아동)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	-	-	-	-	-	-	-
'11	96			101,700		101,700		203,400
'12	96			104,800		104,800		209,600
'13	96			107,900		107,900		215,800
'14	96			111,100		111,100		222,200

< '13년 시도별(군지역) 배분내역 >

	시도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총계				261,498		328,477		589,975
영유아 보육료	합계			180,522		175,999		356,520
	부산기장			7,475		7,475		14,950
	대구달성			7,475		7,475		14,950
	인천소계			2,254		2,230		4,484
	울산울주			11,292		11,292		22,584
	경기			12,424		12,425		24,849
	강원			15,909		15,909		31,817
	충북			24,393		24,393		48,786
	충남			15,529		15,529		31,058
	전북			13,459		13,459		26,918
	전남			30,703		30,451		61,155
	경북			23,591		19,343		42,935
	경남			16,017		16,017		32,035
가정 양육 수당	합계			80,977		79,681		160,657
	부산기장			3,228		3,228		6,456
	대구달성			3,228		3,228		6,456
	인천소계			824		822		1,646
	울산울주			3,237		3,236		6,473
	경기			4,614		4,614		9,228
	강원			7,602		7,602		15,204
	충북			7,709		7,709		15,418
	충남			5,384		5,384		10,768
	전북			9,481		9,480		18,961
	전남			14,819		14,819		29,638
	경북			6,537		5,245		11,783
	경남			14,313		14,313		28,626
누리 과정 보육료	합계					105,127		
	부산기장					3,013		
	대구달성					1,597		
	인천소계					803		
	울산울주					1,856		
	경기					5,087		
	강원					34,946		
	충북					10,318		
	충남					9,057		
	전북					6,067		
	전남					14,467		
	경북					9,459		
	경남					8,457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991	-	-	2,002,300	-	2,050,900	-	4,053,200
'12	1,351	-	-	2,639,100	-	2,703,200	-	5,342,300
'13	1,475	-	-	2,736,051		2,692,622		5,428,67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비율	전액지원아동수/ 전체 이용아동수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을 통하여 양육부담 경감('13.3월~)

* ('12.3월) 만0～2세 및 만5세 全 계층, 만3～4세 소득하위 70% → ('13.3월) 만0～5세 全 계층

** 보육료 지원 아동 ('12.12월) 1,351천명 → ('13.12월) 1,475천명(+124천명)

· 보육료 확대 관련 상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 · 안내('13.1월～)

- 보육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업무량 증가 및 원활한 신청 접수 지원을 위하여 업무 보조인력 지원('13.1월)

- 지방의 예산 미편성 등으로 지방의 보육 예산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보육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13.3월~)

· 보육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한 추경편성 독려('13.1월~) 및 집행실적 파악 등을 통한 보육료 부족에 대처('13.3월~)

- 보육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의 보육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비 지원 및 '14년 국고보조율 인상

· 지방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 확보 등을 위하여 추경 편성을 전제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비* 지원('13.6월, 8월, 9월)

* 보육·양육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목적예비비(3,607억원) 및 특별교부세(2,000억원, 안행부) 지원 완료

· 보육 예산에 대한 지방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자 '14년부터 국고보조율 15%p 인상

1-3-3-4(계속)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담 당 자	김지수 사무관
전화번호	02-2075-4634	이메일	kchisoo@korea.kr

1. 사업목표

○ 여성친화도시의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사업주체 : 기초지자체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법적근거 마련,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초지자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과제 시행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11월/비예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0	10개소							
'11	30개소			40				40
'12	39개소			95				95
'13	50개소			95				95
'14	60개소			95				9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10	10개소							
'11	30개소			40				40
'12	39개소			95				95
'13	50개소			95				95

* 여성친화도시는 비예산사업으로 지자체 교육 예산과 우수사업 발굴 지원 예산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계획 대비 100%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수	지정 도시 수	계획대비 실적	개소	50	5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제반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 점검, 개선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친화적 환경 개선

○ 미흡한 점

-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컨설팅 한계

○ 건의사항

- 여성친화도시 우수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1-3-3-5(계속)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농촌지도관 이병석
전화번호	031-299-2676	이메일	byeong12@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소득활동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조성과 장수문화 정립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7

○ 사 업 비 : 683.5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449억원, 국비)

* 개소당 3년간 150백만원 지원

○ 사업규모 : 1,000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추진내용

- 건강생활 활동 실천(게이트볼, 생활체조, 노인공동식생활 프로그램 등)
-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원예, 한글, 미술 등 치매예방활동)
- 노년 안전생활환경 정비(계단 및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안전시설)
- 노년에 적절한 소득·경제활동(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등)

우수사례 : 경기 화성 독정마을

❍ 사업기간 및 참여 노인수 : 2011~2013년 사업, 참여자 98명(고령화율 64%)
❍ 주요성과
- (건강한 마을) 건강체조·웃음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78회)
- (학습하는 마을) 풍물교실·서예·한지공예 등 운영(326회)
- (안전한 마을) 벼 마을 공동재배(휴경지), 매실나무 식재(260주)
- (활력있는 마을) 마을벽화, 한과제조, 사물놀이, 체조 참여(306명)

(쌀뻥튀기 만들기 시연)

(화분만들기 실습)

(사물놀이 연습장면)

* 2013 지역발전사업 평가(지역발전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2012 청 경진평가 최우수

○ 사업체계

구 분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	❍ 기본국가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 지도자료 지원과 사업 홍보, 프로그램 보급 ❍ 마을민, 사업담당자 등 관계관 교육 등 마인드 향상
농업기술원	▷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지역 정체성 확립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농업기술센터	▷	❍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마을선정 ❍ 자발적 참여 유도, 사회활동 역량개발 교육
마 을	▷	❍ 주민 협의 마을 발전 계획 수립 추진, 운영 위원회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2017년까지 1,000개 정도 시범마을 육성

- 마을당 3년간, 개소당 1.2~1.5억원 지원으로 자율적 마을 기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광특회계)	기금등			
합계	1,038			38,850		38,850		77,700
'10	150			3,750		3,750		7,500
'11	148			3,700		3,700		7,400
'12	164			4,050		4,050		8,100
'13	158			3,900		3,900		7,800
'14	156			3,800		3,800		7,600
~'17	262			19,650		19,650		39,3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광특회계)	기금등			
'10	150			3,925		4,016		7,941
'11	148			3,675		3,725		7,400
'12	163			4,302		4,302		8,604
'13	158			3,935		3,935		7,870

-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10년부터 광특회계로 전환, 시도의 사업 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정도, 주거환경 등 부문별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목표치의 112%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수혜자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만족도 증가 비율	%	70	78.7	112

○ 본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대상마을과 사업지역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생활만족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78.7점으로 인근마을과 10.5점의 차이를 나타냄

- 생활만족도가 78.7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가운데, [마을환경](84.6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생활만족도 |

단위 : 점(명)

구 분		생활 만족도	마을활동	마을환경	개인생활	주거/대인관계	농업환경
대상 마을	(700)	78.7	80.4	84.6	63.6	80.6	78.7
대조구 마을	(300)	68.2	63.0	71.8	57.7	77.6	68.3

* 출처 : 2013 농촌건강장수마을 성과분석(연구컨설팅기관 코뮤니타스)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습관 형성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마을민간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 공동체 사업 및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활력화에 기여

※ 건강광리 등 프로그램 참여증가: ('12) 10.5회 → ('13) 10.7

- 외부리서치기관 조사 결과, 농촌지역 노인들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의 친밀성/협동성이 주된 만족사항으로 나타남
- 생활실태 조사결과

· 노후생활 준비 만족도: 만족 21.1%, 불만 32.3%

· 경제적 상태 : 좋음 15%, 좋지 않음 35%

· 건강 상태: 좋다 27.9%, 좋지 않다 46.4%

1-3-3-6(계속)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 당 자	최상열
전화번호	044-202-7311	이메일	dasalja@moel.go.kr

1. 사업목표

○ 농어업분야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예상 농어민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95년 ~ 계속

○ 사업비: 819백만원('13년)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보조(국고보조율 80%)

○ 지원대상: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지원내용: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내용
지자체	○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심사결과 등에 따라 예산 배정
지자체	○ 훈련기관·교과내용, 시설·장비 등을 검토한 후 훈련 과정을 승인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부에 통보
지자체 및 훈련기관	○ 훈련실시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 체결 및 훈련생 선발(지자체) ○ 훈련 실시(훈련기관) - 훈련생에 대해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지자체)

○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39	4,300				1,076		5,376
'10	408	893				223		1,116
'11	414	907				227		1,134
'12	385	862				216		1,078
'13	366	819				205		1,024
'14	366	819				205		1,024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08	893				223		1,116
'11	376	749				282		1,031
'12	249	749				254		1,003
'13	715	763				266		1,029

- '13년 전산 자료 외 지자체보고에 따른 실시인원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수료자 취업률 12월말 기준 36.0%로 목표 대비 82.2% 달성
- 훈련참여자 만족도 90.4%로 목표 대비 108.9% 달성
- 취업률은 훈련종료 후 6개월까지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할 것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수료후 취업자수(조기취업포함)/수료자수(조기취업포함)]*100	%	43.8	36.0	82.2
	훈련참여자 만족도	5점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점	83.0	90.4	108.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별 훈련실적과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훈련과정 승인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훈련사업을 실시

- 훈련참여자 만족도 달성을 통해 농어민지역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

○ 미흡한 점

- '13년도 취업률의 경우 목표치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수료자 취업률은 산정기준이 훈련종료 후 6개월까지 취업한 자로, '13년도 최종 취업률은 '13.6월말 이후에 산정되는 바, 최종 취업률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1-3-4-1(계속)	다문화가정 농업교육(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강봉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6	이메일	kangbg21@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 지원형태 : 민간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내용

- 기초농업교육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등 실시
- 1:1 맞춤형 농업교육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실습위주의 1:1 맞춤 교육 실시

○ 사업규모(사업량) : 1,300명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이민여성 1,300명 대상 1,326백만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60	6,380	-	-	-	-	-	6,380
'10	1,100	1,176	-	-	-	-	-	1,176
'11	1,100	1,176	-	-	-	-	-	1,176
'12	1,100	1,176	-	-	-	-	-	1,176
'13	1,300	1,326	-	-	-	-	-	1,326
'14	1,560	1,526	-	-	-	-	-	1,52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99	1,176	-	-	-	-	-	1,176
'11	1,236	1,176	-	-	-	-	-	1,176
'12	1,362	1,176	-	-	-	-	-	1,176
'13	1,606	1,326	-	-	-	-	-	1,32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이민여성대상 영농교육 1,606명 수료(목표대비 124%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정 영농교육	교육참석 이민여성수	수료인원	명	1,300	1,606	12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이민여성 영농교육 완료 후 워크숍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발굴·보완하고, 교육담당자의 사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

1-3-4-2(계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과	담 당 자	송재은 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9	이메일	sartzche@korea.kr

1. 사업목표

○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혼 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과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08.9월 제정, '11.4월 개정)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조기적응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 촉진
-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을 적극 발굴, 지속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 사업시행 절차 : 여성가족부 계획수립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집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단년도 계속사업('06~)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3,838	6,9530		223,368
'10	159개소				8,278	3,645		11,923
'11	200개소				12,858	5,114		17,972
'12	200개소				40,623	19,484		60,107
'13	212개소				43,647	21,002		64,649
'14	212개소				40,903	19,735		60,638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59개소				8,278	3,645		11,923
'11	200개소				12,857	5,114		17,971
'12	200개소				40,622	19,484		60,106
'13	212개소				43,647	21,002		64,64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결과보고서	천명 (실인원)	74	78	105.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사회통합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이바지
  -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13. 8.)
  - · 위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망을 연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확대 배치('12년 17명→'13년 50명)
  -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부모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13.2~11월)
    - * 국정과제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과제로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노동부의 "워크넷" 내부망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연계
-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실시 및 자조모임 운영 내실화
  - ·'14년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추진센터 선정('13.10, 64개소)
  - · 결혼이민자 멘토링 및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13.2.~11.)
    - * 자조모임 211개 센터, 19,072명 참여
-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1센터-1변호사 연계" 상담서비스 제공
  - * 200개 센터에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누리 콜센터"에 당직 변호사를 파견(월 1회), 전문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1-3-4-3(계속)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과	담 당 자	이조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4	이메일	ejong@korea.kr

1. 사업목표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발달 등 단계적 성장 지원을 통해 장래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2.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배치,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 사업시행 절차 : 여성가족부(계획수립)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집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수행)
- 총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단년도 계속사업('09~)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08.9월 제정, '12.2월 개정)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0명				23,838	10,121		33,959
'10	100명				2,154	687		2,841
'11	200명				4,418	1,921		6,339
'12	200명				4,418	1,921		6,339
'13	300명				6,424	2,796		9,220
'14	300명				6,424	2,797		9,221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00명				2,154	687		2,841
'11	200명				4,418	1,921		6,339
'12	200명				4,418	1,921		6,339
'13	300명				6,424	2,797		9,22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결과보고서	천명	1,540	1,656	107.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13년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아동 185,436명(연인원))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1-3-5-1(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지현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사업목표

○ 사고 · 질병 및 취약농가에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추진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 ⇒ 농업인 신청(농업인→농협) ⇒ 도우미 선정 및 파견(지역농협) ⇒ 임금 신청(도우미)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농협)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 영농도우미 : 사고 ·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
  -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경로당 등
- 사업규모(사업량) : 총 25천 가구(영농 15천 가구, 가사 10천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

  · 영농도우미 : 1일당 60,000원(8시간 기준), 가사도우미 : 1회당 10,000원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자부담 30%, 최대 10일

  · 가사도우미 : 국고 70%, 농협 30%, 최대 12일(경로당 최대24일)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9	323	-	-	-	-	-	323
'10	30	65	-	-	-	-	-	65
'11	28	65	-	-	-	-	-	65
'12	25	63	-	-	-	-	-	63
'13	28	65	-	-	-	-	-	65
'14	28	65	-	-	-	-	-	6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0	65	-	-	-	-	-	65
'11	28	65	-	-	-	-	-	65
'12	25	63	-	-	-	-	-	63
'13	25	71	-	-	-	-	-	71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취약농가 인력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고객만족도	5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로 상위 2등급을 100점만점으로 환산	%	93	91.3	98.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지역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취약계층에게는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에 기여

○ 미흡한 점

- 만족도 조사결과 90%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처리절차 등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

○ 건의사항 : 없음

1-3-5-2(계속)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 · 홍보 강화(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사업목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리플렛, 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여 지원대상 누락 등 방지

○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농어업인(복지시책 수혜자)
- 사업규모 : 리플릿 16만부 제작 및 배부
- 소요예산 : 20백만원, 직접 수행(경비)
- 주요내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이민여성교육 등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및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전국 지자체, 공단 및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사업안내

· 다문화 가족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하여 일간지 및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식)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	-	-	-
'10	1식(워크숍 홍보물)	0.2	-	-	-	-	-	0.2
'11	"	0.6	-	-	-	-	-	0.6
'12	"	0.6	-	-	-	-	-	0.6
'13	"	0.6	-	-	-	-	-	0.6
'14	"	0.6	-	-	-	-	-	0.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식	0.2	-	-	-	-	-	0.2
'11	1식	0.2	-	-	-	-	-	0.2
'12	1식	0.2	-	-	-	-	-	0.2
'13	1식	0.2	-	-	-	-	-	0.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 ·홍보 강화	홍보물 배부	홍보물 배부	식	1	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복지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를 통하여 농식품부 지원사업 홍보 강화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1-4-1-1(계속)	농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희중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2	이메일	kimhj1208@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

* 농촌의 자생적 공동체에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2. 사업내용

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1,500백만원) : 각 시·도별 사업계획서 등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시제품 개발비·생산, 마케팅비 등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2년~3년

* 국고 예산(지원 개소) : ('12) 13.5(54) → ('13) 13.5(54) → ('14) 15(60)
* '13년부터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으로 편입

②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135백만원) : 공동체회사 창업 상담, 경영컨설팅, 인력육성 교육, 홍보 등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2	5,550				2,775	2,775	11,100
'10	- *'11년 신규 사업							
'11	54	1,350	-			675	675	2,700
'12	54	1,350	-			675	675	2,700
'13	54	1,350	-			675	675	2,700
'14	60	1,500	-			750	750	3,000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비(민간 경상, 135백만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년 신규)	4,050	-			2,025	2,025	8,100
'11	54	1,350	-			675	675	2,700
'12	54	1,350	-			675	675	2,700
'13	54	1,485	-			675	675	2,835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10%	당년도 총 매출액-전년도 총 매출액)/ 전년도 총 매출액×100	백만원	전년비 10%	14.7	14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자체평가 >

□ **체계적 지원으로 매출액 성과지표 목표 대비 초과 달성**

○ 지원이 종료된 공동체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맞춤형 지원 강화(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

< 건의사항 >

□ **제도 개편에 따른 평가지표 변경(혹은 보완) 필요**

○ 기존 소득 및 고용창출 사업 중심이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14년부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 도시에 비해 부족한 농촌의 교통, 의료, 교육 및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

- '14년 평가지표를 매출액 중심이 아닌 사회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할 필요

1-4-3-1(계속)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김희중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3	이 메 일	kimhj1208@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 지역조직인 농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여 넓은 면적, 복지 접근성 및 제공기관 부족 등에 따른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불리한 여건 해소 및 농촌 주민 복지 체감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지역 농협

○ 사업추진절차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농식품부, 타부처) → 지역 시달(지자체, 농협 등) → 농업인 전파

○ 사업내용 : 농업인,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주민 참가 프로그램 등 농업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노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 영유아, 문화 복지시설 운영

○ 주요활동 : ('12년 실적) 531개소 → ('13년) 550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개소/횟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	-	-	-	-
'12	531/530	-	-	-	-	-	-	-
'13	550/550	-	-	-	-	-	11	11
'14	560/560	-	-	-	-	-	11	11
'15	560/560	-	-	-	-	-	11	11

* 자부담(11억원)은 농협 자체자금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횟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550/550	-	-	-	-	-	11	11

* 자부담(11억원)은 농협 자체자금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복지센터	기본 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 프로그램 평가	개소	550	550	10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각 읍·면에 존재하는 지역농협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민간 영역에서 복지·문화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육성기반 확충

○ 미흡한 점

- 농번기-농한기 등 농촌 생업 여건에 따른 모집인원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 상존, 전담인력 부족 등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

○ 건의사항 : 없음

제2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계속)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교육부)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 당 자	김홍오 사무관 강덕기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6987 044-203-6594	이메일	dkkang1004@moe.go.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

2. 사업내용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농어촌 초중학교의 학력 증진,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등 교육여건 개선지원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온라인 체험학습 활성화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수립('13.8.27)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초등학교(전원학교), 고등학교(기숙형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중학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수립('13.10.17)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실적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교)	국비	지방비(특별교부금)	자부담	합계
합계					
'10	110/110		51,300/51,300		51,300/ 51,300
'11	170/170		31,500/31,500		31,500/ 31,500
'12	304/304		10,340/10,340		10,340/ 10,340
'13	156/156		5,490/5,490		5,490/ 5,490
'14	96		990		990

※ '10～'13년 : 계획/실적, '14년 계획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2,000			17,109		17,109
'10	-		특별 교부금	-		-
'11	-			-		-
'12	-			-		-
'13	300/300			3,509/3,509		3,509/3,509
'14	2,000			13,600		13,600

※ '13년 : 계획/실적, '14년 계획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50			352		352
'10	-		특별 교부금	-		-
'11	-			-		-
'12	-			-		-
'13	20/20			100/100		10,000/ 10,000
'14	50			252		252

※ '13년 : 계획/실적, '14년 계획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시·도교육청의 '13년 신규 선정 수 부족 등으로 목표치 대비 미흡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교	250	156	62.4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교	300	300	100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교	20	2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 수립('13.8.27)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 수립('13.10.17)

○ 미흡한 점

- 농산어촌 ICT 활용 컨텐츠의 다양화 및 질 향상 필요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2-2(계속)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부)

담당부서	방과후학교지원과	담 당 자	이지윤
전화번호	044-203-6416	이메일	pqpq79@moe.go.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양질의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을 전체 농어촌 지역을 확대하고, 사업을 지방이양하여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

○ 사업비 : 97,325백만원(지방비 100%)*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금액(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기준에 의해 일괄 교부)

○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시·도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13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12)65,727백만원 → ('13)97,325백만원 → ('14)97,489백만원

<20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학급,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998**					**97,325**		**97,325**
서울								
부산	368					931		931
세종	537					920		920
대구	889					1,868		1,868
인천	410					912		912
광주								
대전						13		13
울산	1,136					2,378		2,378
경기	8,406					20,741		20,741
강원	3,846					8,032		8,032
충북	2,992					6,345		6,345
충남	6,050					11,866		11,866
전북	3,389					6,719		6,719
전남	5,399					11,787		11,787
경북	5,405					11,793		11,793
경남	6,335					13,020		13,020

<20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학급,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998**					**97,325**		**97,325**
서울								
부산	368					931		931
세종	537					920		920
대구	889					1,868		1,868
인천	410					912		912
광주								
대전						13		13
울산	1,136					2,378		2,378
경기	8,406					20,741		20,741
강원	3,846					8,032		8,032
충북	2,992					6,345		6,345
충남	6,050					11,866		11,866
전북	3,389					6,719		6,719
전남	5,399					11,787		11,787
경북	5,405					11,793		11,793
경남	6,335					13,020		13,02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참여율	참여학생수/전체학생수×100	%	83	84.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에 기여
- '13년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음

○ 미흡한 점

- 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여건 취약하여 도시지역 학생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 부족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지역유관기관, 민간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하여 농어촌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2-1-3-1(계속)	기숙형고교 육성·지원(교육부)

담당부서	학교정책과	담 당 자	배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450	이메일	jinsugi@moe.go.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150개 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

○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

2.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2008년~

○ 사업 지원 대상 :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기숙형고교 150교

○ 지원 금액 및 형태 : '13년 24,728백만원(특교+시도교육청 지방비)

○ 지원 조건 : 해당없음

○ 지원 내용 : 기숙사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급식비)

○ 추진 근거 : MB정부 대선공약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숙형고교 150개교 선정(시설비 5,551억원 지원)**

- 국정과제 목표를 2년차에 완료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82교, 3,173억원('08년), 68교, 2,378억원('09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16,000		16,000
부산	1교					191		191
대구	2교					800		800
인천	3교					1,726		1,726
울산	1교					211		211
세종	1교					-		-
경기	14교					917		917
강원	18교					2,130		2,130
충북	13교					852		852
충남	16교					1,853		1,853
전북	13교					1,653		1,653
전남	23교					2,348		2,348
경북	25교					1,178		1,178
경남	20교					1,991		1,991
-						150		15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24,728		24,728
부산	1교					209		209
대구	2교					800		800
인천	3교					1,726		1,726
울산	1교					211		211
세종	1교					302		302
경기	14교					917		917
강원	18교					3,420		3,420
충북	13교					1,230		1,230
충남	16교					2,503		2,503
전북	13교					1,653		1,653
전남	23교					3,062		3,062
경북	25교					4,957		4,957
경남	20교					3,589		3,589
-						150		1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학생) : 68%(목표) → 78%**(달성)**
-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이 증대됨으로써 기숙형고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상승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	68	78.1*	114

* 기숙형고교 150교 중 120교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임

※ 근거 : '13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 등 연구(전북대학교, 박세훈)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학부모 기숙사비 부담 경감**

※ 프로그램 운영비 · 기숙사 일반운영비 · 급식비를 특별교부금에서 '13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지원**(교당 평균 4.3억원)

※ 학생 1인당 월 평균 기숙사비 : 294천원('09) → 151천원('10) → 113천원('11) → 105천원('12) → 111천원('13)

-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 증가**

· 1,800백만원('11년) → 9,637백만원('12년) → 8,754백만원('13.9월 기준)

- 기숙형고교 **교육력 제고 노력**

· 운영성과 분석(150교) 및 우수사례 발굴 · 공유(워크숍 1회)

· 권역별 컨설팅단 구성을 통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실시(42교)

- 기숙형고교 **홍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10년~)**

·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으로 기숙형고교 홍보 및 우수프로그램 등 정보 공유

○ 미흡한 점

- ‘13년 기준 기숙사 수용률*이 **31.8%** 수준으로 저조

  *수용률=기숙사 정원/전체 학생수

  ※ 근거 : 기숙형고교 운영현황(‘13년 기숙형고교 현행화 자료)

- 일부 기숙형고교가 ‘**기숙형 입시학원**’으로 **변질 · 운영**하여 **민원 야기**

  ⇒ 체험 · 인성교육 강화 등 지도 · 감독 강화 필요

○ 건의사항

- 기숙사 신 · 증축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기숙사 **수용률** 제고 필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 교육기부** 등 교육협력 확대 필요

2-1-5-2(계속)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한국농수산대학	담 당 자	강 미 현
전화번호	031-229-5161	이메일	kmh3@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업 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학제개편, 국내·외 장기현장실습 교육 내실화 등으로 우수한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총사업비 : '13년까지 기 투자액 1,193억원

○ 사업규모 : 재학생 1,050명(10개학과, 3년제), 졸업생 3,01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4,451백만원(국비 100%)

○ 지원조건 : 수업연한 2배 동안의 의무영농·영어 활동 종사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 추진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4				704
'11	3,472			125				125
'12	3,748			133				133
'13	4.138			144				144
'14	4,528			143				143
'15	4,918			159				15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472	-	-	125	-	-	-	125
'12	3,748	-	-	133	-	-	-	133
'13	4,062	-	-	144	-	-	-	14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	졸업생 영농정착률	(영농정착 졸업생 수/의무영농 대상 졸업생 수)×100	%	92	94.5	102.7
	졸업생농가평균소득률	(졸업생농가 평균소득/농가평균소득)×100	%	231	206	89.2
	수혜자 만족도 (재학생+졸업생)	5점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점	80	79.6	99.5

- 졸업생농가평균소득률의 경우 측정방법의 신뢰성 및 객관성 부족, '14년도 성과지표에서 삭제 예정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 후계농어업인 육성 교육을 통한 우수 농어업인 배출

  · 2013년 졸업생 14년차 3,012명 배출 및 의무영농이행율 94.5% 달성

    ※ 졸업생 지원 강화 : 영농정착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실시, 졸업생 우수 아이디어 산업화 지원, 우수 영농정착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 농림축산업 6차 산업화 적극 추진을 위한 창조농업 인력 확보

  · 정시직제를 통한 교수인력 2명 확보

    ※ 농산물가공분야(1명), 시설자동화분야(1명)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3개학과 60명 모집 및 운영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리더로써 다양한 농업인 단체에서 중요 역할 수행

  · 졸업생 73.6%가 농어업인 단체 활동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2-2-1-1(계속)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담당부서	영어교육팀	담 당 자	김영은(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44-203-6179	이 메 일	youngeun@moe.go.kr

1. 사업목표

○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2. 사업내용

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 사업기간 : '08 ~

○ 사업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및 시·도 교육청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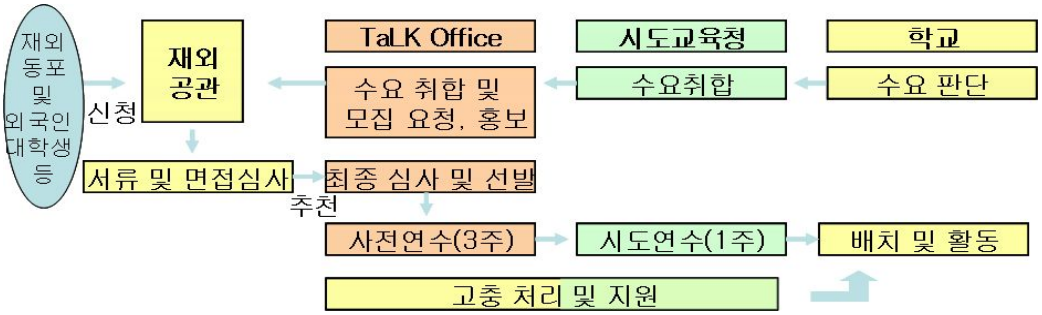

○ 추진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졸업생 포함)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 선발 대학생들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쳐(teach) 영어교육격차를 해소하고,
- 원어민 장학생들이 한국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게 함으로써 (learn) 미래 친한(親韓), 지한(知韓) 인재 육성

○ 추진근거 : 대통령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08.4)

나.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추진체계 : '13년부터 특별교부금 없이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 추진내용

- 원어민과의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등의 학생들에게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기회 제공

다.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 '13년부터 특별교부금 없이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 추진내용

- 해외 현직 교사를 초청하여 방학 중 영어캠프를 국내 영어교사, 교·사대 예비 교사 등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해외 문화체험과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인 영어교사에게는 다양한 영어교수학습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 사업규모 : '13년 10기 491명, 11기 490명 선발하여 배치

○ 사업예산 : 191억원(특별교부금:시도 대응투자=51:49)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75			110		724		834
'10	596			39		54		93
'11	502			71		147		218
'12	496			-		187		187
'13	491			-		191		191
'14	390			-		145		145

※ 농산어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기타 시·도 자율 영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4년 TaLK 장학생 배치 규모가 축소됨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596			39		54		93
‘11	502			71		147		218
‘12	496			-		187		187
’13	491			-		191		191

나.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시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					30		30
‘10								
‘11								
‘12	16					30		30
‘13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시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14					30		30
‘12	16					30		30
’13								

※ 1. ‘11년 대구와 충남은 교육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2. ’13년부터 특별교부금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다.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시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					14		14
'10								
'11	3					8		8
'12	3					6		6
'13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시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3					8		8
'12	3					6		6
'13								

※ '13년부터 특별교부금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확대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농어촌 학교수*	학교수	3,750	4,417	117.8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TaLK 장학생 배치, 영어 교육격차 해소 및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원어민 영어교육이 지원되는 학교 수 포함

- 원어민 영어교육이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 학교 수는 4,417교로, **목표** (3,750교) **대비 117.8% 달성**
- 시·도교육청별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초등학생에게 원어민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기여[1)]

- 원어민 장학생에게 한국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에 기여[2)]

<TaLK 사업 만족도 조사>

· **대상** : 참가 초등학생, 학부모, 운영학교 멘토교사 및 교장/교감, 원어민 장학생 등(총 8,490명)

·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 전체 응답자 중 긍정응답자 비율로 평가

· **결과** : 1) TaLK 운영학교 관계자의 89%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2) 원어민 장학생의 97%가 한국생활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했다고 평가함

○ 미흡한 점

-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점차적으로 축소

○ 건의사항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행·재정적 지원 필요**

2-2-2-1(계속)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교육부)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 당 자	황선국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6524	이메일	skhwang4002@moe.go.kr

1. 사업목표

○ 다문화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적응 및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비('13) : 2,500백만원(국고2,000백만원, 특교500백만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 사업추진절차 : 사업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금 교부(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사업추진(시도교육청, 대학교)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시도교육청, 대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글로벌 선도학교(50교) 및 멘토링(1,5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거점학교(교당 1,000만원 내외), 멘토링(시간당 12,000원)
- 지원조건 : (글로벌 선도학교*거점형)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멘토링) 대학별로 선발된 대학생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기초 학습 및 진로지도 실시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국정과제 51-2**(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글로벌선도학교19 멘토링5,00			5		1.9		6.9
'11	글로벌선도학교34 멘토링1,000			20		2.7		22.7
'12	글로벌선도학교50 멘토링1,200			20		5		25
'13	글로벌선도학교50 멘토링1,500			20		5		25
'14	글로벌선도학교60 멘토링1,600			30		6		36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글로벌선도학교19 멘토링5,00			5		1.9		6.9
'11	글로벌선도학교34 멘토링1,000			20		2.7		22.7
'12	글로벌선도학교50 멘토링1,200			20		5		25
'13	글로벌선도학교52 멘토링1,146			20		5.2		25.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글로벌 선도학교(거점형) 52교 지원(104% 달성)
- 농어촌 다문화 멘토링 수혜학생 1,146명(목표 미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글로벌선도학교 수	시도교육청 지정 보고자료	개교	50교	52교	104%
	멘토링 수혜학생수	멘토링 성과보고서	명	1,500명	1,146명	76.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다문화 이해제고를 위한 글로벌 선도학교 확대

* (농어촌 글로벌 선도학교 수) '12년 50교 → '13년 52교

○ 미흡한 점

- 멘토링 수혜 다문화 학생수가 목표에 미달된 바, 농어촌 학생 멘토링이 확대되도록 교육청과 지역 거점대학의 협력 강화를 통해 멘토링 확대 추진

* (멘토링 수혜 농어촌 다문화학생 수) '12년 1,241명 → '13년 1,146명

○ 건의사항

- 해당없음

2-2-3-1(계속)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교육부)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담 당 자	김학승 강종부
전화번호	203-6940 203-6689	이메일	kimh1714@moe.go.kr kjb3055@moe.go.kr

1. 사업목표

○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의 시행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으로 **수업과 생활지도 전념 여건 조성**

2. 사업내용

○ **학교 · 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특정지역 및 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신규로 채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완료**('11.9)

※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2013학년도 지역 단위 신규교원 임용시험 실시('12.9~'13.2)

※ 2013학년도 지역 단위 신규교원 130명(초등 81명, 중등 49명) 채용

○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등을 통한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 부담 경감방안 마련 ※ 비예산 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학교 · 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학교 · 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법령 개정('11년)
- 2013학년도 지역 단위 신규교원 임용시험 실시('12년)
- 2014학년도 지역 단위 신규교원 임용시험 실시('13년)

○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무행정팀 구성 · 운영 내실화('14년 연중)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시범학교 운영('14년9월~'15년8월)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14년 하반기)
- 시 · 도교육청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컨설팅 지원('14년 하반기~)
- 교무행정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14년 연중, 시도교육청)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계획 대비 실적	%	도입	도입	100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 수	계획 대비 실적	%	60	76	12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지역의 교사충원 및 행정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함

○ 건의사항

- (교사임용제도) 농어촌지역의 교원임용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의 시도 단위 교원임용시험 예산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필요
-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 추진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시 · 도별 편차가 상당**

2-2-4-1 (계속)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교육부)

담당부서	이러닝과	담 당 자	박덕호 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44-203-6426	이메일	pdh1214@moe.go.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및 저소득층 등 학생들에게 이러닝을 통한 보충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확보 및 교실수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콘텐츠의 활용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시 · 도교육청 사이버학습 운영 지원을 통한 시도교육청 서비스의 균형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초·중학생

○ 사업 규모 : 총 3,001백만원(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제외)

○ 사업 내용

- 2009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학생용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 사이버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 시·도교육청 사이버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분과협의회 개최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04～'11년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년부터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 '13~'14년 2009교육과정을 적용한 교수·학습콘텐츠 신규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51		84,132		
'10				400		24,495		24,895
'11				1,000		17,513		18,513
'12				450		13,252		13,702
'13				3,001		13,672		16,673
'14				2,000		15,200 (추정)		17,200

* 기타회계 : 교육부 지원예산, 지방비 : 시도교육청 소요예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00		24,495		24,895
'11				1,000		17,513		18,513
'12				450		13,252		13,702
'13				3,001		13,672		16,673

* 기타회계 : 교육부 지원예산, 지방비 : 시도교육청 소요예산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만족도) '13년도 성과지표 중 사이버학습 만족도는 현재 산출되어 있지 않으며, '13년 주요 사업인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 콘텐츠가 적용된 '14년 하반기에 만족도를 산출할 계획임

- (1일 평균 로그인수) '13년 일부 시·도교육청 사이버학습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계처리에서 제외되어 중앙시스템 통계자료 상 평균 로그인 수 감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사이버학습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전문기관 조사	%	76점	-	-
	1일 평균 로그인 수	사이버학습 중앙시스템 통계자료	만명	23	11	48

※ 시·도교육청은 자체 성과목표와 지표를 통해 관리 중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이 많이 분포한 면지역의 학부모 만족도 및 월 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이 높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

※ 학부모만족도: 도시 59.56% < 면지역 67.81%, 일반* 중점서비스 대상*= 51.43% < 61.57%

* 농산어촌소규모학교(100명이하), 또는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PC 및 통신비 지원) 수혜학생

※ 월평균사교육비감소액(원): 전체(91,095), 초(83,102)<중(126,269), 대도시(79,748)<면(104,241), 소득하위20%(95,623)<소득상위20%(88,782)

- 현장적합성을 고려하여 2009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 콘텐츠 및 주제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 미흡한 점

- 최근 초·중등 이러닝환경이 모바일러닝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학습 모바일러닝 기반 확충 필요

2-3-1-2(계속)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이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8	이메일	leejh79@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고등교육기회 제공

2. 사업내용(2013)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 사업규모 : 31.5천명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지원내용 :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무이자 융자

  * 융자학기 및 상환조건 : 재학대학의 정규 학기수까지 지원, 졸업후 2년 거치, 1학기분 융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지원조건 및 지원형태 : 국고 100%, 민간출연(한국장학재단)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출연금)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	260,300	-	-	-	-	-	260,300
'10	27	50,500	-	-	-	-	-	50,500
'11	27	60,500	-	-	-	-	-	60,500
'12	31	35,500	-	-	-	-	-	35,500
'13	31	54,300	-	-	-	-	-	31,100
'14	31	59,500	-	-	-	-	-	20,8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40	31,100	-	-	-	-	-	31,100

- 한국장학재단 자체조달액(상환액 등) 증가로 인한 국고 출연금 감소 및 총 융자액, 융자인원 목표 초과 달성

  * (융자계획) 31.5천명, 945억원(재단조달액 포함한 총융자액) → (실적) 40천명, 1021억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89.2%로 목표치(89%)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	89	89.2	10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신청자 편의 제고 및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개선(오프라인 → 온라인), 정보 전산연계 확대(주민등록등본 정보 등), 국가장학금과의 신청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신청자 편의 개선

-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상환율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 도입('14년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2-3-1-3(계속)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 당 자	이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8	이메일	leejh79@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업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

2. 사업내용(2013)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63백명

○ 사업시행주체 :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장학금 지원

  * 직전학기 이수학정 12학점 이상, 평균성적 80점(후계인력 70점)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마사회특별적립금 100%

○ 추진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마특)			
합계	27,125명	-	-	-	54,866	-	-	54,866
'10	3,180	-	-	-	7,500	-	-	7,500
'11	3,878	-	-	-	9,210	-	-	9,210
'12	7,512	-	-	-	14,460	-	-	14,460
'13	6,255	-	-	-	11,696	-	-	11,696
'14	6,300	-	-	-	12,000	-	-	12,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마특)			
'13	6,463	-	-	-	11,676	-	-	11,67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및 지원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

-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목표 달성 수준 양호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지원실적인원/ 계획인원×100	%	100	103.3	103.3
	지원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	지원실적금액/ 계획금액×100	%	100	99.8	99.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을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후계인력 양성에 기여

- 다양한 농어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2·3차 산업 진출자(기존 : 1차산업 진출자에 한정)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2-3-2-1(계속)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교육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 당 자	박진욱(서기관) 김동로(주무관)
전화번호	044-203-6543	이 메 일	kim5092@moe.go.kr

1. 사업목표

○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급식의 질 향상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조)

○ 추진체계

- 지원대상 학교수 및 소요액 파악(지자체, 교육청 협조) →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지자체, 교육청 협조) → 예산지원(지자체 → 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학교) → 우수식재료 사용확대(학교)

○ 추진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9,267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2,017억원,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지원내용 : 우수농산물(현물 또는 현금)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자치단체별 급식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2013	8,969					178,700		178,700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267					201,711		201,711
서울	993					19,093		19,093
부산	375					9,194		9,194
대구	80					1,881		1,881
인천	349					5,851		5,851
광주	268					7,388		7,388
대전	236					5,040		5,040
울산	143					4,230		4,230
세종	7					283		283
경기	1,845					67,199		67,199
강원	629					3,169		3,169
충북	424					4,857		4,857
충남	713					12,139		12,139
전북	754					8,583		8,583
전남	826					27,333		27,333
경북	962					13,385		13,385
경남	479					6,814		6,814
제주	184					5,272		5,272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목표 : 8,969개교, 실적 : 9,267개교)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 **교육부와 농식품부**의 안전 농식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3.5.7), 시·도교육청에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자치단체별 지역거점의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협조 등 **행정지침 시달**('13.1월) 및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 실시**(3회)는 물론,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13.5.30~5.31, 교육청 관계자 등 160명), **우리 농축산물 바로알기 교육**('13.7.22~7.23, 7.25~7.26, 영양교사 및 조리사 255명, 농협안성교육원 공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

○ 그 결과,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수**는 **당초 목표 대비**(8,969교) **298개교 늘어난 9,267개교로 목표치 대비 103%달성**하였으며, **지원액도 목표치를 초과한 2,017억원을 지원**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수농산물 지원학교수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지원학교수	교	8,969	9,267	10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교육부와 농식품부 업무협약(MOU) 체결, 시·도교교육청에 행정지침 시달, 연수회 개최 및 관계자 교육 실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급식의 질 향상**, 수요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3-3-1(계속)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교육부)

담당부서	대입제도과	담 당 자	최영진
전화번호	044-203-6362	이메일	feelshop@moe.go.kr

1. 사업목표

○ 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수요 경감

○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류함으로써 재학기간 동안 폭넓은 간접경험 가능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비예산

○ 사업규모 : 지역균형 선발규모 2,000명 내외

○ 지원대상 : 학생 · 학부모

○ 사업시행주체 : 개별대학 단위로 사업 추진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 설정

○ 사업 관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 관리

3. 연차별 추진계획

○ 비예산 사업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유도	선발학생 수	2014학년도 선발학생수	명	2,000	2,017	100.9

*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의 전형계획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였으며, 계획대비 100.9% 달성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균형 선발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확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4.1.28)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미흡한 점

-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부 및 대교협이 직접 추진이 어려움

○ 건의사항

- 대입 특별전형으로 학생선발을 확대할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고 질적 내실화 도모 필요

제3절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1-1-1(계속)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관리(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시·군별 포괄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 지원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 규모(사업량) : 117개 시·군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시·군(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 형태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등

○ 사업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 사업평가,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모니터링, 컨설팅, 지역개발 역량강화 등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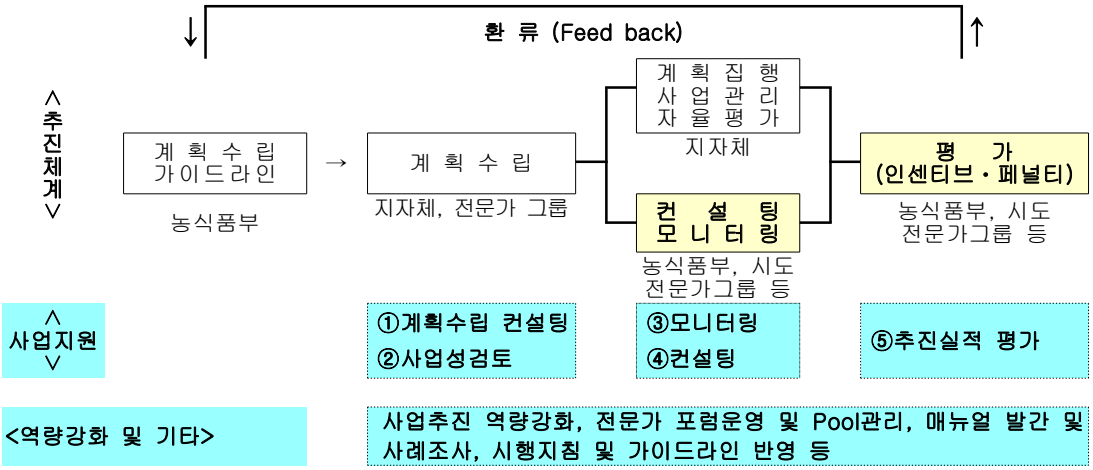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 ‘10년도 : 포괄보조사업 정책프로세스 마련

○ ‘11년도 : 정책프로세스의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 시행

○ ‘12년도 :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 추진 지원

○ ‘13년 이후 : 역량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20개 시군		973,649			365,118		1,338,767
‘11	120개 시군		931,198			349,199		1,280,397
‘12	120개 시군		930,447			348,918		1,279,365
‘13	117개 시군		918,246			344,342		1,262,588
‘14	117개 시군		872,334			327,125		1,199,459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20개 시군		973,649			365,118		1,338,767
‘11	120개 시군		898,098			336,787		1,234,885
‘12	120개 시군		682,000			255,750		937,750
‘13	117개 시군		842,522			315,946		1,158,46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제고
  - · 권역사무장제도개선, 권역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 · 연도별 증가율 ('10) 10,246명 → ('11) 12,123 → ('12) 13,456 → ('13) 15,839
- 2010년 포괄보조도입 이후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 대상 : 117개 시·군, 1,324여명,
  - · 조사결과 : 종합점수 80.5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일반농어촌개발 (포괄보조)관리	일자치 창출	일자리 비율	명	15,395	15,839	103
	주민 만족도 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조사	%	80.5	80.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 추진체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성과지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책을 추진하고, 지원단 구성을 통한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들의 의견수렴을 실시, 일정대로 추진

○ 미흡한 점

- 정책의 포괄적 성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설정 필요

3-1-1-2(계속)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사업목표

○ 2개 이상의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통해 시·군내 충족하기 어려운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한 특화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년~계속

○ 총사업비 : - 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300억원)

○ 사업규모 : 지자체간 연계협력 33개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90%, 지방비 10~20%

- 지방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이하인 지자체 참여시 국비 90% 적용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조(지역발전투자협약), 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신규사업 33개 → ('14년) 계속사업 31, 신규사업 39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3개	-	95,000	-	-	9,500	-	104,500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33개	-	30,000	-	-	3,000	-	33,000
'14	70개	-	65,000	-	-	6,500	-	71,5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33개	-	30,000	-	-	3,000	-	33,000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신규사업)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 확대에 따른 정책 수요와 기존 행정구역을 기초로 시행되어온 정책의 공급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확대 필요

3-2-1-1(계속)	신규 마을조성사업 및 마을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이형주(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8	이메일	heezee22@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유형 :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 사업규모 :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2~36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2억원 이내, 30~49호 18억원 이내, 50~74호 24억원 이내, 75~99호 30억원 이내, 100호 이상 36억원 이내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주차장 등

○ 추진절차 : 사업제안(제안자→시·군)→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시·군)→기본계획승인(시·군)→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시행계획승인(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2조(생활환경정비), 제101조~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3. 연차별 추진계획

○ '20년까지 200개 마을 조성추진 * '13년까지 144지구

- 연도별 시행계획

· 매년 15지구 수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사업규모 (개소, 누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2		99,496			42,641		142,137
'10	100	-	22,345	-	-	9,576	-	31,921
'11	116	-	26,932	-	-	11,542	-	38,474
'12	131	-	16,463	-	-	7,056	-	23,519
'13	146	-	16,884	-	-	7,236	-	24,120
'14	162	-	16,872	-	-	7,231	-	24,103

-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 당초계획 대로 '13년 15지구 신규 추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사업규모 (개소, 누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10	-	22,345	-	-	9,576	-	31,921
'11	122	-	26,932	-	-	11,542	-	38,474
'12	129	-	16,463	-	-	7,056	-	23,519
'13	144	-	16,884	-	-	7,236	-	24,120
'14	160	-	16,872	-	-	7,231	-	24,10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4년~'13까지 신규마을 도시민 유치수 3,818명 입주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시민 농어촌유치(명)	'04년부터 신규마을조성 도시민 유치수(누계)	명	3,525	3,818	108.3

- '13년 신규 15지구 중 입주자 주도형 12지구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민간사업자 참여비율	(민간사업자 사업장수/신규마을 전체사업장수)×100%	%	65	80	123.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베이비부머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

  · 매년 15지구 수준 신규마을 추진

- 입주자 주도형 사업지구 증가로 민간 참여 활발

* 입주자 주도 사업 참여율(%) : '11년까지 64.0 → '12년까지 65.6 → '13년까지 68.8

○ 미흡한 점

- '09년 이전 착수지구 분양 및 주택건축 실적 미흡

3-2-1-2(신규)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박종훈(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8	이메일	mafsun@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기반정비, 노후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 독거노인 등 공동생활형 주택,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년 ~ '14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규모 : 4개소(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진도, 경북 영주)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 주요내용 : 기반시설정비는 보조, 개별건축비용은 융자 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모(농식품부→시·군)→대상지 선정(농식품부)→기본계획수립(시·군)→세부설계(시·군)→공사시행(시·군)→사업완료(시·군)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까지 4개 마을 조성추진

* '13~'14년 까지 시범사업 4지구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누적)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융자			
합계	4	8,250				5,901	2,798	19,134
'13	4	4,200				2,950		7,150
'14	4	4,050			2,185	2,951	2,798	11,984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누적)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4	4,200				1,700		5,900
'14	4	4,050			2,185	2,951	2,798	11,98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에 당초계획 대로 4개소의 시범사업 추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시범사업 4개소 조성	시범사업 조성개소	개소	4	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3년 시범사업 4개소를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수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3-2-2-1(계속)	소 생활권 종합정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규모 : 권역당 50억원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10 가구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 사업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주차장 등
- 지역소득증대 :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산어촌체험시설, 농어업 기반시설 등
- 지역경관개선 :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훈련, 마케팅, 운용 프로그램개발,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 사업추진절차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군>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주민, 시・군]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	<시・도>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도)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	<중앙 심의>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중앙 심의회 심의→농식품부(최종확정)]
⇩		
신규 사업 반영		◦신규 사업 반영[농식품부↔기재부협의] ◦예산 신청 [시・군→도→농식품부]
⇩		
기본 계획 수립	<읍면발전협의회, 공청회> <관련기관・부서협의>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도(승인・보고)→농식품부(보고)]
⇩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 [시・군(수립・승인・보고)↔도(협의・보고)→농식품부(협의・보고)]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사 업 시 행		◦추진상황 점검 및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보고)]

3. 연차별 추진계획

○ '04~'10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 '11년 이후 : 농·산·어촌을 통합,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기존사업은 사업비 지원하여 추진

- 기존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마을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 '15년 이후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역량단계에 따라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5		284,844			122,076		406,920
권역	253		178,945			76,691		255,636
농촌	134		102,588			43,966		146,554
어촌	3		1,350			579		1,929
산촌	5		1,961			840		2,80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395		284,844			122,076		406,92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목표대비 성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권역주민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79.0	79.0	100

○ 성과달성 세부내용

- 주민만족도 조사(지역주민 및 농산어촌 사업관계자 등)

·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 79.0점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지역실정에 맞게 다수의 농촌마을을 여건이 같은 권역으로 묶어 기초생활기반 · 문화복지 · 소득기반 · 경관개선 · 농촌관광 · 운동휴양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유지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하여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 공동소득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 기존의 마을사업을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통합·재편**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역량단계별 지원**으로 지원방식 개편('13.12월)

3-2-3-1(계속)	지역거점 기능향상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사업목표

○ 읍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규모 : 읍(동) 100억원 이하, 면 80억원 이하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 주요내용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 읍면소재지의 환경보전 및 중심가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를 위한 정보화시설, 주민교육, 컨설팅,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마을홍보 및 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사업

○ 사업추진절차

-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체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군>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주민, 시・군]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	<시・도>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도)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	<중앙 심의>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중앙 심의회 심의→농식품부(최종확정)]
⇩		
신규 사업 반영		◦신규 사업 반영[농식품부↔기재부협의] ◦예산 신청 [시・군→도→농식품부]
⇩		
기본 계획 수립	<읍면발전협의회, 공청회> <관련기관・부서협의>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도(승인・보고)→농식품부(보고)]
⇩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 [시・군(수립・승인・보고)↔도(협의・보고)→농식품부(협의・보고)]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사 업 시 행		◦추진상황 점검 및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보고)]

3. 연차별 추진계획

○ '04~'10년 :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 '11년 이후 : 읍과 면을 통합, 읍·면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존 거점면은 사업비 지원하여 추진

○ '15년 이후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중심성 계층구조 분석을 통해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로 구분하여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7		288,101			123,472		411,573
읍 면	191		242,749			104,035		346,784
소도읍	11		18,460			7,912		26,372
거점면	15		26,892			11,525		38,41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217		288,101			123,472		411,57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목표대비 성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주민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85.8	85.8	100

○ 성과달성 세부내용

- 주민만족도 조사(지역주민 및 농산어촌 사업관계자 등)

  ·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 85.8점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시군의 거점이 되는 읍면 소재지의 지역실정에 맞게 기초생활기반·문화복지·경관개선·운동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 거점 읍면의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거점 생활공간을 정비하여 주변 읍면지역에 파급효과

○ 기초생활기반 확충 중심의 개발을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문화·복지·공동체 중심지** 및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로 전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개편('13.12월)

3-3-1-1(계속)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박헌춘 전문관
전화번호	044-201-1555	이메일	hcpark77@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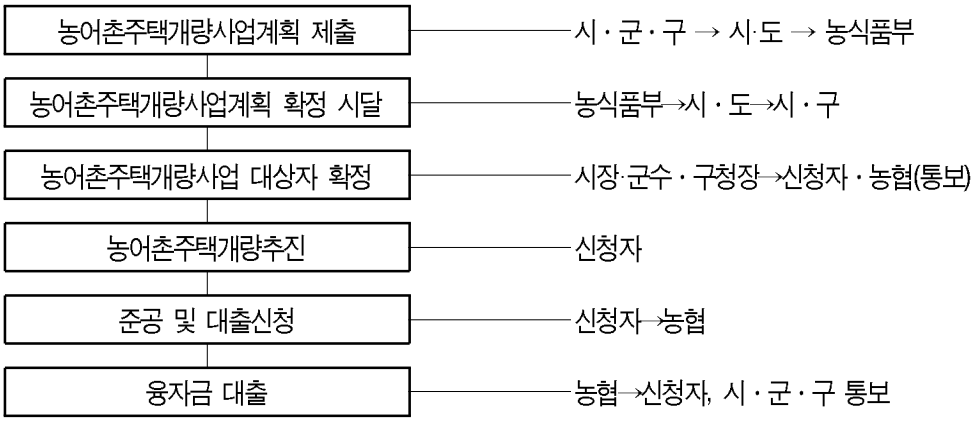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규모 : 10,000동('76~'13년까지 476천동 지원)

○ 대출재원규모 : 5,000억 원(농협자금)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재원형태 : 농협자금 100%

○ 농협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차보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8,000			2,800		1,200		4,000
'11	8,000			3,200		800		4,000
'12	8,000			3,200		800		4,000
'13	10,000			5,000		-		5,000
'14	10,000			6,000		-		6,000

* 기타회계는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10년부터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533			1,693		758		2,451
'11	6,476			2,252		648		2,900
'12	6,918			2,432		661		3,093
'13	9,617			4,718		-		4,718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추진 기간이 당해연도 1.1부터 익년 8.31까지이므로, 현 실적은 '13.12.31 기준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기준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대비 100.6% 달성('13.12.31 기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주택정비율	시·군 사업추진물량 확인	%	83	83.5	100.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요 물량과 연동하여 공급물량 확대

  * 지원비율(지원물량/수요량) : ('11)76.3%→('12)78.5%→('13)88.7%

  * 지원물량(동) : ('12)8,000 → ('13)10,000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중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농협자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사업부진 요인 제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재원 조성(억원) : ('12) 농협자금 3,200, 지방비 800 → ('13) 농협자금 5,000

○ 미흡한 점

-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동당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할 필요

- 시중은행 금리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금리 인하 검토할 필요

○ 건의사항

- 없음

3-3-1-2(계속)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담 당 자	김병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6813	이메일	kbjoh@korea.kr

1. 사업목표

○ 국민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내구연한 30년이 넘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19만동**을 **'21년까지 철거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 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희망자

○ 신청방법 : 사업 참여 희망자중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 25조 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

<'1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조건>

o 사업물량 : ('12년) 10,000동(60억원) → ('13년) 20,000동(192억원)
o 지원단가 : 가구당 240만원(120㎡ 기준)
o 지원비율 : 국고 40%(96만원 정액), 지방비 국고 이상, 자부담 소요비용 차액

3. 연차별 추진계획

○'14년까지 52,500동(국고 568억원, 지방비 568억원, 자부담 213억원) 철거 계획

- '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본격 지원 중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500동			56,800		56,800	21,300	135,000
'10	-	-	-	-	-	-	-	-
'11	2,500동	-	-	2,800	-	2,800	3,700	9,400
'12	10,000동	-	-	6,000		6,000	8,000	20,000
'13	20,000동	-	-	19,200	-	19,200	9,600	48,000
'14	20,000동	-	-	28,800	-	28,800	-	57,600

- '13년 추경예산 확보(48억, 5,000동) 및 '14년 국고 60%(288억, 20,000동) 상향으로 인한 예산 증액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등			
'10	-	-	-	-	-	-	-	-
'11	2,372동	-	-	2,336	-	2,866	472	5,674
'12	8,290동	-	-	3,973	-	8,071	2,515	14,559
'13	17,877동							

* '13년도 정산처리중으로 추진실적 미기재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성과목표 14,000동 대비 철거 17,877동 철거(128% 달성)

- 국고 상향(30%→40%) 지원 및 국고대응 지방비 확보(60%)로 철거비에 대한 자부담이 줄어 성과목표 달성

* 포기율 감소 : '12년(37%)→'13년(3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3년 슬레이트 처리 실적	'13년 슬레이트 철거 동수	동	14,000	17,877	127.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2회), 시·도과장 회의, 실적부진 지자체 현지독려(3회, 26개 시군구) 등을 통한 추진실적 제고 유도

- 지원기준 30%('12년) 수준이전 국고지원율을 60%('14년)까지 상향하여 철거비의 자부담 해소 전망

○ 미흡한 점

- 성과목표(14,000동)는 달성하였으나, 철거·개량비 등 과도한 자부담으로 사업참여 포기자(32%, 8,571명) 다수 발생

○ 건의사항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에 대한 자부담이 해소되어도 개량비에 대한 자부담으로 사실한 참여가 곤란한 실정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 필요

3-3-1-3(계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 당 자	이 순 우
전화번호	044-201-7122	이메일	woo7@korea.kr

1. 사업목표

○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급수취약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94 ~ 계속

○ (사업대상) 면단위 이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

○ (사업규모) 8,583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553,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264,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7,766)

○ (지원금액) '13년까지 기투자액 33,207억원(농어촌 21,897억원, 도서지역 6,705억원, 소규모수도시설 4,601억원)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국고 70%('09년까지 80%)

○ (사업주체) 지자체

○ (지원내용) 면단위 이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등 제반 사업비 지원

○ (추진근거) 「수도법」 제2조(책무) 및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3조 1항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수정계획('10년, 환경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국고 지원사업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211		6,153		22,065
'10				3,423		1,062		4,485
'11				3,464		1,136		4,507
'12	317			3,446		1,195		4,642
'13	399			3,295		1,224		3,312
'14				3,583		1,536		5,11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317		3,446			1,195		4,641
'13	399		3,295			1,224		4,51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율 : 목표 67.6%, 달성 69%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농어촌 ·도서지역 급수인구/농어촌·도서지역 인구)*100	%	67.6	69	102.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상수도 시설이 미보급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미흡한 점

- 한정된 국가 예산(광특회계)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수돗물 공급에 한계

○ 건의사항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상수도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예산 증액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3-3-1-4(계속)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담 당 자	문인근주무관
전화번호	044-202-3304	이메일	muhningun@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은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자신의 집 안에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의 개선이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1,000여가구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도 저소득 농어촌 재가 장애인들에게 주택 개·보수비 1,900백만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00	9,310				9,310		18,620
'10	1,000	1,900				1,900		3,800
'11	1,000	1,900				1,900		3,800
'12	1,000	1,900				1,900		3,800
'13	1,000	1,900				1,900		3,800
'14	900	1,710				1,710		3,42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091	1,900	-	-	-	1,900	-	3,800
'11	1,115	1,900	-	-	-	1,900	-	3,800
'12	1,054	1,900	-	-	-	1,900	-	3,800
'13	1,048	1,900	-	-	-	1,900	-	3,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 수급자 만족도 목표(90%) 대비 100% 달성
- 장애인가구 커버리지 증가율 목표(3.8%) 대비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저소득농어촌 장애인가구 커버리지 비율	사업추진실적	%	3.8	3.8	100
	장애인 주택개조 수급자 만족도	만족도조사결과 보고서	점	90	90	100

* 13년 실적은 잠정치임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 거주 재가 장애인들에게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서 가정 내 생활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미흡한 점

-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수행과정에서 현장기술자문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필요

○ 건의사항

- (사업지역 확대 필요) 현재 서울 및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택 개·보수비 지원 목적이 가정내 장애인들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동 취지에 맞게 서울 및 부산지역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지원단가 현실화) 2006년 부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 지원단가(1가구당 3,800천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매년 노임비, 자재비 상승 등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단가 조정 필요

3-3-2-1(계속)	농어촌 도로정비(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 당 자	박춘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3856	이메일	end2av5r@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을 통한 도로 기능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위험도로 구조개선(2004년 ~ 계속)

○ 사업계획

- 사업비 : 2,418억원(국비 1,209 지방비 1,209)
- 사업량 : 217.2㎞

※ '13년까지 기 투자액 : 888억원(국비 444 지방비 444)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보통교부세)	기금등			
합계	193.5		26,896	92,100		102,226		231,252
'10	81.0		5,800	48,900		38,800		93,500
'11	90.8		6,800	43,200		49,100		99,100
'12	7.1		6,100			6,100		12,200
'13	11.5		7,250			7,250		14,500
'14	3.1		976			976		1,95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보통교부세)	기금등			
'10	81.0		5,800	48,900		38,800		93,500
'11	90.8		6,800	43,200		49,100		99,100
'12	7.1		6,100			6,100		12,200
'13	11.5		7,250			7,250		14,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감소율	교통사고 건수	%	35	67.7	193

※ 산출내역 : (시행전 3년 평균 - 시행후 1년) / 시행전 3년 평균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사업 완료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효과가 뚜렷

※ 사고감소율 : (´10년)70.0%, (´11년)78.0%, (´12년)56.0%, (´13년)67.7%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예방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 대폭 확대 필요

3-3-2-2(계속)	교통서비스 강화(국토교양부)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건호(사무관) 이경섭(주무관)
전화번호	044-201-3826 044-201-3825	이메일	enp301@mltm.go.kr ks719@mltm.go.kr

1. 사업목표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액 증가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기초교통권 보장을 위해 손실금 보상, 공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 2014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 농어촌 및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사업은 2005년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
- 다만, 열악한 지방재원을 감안, 안행부는「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일부를 2014년까지 한시적 지원 중

○ 지원형태 : 지방비와 분권교부세 일부(약9.4%)

○ 사업규모 : 벽지노선(28,455㎞)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사업내용

- 벽지노선 손실보상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의 일부 금액을 국비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 회계	분권교부세			
합계		-	-	-	33,820	325,916	-	359,736
'10	14개 시도				6,000	57,300		63,300
'11	14개 시도				6,000	57,300		63,300
'12	14개 시도				6,000	57,300		63,300
'13	15개 시도				6,000	57,300		63,300
'14	15개 시도				7,968	77,008		84,976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벽지거리 (km)	공영버스 (대수)	농특	광특	기타 회계	분권 교부세			
합계	28,455.4	1,812	-	-	-	7,852	77,008		84,860
부산	8.0	-				3	-		3
인천	283.1	9				85	2,580		2,665
광주	73.6	4				26	338		364
대전	63.4	-				-	757		757
울산	153.7	3				36	394		430
세종	96.8	12				55	320		375
경기	848.7	101				323	107		430
강원	1,185.6	125				453	3,401		3,854
충북	3,392.0	203				1,006	12,582		13,588
충남	2,423.6	221				658	1,900		2,558
전북	4,739.0	236				1,272	18,159		19,431
전남	5,318.8	402				1,529	14,334		15,863
경북	5,242.0	227				1,027	12,162		13,189
경남	3,409.4	263				1,111	7,200		8,311
제주	1,217.7	6				267	2,775		3,04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분권교부세 60억원 지방비 573억원

- 세부증가(내국세 0.94%)에 따른 분권교부세 배분액 증가(안행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통서비스 강화	‘13. 분권교부세 집행	집행실적	억원	60	79	131.6
	‘13. 지방비 집행액	집행실적	억원	573	770	134.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05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지방의 열악한 재원을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원 중(20% 수준)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3-3-2-3(계속)	국고여객선 건조(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 당 자	권영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731	이메일	blast02@korea.kr

1. 사업목표

○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운항 항로 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이용객 안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주체 : 국가(해양수산부)

○ 사업규모 : 매년 여객선 1~2척 대체 건조

○ 추진근거 :「해운법」제15조의2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척			1,600				1,600
'11	1척			1,600				1,600
'12	1척			1,600				1,600
'13	1척			800				800
'14	1척			1,940				1,940

- 예산이월 예방을 위해 '13년부터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척			1,600				1,600
'11	1척			1,600				1,600
'12	1척			1,600				1,600
'13	1척			800				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국고여객선 1척 건조공사 공정률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국고여객선 건조	국고여객선 건조공사 공정률	집행금액/계약금액×100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3년도부터 시작된 2개년도 사업에 대해 예정기한 내 건조공사 완료

○ 미흡한 점

- 해당 없음

○ 건의사항

- 낙도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노후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매년 대체 건조 규모 확대(1→2척)를 위한 예산 추가지원 필요

3-3-2-4(계속)	내항여객선 운임보조(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 당 자	권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733	이메일	kgj2232@korea.kr

1. 사업목표

○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서개발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내항여객선 이용 도서민(연간 약 360만명) 운임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근거 :「해운법 제4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개 지자체	·	1,575	41,410	·	42,985	·	85,970
'10	8개 지자체	·	315	6,398	·	6,713	·	13,426
'11	8개 지자체	·	315	7,866	·	8,181	·	16,362
'12	8개 지자체	·	315	8,387	·	8,702	·	17,404
'13	8개 지자체	·	315	8,700	·	9,015	·	18,030
'14	8개 지자체	·	315	10,059	·	10,374	·	20,748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8개 지자체	·	315	6,398	·	6,713	·	13,426
'11	8개 지자체	·	315	7,866	·	8,181	·	16,362
'12	8개 지자체	·	315	8,387	·	8,702	·	17,404
'13	8개 지자체	·	315	8,700	·	9,015	·	18,030

- 7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책정예산(87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본도를 제외한 3개도서 지원)에는 광특회계 책정예산(3억원) 전액 교부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보조금 교부율(%)	(지자체 교부액/ 국고보조금 예산액) ×100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4년도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예산 증액 확보
  · 물가상승률 감안 전년대비 7% 증액 반영(8,700→9,309백만원)
- '14년도 도서민 차량운임 신규지원 예산 확보
  · '14.7.1 시행예정으로 9.5억원 반영(차량운임 6개월분 750백만원, 도서민 차량인증시스템 구축 200백만원)

○ 미흡한 점

- 인천시 국비 부족분(636백만원) 발생, 차년도 국비 예산으로 집행 불가피

○ 건의사항

- 국비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당국의 적정 소요예산 반영 필요

3-3-3-1(계속)	정보화마을 조성(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전자정부지원과	담 당 자	김석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3547	이메일	maradona@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등 정보소외지역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정보이용생활화로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사업규모 : 기 조성된 359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시행방법 : 위탁수행,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내용

- 정보화마을 콘텐츠 유지·관리, 전자상거래(www.invil.com) 지원
- 주민대상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마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마을별 수준진단, 차등관리 등

○ 추진체계

구분	추진주체	주요역할
기획 및 정책 지원	안전행정부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정책방향 설정 - 자치단체, 마을, 정중협 등 협조사항 협의·조정
	시·도 시·군·구	- 행정·재정 및 교육, 행사, 홍보 등 마을활성화 지원 - 마을주민의 교육수요분석 및 정보화/운영 교육 - 마을운영위 구성·운영 지원 -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정보화마을 홍보 및 운영활성화 지원 수행 - 중앙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관리 - 교육, 컨설팅, 국제 협력 지원 - 정보화마을운영평가 및 관련 연구 수행
운영 협의체	정보화마을중앙협회	- 대외교섭 및 협력 창구 기능 - 마을수익모델 창출 및 수익사업 지원 - 마을활성화 및 자립유도마을 특산품 판매 지원 - 각 마을의 참여와 협력방안 마련
	359개 정보화마을	- 마을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마을 특산물 및 체험 상품 운영 관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8	-	-	26,047	0	8,591	1,361	35,999
'10	363곳	-	-	5,598		1,221	-	6,819
'11	364곳	-	-	5,258		1,526	305	7,089
'12	361곳	-	-	5,197		1,948	352	7,497
'13	361곳	-	-	5,197		1,948	352	7,497
'14	359곳	-	-	4,797		1,948	352	7,09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364곳	-	-	5,258	-	1,526	305	7,089
'12	361곳	-	-	5,197	-	1,948	352	7,497
'13	361곳	-	-	5,197	-	1,948	352	7,49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일반국민・주민참여도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마을수	건	9,400	7400	78.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대국민 정보화마을 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 대학생, 파워블로거 서포터즈를 활용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활동
  - ※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용한 SNS 홍보 활동
- 해외 교류협력 지원 및 해외벤치마킹 지원
  - ※ 해외 벤치마킹 실적 : 총 10회, 31개국 135명 마을 방문
  - ※ 「베트남 ICT기반 새마을운동 지도자 양성과정」 연수과정 운영
  - ※ 글로벌 전자정부 포럼 2013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

3-3-3-3(계속)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 당 자	도재규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409	이메일	jkdo@korea.kr
담당부서	해수부 소득복지과	담 당 자	김수진(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470	이메일	sjkim1@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및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투자액 : 998억원)

○ 사업규모 : 농어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정보시스템 보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정보서비스), 국고 40%(IT 융합)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219			18,575	29,466	11,370	43,778
'10	정보서비스	8,340				1,300	650	10,290
'11	정보서비스	7,794				1,000	500	9,294
'12	정보서비스	7,994				1,000	500	9,494
'13	정보서비스(농림)	5,700				1,200	600	7,500
	정보서비스(해수)	837				360		1,197
	합계	**6,537**	**0**	**0**	**0**	**1,560**	**600**	**8,697**
'14	정보서비스(농림)	6,391			18,575	9,120	7,200	41,286
	정보서비스(해수)	985				720		1,705
	합계	**7,376**	**0**	**0**	**18,575**	**9,840**	**7,200**	**42,991**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정보서비스	8,340				1,300	650	10,290
'11	정보서비스	7,794				1,000	500	9,294
'12	정보서비스	7,994				1,000	500	9,494
'13	정보서비스(농림)	5,700				1,200	600	7,500
	정보서비스(해수)	826				360		1,186
	합계	**6,526**	**0**	**0**	**0**	**1,560**	**600**	**8,68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이용자만족도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점	84.4	84.4	100.0
	업무처리절감율	업무처리시간(구축전-구축후)/업무처리시간(구축전)*100	%	42.8	42.8	10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속적인 농업정보서비스를 통해 농촌주민의 정보격차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서비스 제공
- 시설원예, 과수, 축산분야의 ICT 융복합 확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산대책 마련 및 확산 사업비 확보
- 종묘배양장 및 양식장 등 어업생산현장에 ICT 융합 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생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 대상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수산기술교육 실시(약 500여명)

- 제10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를 통해 어업인 및 어촌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한 도시와의 정보격차 해소
- 어업경영체 시범 등록('13.9)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기반 마련 등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3-3-3-4(계속)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과	담 당 자	유태복
전화번호	02-2110-2957	이메일	cup2006@msip.go.kr

1. 사업목표

○ 도·농간 네트워크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국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140.7억원)

○ 사업규모 : 전국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 행정리 13,217개 마을

('13년까지 구축물량 : 7,065개 마을)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조건 : 국고 100%(망구축은 국비 25%, 지방비 25%, 민자 5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화진흥원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의 고도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전국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 13,217개 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마을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방송통신 발전기금			
합계	3,745			10,635	8,435	16,100	32,200	67,370
'10	482			3,600		2,300	4,600	10,500
'11	728			3,600		3,000	6,000	12,600
'12	728			3,435		3,000	6,000	12,435
'13	752				3,435	3,100	6,200	12,735
'14	1,055				5,000	4,700	9,400	19,100

- 당초 '09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10~'14년까지 국비 684억원을 투입하여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에 광대역망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미비로 '17년까지 망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 [참고]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예비타당성 결과('09년 기획재정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비 고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09.9	109.9	109.9	109.9	109.9	547.5	정부/지자체/사업자 포함 2,190억원
BcN 서비스 활용 여건조성	16	30	30	30	30	136	정부주도로 수행
계	125.9	139.9	139.9	139.9	139.9	683.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마을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방송통신 발전기금			
'10	658			3,600		2,300	4,600	10,500
'11	925			3,600		3,000	6,000	12,600
'12	971			3,435		3,000	6,000	12,435
'13	1,010				3,435	3,100	6,200	12,735

- 광대역가입자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함에 따라, 구축 마을 수 34% 증가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50세대미만 농어촌 망구축비 지원, 50세대이상 융자지원 및 통신사업자 인가조건 등을 통해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유선BcN이용환경 조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	농어촌 유선 BcN 가입율	(농어촌 지역 BcN 유선 가입자수 /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100	%	92	92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소규모 농어촌지역까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도·농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및 IPTV 등 전국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농어촌 특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미흡한 점

- 전국 농어촌지역 망구축을 위한 계획된 정부지원 예산 차질로 지역별 광대역통합망 진척율이 여전히 저조

○ 건의사항

- 2017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율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예산 규모 확대 필요

제4절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1-1-1(계속)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방도혁(사무관) 이재천(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044-201-1586	이메일	dhpang@korea.kr leejc@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 사례 : 농산물(1차)을 가공한 식품과 민예품(2차)을 판매하고, 농촌지역의 역사 · 문화자원 탐방 및 관광서비스(3차) 제공을 결합

※ 지자체에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1차 · 2차 ·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연계 ·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생산 · 가공 · 관광 및 서비스산업 등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향토자원 : 지역성, 역사성, 차별성을 가진 특산제품 · 기술 · 문화 등 유 · 무형 자원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등

2. 사업내용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총사업비 : '10~'13년까지 기투자액(국고) 8,927억원

○ 사업규모 : '13년 기준 6개 내역사업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농공단지는 정액지원

* 지자체 예산한도내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예산 신청을 하여 사업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추진체계

기획재정부	→ ←	농림축산식품부	→ ←	시 · 도	→ ←	시 · 군 · 구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집행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 사업 주요내용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 · 유통 기반 구축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촌형 체험 · 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총사업비 : '13년까지 기투자액(국고) 2,016억원

○ 사업규모 : '13년 기준 82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누계 184개)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 자부담 50%

○ 사업시행주체 : 시 · 도지사(사업주관), 시 · 군 · 구청장(시행기관)

○ 지원내용 : 산 · 학 · 관 · 연 형태의 사업체계 구축 및 네크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 + H/W 포괄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기존 사업의 체계를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의 목표에 부합토록 내역사업을 재편성하여 사업유형별로 예산 편성

* ('11) 17개 내역사업 → ('12) 5개 내역사업 → ('13) 6개 내역사업 → ('14) 7개 내역사업

○ 기획재정부의 예산한도(ceiling)내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도 자율편성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44,163			1,144,163		2,288,326
'10			235,580			235,580		471,160
'11			243,477			243,477		486,954
'12			203,095			203,095		406,190
'13			228,023			228,023		456,046
'14			233,988			233,988		467,976

* '13년 계획액 228,023백만원은 해수부 소관 17,463백만원이 포함된 규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35,580	-	-	235,580		471,160
'11			243,477			243,477		486,954
'12			203,095			203,095		406,190
'13			210,560			210,560		421,120

㉡ 향토산업육성사업

○ '07~'08년 시범사업 실시, '09년부터 1개 세부사업당 3년간 30억원(국고 15, 지방비+자부담 15)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9,350			199,350		398,700
'10	신규 28		34,400			34,400		68,800
'11	신규 29		40,600			40,600		81,200
'12	신규 26		40,900			40,900		81,800
'13	신규 27		43,800			43,800		87,600
'14	신규 21		39,650			39,650		79,3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85		40,200			40,200		80,400
'12	83		40,300	-	-	40,300		80,683
'13	82		43,800			43,800		87,600

※ '12년 : 사업포기(2개)지구 발생에 따라 당초 409억원 보다 6억원이 적은 403억원 집행

※ '13년 : 43,800백만원 중 300백만원 '14년도 이월 집행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28.4%)의 41.9% 수준인 11.9로 목표 미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28.4	11.9	41.9

* 계산식 : ['13년도중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매출액 13,000억원 - '12년도중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매출액11,615억원)/11,615×100 =11.9]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13%)에 비해 346.2% 초과한 45.0% 달성(추정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사업단평균)	((당해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13	45.0	346.2

* 계산식 : [13년도중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매출액(사업당 평균) 3,307백만원 - 12년도중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매출액(사업당 평균) 2,280백만원] ÷ 2,280백만원 × 100 = 45.0%

5. 자체평가

○ 잘된 점

- 농산물의 단순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 농식품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1차(생산), 2차(가공), 3차(체험 · 관광, 서비스) 산업의 복합화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 모델을 형성

* **영주 미소머금고**(고구마빵 제조업체, '11~13년) **매출 추이**

· **2.3억**('10) → 6.3억('11)→ 9.3억('12) → **10억**('13)

○ 미흡한 점

- 농업생산과 연계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지향하나, 일부에서는 관련 경영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미흡으로 산업화 촉진에 한계

4-1-1-2(계속)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 당 자	정명철
전화번호	031-290-0285	이 메 일	jmc6807@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자원을 선발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 사 업 비 : 총 1,945백만원('13년 490백만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추진내용

-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및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향토자원 사업화 가치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 조사대상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및 지원전략 개발을 통한 지자체 향토산업 지원체계 구축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 사업 추진 내용

1) 농촌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

- 세시풍속 활용 실태조사 및 세시풍속 유망자원 발굴
  - · 실태조사 : 체험마을 15, 축제 15(지역 10, 마을 5)
  - · 세시풍속 활용 우수사례 발굴 : 체험마을 5, 축제 5

화순도장밭노래마을(농요)

강릉단오제(학산서낭제)

이천쌀문화축제(거북놀이)

- 전통 마을숲 활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 실태조사 : 115개소(내륙 20, 해안 10, 안동지역 85)
  - · 테마별(축제, 체험, 교육) 마을숲 활용 콘텐츠 우수사례 발굴 : 10개소

영광 법성진숲쟁이(축제)

원주 성황림(체험)

임실 방동마을숲(교육)

2)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화 전략 개발

- 전통생태자원 활용 체험 콘텐츠 개발 : 4종
  - · 생태체험지도, 관찰/관람 체험, 모험/레포츠 체험, 휴양 체험

생태체험지도

관찰/관람 체험

모험/레포츠 체험

휴양 체험

- 생태체험 사업화 단계 및 사업화 전략 개발 : 4유형
  · 하천 및 습지 체험, 숲 체험, 곤충 체험, 농업 체험
- 전통생태자원 평가체계 개발 : 3유형(습지, 노거수, 마을소하천)

습지 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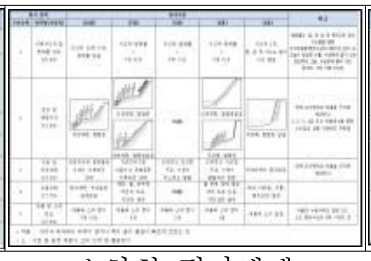
소하천 평가체계

노거수 평가체계

3) 강소농 육성을 위한 팜파티(Farm party) 현장 지원

- 팜파티를 위한 문화콘텐츠 모델 개발 : 2지역(해남, 화순) 24종
  · 팜파티를 위한 농가이야기 스토리북 개발 : 5종
  · 유형별 콘텐츠 모델 개발 : 공연, 전시, 음식, 체험 등 19종

공연콘텐츠

전시콘텐츠

음식콘텐츠

체험/놀이콘텐츠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	-	-	1,177	-	-	-	1,177
'10	13	-	-	257	-	-	-	257
'11	7	-	-	200	-	-	-	200
'12	7	-	-	220	-	-	-	220
'13	7	-	-	250	-	-	-	250
'14	7	-	-	250	-	-	-	250

- 2012년까지는 향토자원 발굴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나누어 추진하였으나 지역별 향토자원 발굴 과제가 종료되면서 자원발굴과 콘텐츠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추진계획을 통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0지역			207				207
'11	9지역			165				165
'12	13지역			440				440
'13	5지역 (발굴145 개소)			490				490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향토자원 발굴 및 문화콘텐츠 개발 건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유망 향토자원 발굴조사	산업화유망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 건수	건	100	145	145%
	향토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콘텐츠별 상품 시개발 건수	건	10	28	28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향토자원 조사·발굴에 머물지 않고 문화콘텐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생태자원 활용 콘텐츠 4건, 팜파티 문화콘텐츠 24건을 개발하였고 이를 농촌지역 활성화와 연계함
- 본 사업의 '강소농 육성을 위한 팜파티 현장지원' 사업을 2014년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의 '전통마을숲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농어업유산 선정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농어업유산 선정에 농업 관련 전통마을숲 조사자료 활용'을 제안하였고 유망 마을숲 조사자료 5건을 사례로 제시하였음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1-3-1(계속)	농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방도혁(사무관) 이재천(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044-201-1586	이메일	dhpang@korea.kr leejc@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하여 농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사업역량 강화

○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판매 등 종합적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농촌 생산품의 수요확대 촉진

○ 농산품 수요확대를 통한 농특산물의 가공확대와 농촌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촉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가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농공단지 조성>

○ 사업 지원대상 : 민간 및 공영으로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지역특화농공단지

○ 사업 규모 : 33만㎡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촌 지역별로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지원내용 :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활력정착지원>

○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공품의 판매확대 지원
- 농촌기업의 수출 판로확보를 위해 해외 소비자 및 바이어 품평회, 판촉지원 등
  ▸ 미국('13.7), 중국('13.10) 시장 확보를 위한 품평회 추진으로 총 10건 342만불 계약 체결

○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농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지원을 위해 6차산업 박람회 개최지원 등

-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여 개발된 우수 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요창출 촉진
- B2B 프로그램을 강화, '바이어의 날' 행사를 통해 농촌기업과 유통업체간 상담 및 계약체결 등 성과 거양
- 출품 업체 간 정보교환 및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 박람회 기간을 전후로 다양한 구매계층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판촉전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구매계층 확보 노력
  * 프로모션 기간 중 참여업체는 판매수수료율을 50% 인하 적용
- 농촌기업의 자금 확보 기회마련 및 농촌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및 참여 업체
▶ 사업 규모 : 박람회 행사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박람회 등 2,251백만원
▶ 지원조건 : 행사비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장소 임대료, 홍보비, 심포지엄, 시상식 등

<6차산업 박람회 주요 결과>

* 향토제품대제전을 부제로 기존 농촌산업박람회('12년 4회)를 개편하여 추진

○ 총 방문객 수 : 85,910명('11년도 63,000, '12년도 85,131)
○ 매출액 등 현장판매액

구 분	전시면적	참여기업	입점상담(체결)	현장판매액
'11	7,892㎡	139개	43건(9건)	1,783백만원
'12(A)	7,560㎡	176개	192(13건)	2,015백만원
'13(B)	10,611㎡	163개	217(12*건)	2,542
증감(B/A)율	140%	**93%**	**113%(92%)**	113%

* 입점체결의 경우 바이어 상담 이후 후속성과 조사 포함

○ 참가 : 74개 지자체, **163개 농촌기업체, 220부스**
* ('12년) 76개 시·군 및 176개 업체, ('11년) 54개 시·군 및 139개 업체, ('10년) 76개 시·군 290개 업체

○ 바이어의 날 행사 및 판매·입점 상담
○ 농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3.8.30)
* 농촌기업 10개사/ 모태펀드 운용사 등 14개사, 엔젤투자자 5명 등이 참석하여 농촌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마련

○ 향토산업 우수제품 경진대회/특별전시
- 선정결과 : 17개제품 선정

3. 연차별 추진계획

① 농공단지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 해당 없음>

- 광특회계 포괄보조지원사업 특성상 지자체 신청에 의해 사업물량이 정해지므로 연도별 예상 조성 수정하기 어려움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11	102개소 (조성 43, 개보수59)	-	526	-	-	964	-	1,490
'12	113개소 (조성 42, 개보수71)	-	462	-	-	1,003	-	1,465
'13	93개소 (조성 32, 개보수61)	-	531	-	-	1,141	-	1,672

② 농촌활력정착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9.4	-	-	-	-	-	119.4
'10		27.6	-	-	-	-	-	27.6
'11		23.1	-	-	-	-	-	23.1
'12		23.7	-	-	-	-	-	23.7
'13		22.5	-	-	-	-	-	22.5
'14		22.5	-	-	-	-	-	22.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22.5	-	-	-	-	-	22.5
'12		23.5	-	-	-	-	-	23.5
'13		22.5	-	-	-	-	-	22.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고용인원 수	전년 인원/금년 목표인원	명	143,000	146,068	102.2
농촌활력정착지원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상담(건) 증가율	(금년도 계약상담(건) - 전년도 계약상담(건))/전년도 계약상담(건)*100	%	10	13	130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체결(건) 증가율	(금년도 계약체결(건) - 전년도 계약체결(건))/전년도 계약체결(건)*100	%	10	△8	△80

* '13년 농어촌산업박람회는 6차산업박람회로 정책홍보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였으며, '13년 연중 국내·해외 바이어 품평회를 추진하여 박람회 기간 외 계약체결 건수가 다수였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창업보육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공기술 교육·보급 및 마케팅 교육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
-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과 연계한 농공단지를 조성,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기여

- **참가업체의 76% 참관객의 93%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함

  · 특히, **70%에 이르는 참가기업이 차기년도 행사참가**를 희망(미정 25%)하여 올해 박람회가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B2B, B2C 비즈니스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 특히, 금회 행사는 향토제품을 단지 알리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판로개척에 주력, 유통업체, 공공기관, 민간대기업 등을 주 타겟으로 함으로써 **유통업체와 참가업체간에 총 464건의 판매·입점 상담 성과**를 거둠

※ **'12년과 '13년 실적 비교**

구 분	전시면적	참여기업	입점상담(체결)	현장판매액
'11	7,892㎡	139개	43건(9건)	1,783백만원
'12(A)	7,560㎡	176개	1」 192(13건)	2,015백만원
'13(B)	10,611㎡	163개	2」 217(12*건)	2,542백만원
증감(B/A)율	140%	**93%**	**113%(92%)**	113%

1」 비즈니스라운지 상담실적 기준이며, 바이어 참가업체 부스 방문 상담실적 389건 포함시 총 581건

2」 비즈니스라운지 상담실적 기준이며, 바이어 참가업체 부스 방문 상담실적 247건 포함시 총 464건

- 농어촌산업박람회(향토제품대제전)으로 개최되던 기존의 박람회를 "6차산업"이라는 농촌산업 육성의 대표 정책과 연계한 박람회로 개편 추진함에 따라 기존 박람회 관람객에게 재홍보 해야하는 등 집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 **일산 및 인근지역 내 집중홍보,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한 타켓 홍보**, 단체관람객 유치, 언론매체 관리, 인근 전시관 **관람객 방문 유도**를 위한 교환권 배포 등이 **박람회의 흥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 또한 기존에 보는 박람회에서 농촌산업에 참여하고, 농촌산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컨텐츠로 보완·개편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자가 참여
- 개막식 당일 개막행사 직전에 주요인사(3명) 참석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리허설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혼란 없이 진행
  - · 아울러, 농촌기업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의류를 패션소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농촌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었음
- 적은 홍보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존 박람회 대비 관람객 유입효과가 크고, **전체적으로 향토기업과 향토제품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독립부스와 시스템부스가 혼재된 상황에서 **지역별 부스색을 달리**하고, 각 부스에 주소(가로·세부)를 부여하고, 동선을 부스별 관람이 용이하게 유도함으로써 **부스탐색이 용이**하였다는 평가임

○ 건의사항

- 농어촌산업박람회 폐지, 대신 농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통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인 계약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바이어 품평회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위한 소비자 판촉전 등을 연중 추진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성과 지표 변경 요청

4-1-3-2(계속)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 당 자	장시연(농촌지도사)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jsy0410@korea.kr

1. 사업목표

○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창업지원

○ 향토음식 상품화 기술보급으로 지역 식문화 전승과 농외소득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 사 업 비 : 105.63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381.74억원)

○ 사업규모 : ('13) 4개사업, 49개소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22),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8), 향토음식자원화사업(9)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식품 가공분야(10)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제50조, 농촌진흥법 제2조·제1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1조, 제12, 제14조, 제24조, 제29조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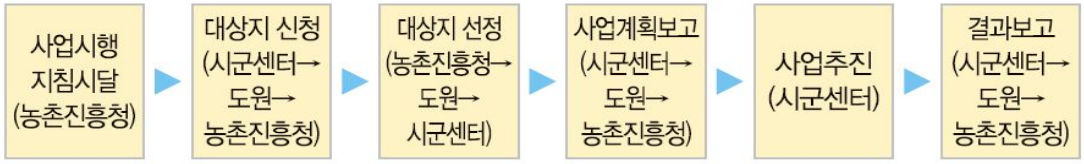

<추진주체별 역할>

농촌진흥청	▪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중앙단위 교육, 기술지원, 평가 ▪ 홍보 · 마케팅 기반 구축 및 유관기관 ·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도농업기술원	▪ 도단위 네트워크 구축, 기술지원, 교육, 홍보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장 운영상황 점검 · 관리, 기술지도 ▪ 농가(마을) 컨설팅 지원, 농가(마을민)교육, 사업 연계 지원 ▪ 사업자 선정 · 세부계획 · 결과보고(센터→도원→농촌진흥청
↓	
시범농가(마을)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비 집행 · 운영

○ 세부내역

- 가공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홍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발굴, 향토음식 자료화,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사업자 역량 개발, 농가맛집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등
- 지역 주산작목에 적합한 가공기술 표준화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 농식품가공 창업 보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508개소 지원을 목표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8		19,419	8,000		21,041		48,460
'10	41		3,706	2,000		3,650		9,356
'11	47		3,706	2,000		4,474		10,180
'12	51		4,533	2,000		4,828		11,361
'13	49		3,974	2,000		4,589		10,563
'14	30		3,500			3,500		7,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41		3,706	2,000		3,650		9,356
'11	47		3,706	2,000		4,474		10,180
'12	51		4,533	2,000		4,828		11,361
'13	49		3,974	2,000		4,589		10,563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성과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4%로 목표치 대비 120% 달성

○ 농촌지역의 향토음식과 솜씨 보유자의 기술이라는 자원을 상품화하는 "향토음식 자원화율"은 128.7%를 나타내어 목표치 대비 107%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매출액 증가율	((지원후 3년차 사업장의 당년 매출액 - 동 사업장의 전년 매출액) / 동 사업장의 전년 매출액)) × 100	%	20	24	120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율	2개 세부지표의 평균값 ①(향토음식 발굴·개발실적 / 향토음식 발굴·개발 계획) ×100 ②(향토음식 자료화 보급 실적 / 향토음식 자료화 보급 계획) ×100	%	120	128.7	10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인의 창업에서 자립단계까지 농가창업 기술지도, 마케팅 활동지원, 농가 생산제품 홍보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4월, 90명), 마케팅 및 홍보지원(농가맛집 지도제작, 직거래장터 지원, 우수상품 전시 등), 가공경진 시상 등

- 타 부처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력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 창출
  * 농식품부 등 7개 유관기관 (3월, 업무 협의회 70명), 중기청(7월, 경영개선교육 80명)
  *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장 대표자 경영·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추진
  * 한국관광공사와 음식관광 활성화 공동 캠페인으로 농가맛집 우수사업장 홍보(농식품부-문체부 음식관광 활성화 협업과제)
-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의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센터를 농산물 가공기술 전담기관으로 육성
  *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 ('10~'13)16개소
  * 농산물가공전문가 교육(3~4월, 2기 73명), 사업담당자 워크숍(6월, 47명)
- 전문가 연계 현장 모니터링으로 애로사항 조기발굴 및 해결
  * 종합가공센터 현장 기술지원(8시군, 6~11월), 농가맛집 현장 모니터링(24개소)
- 농산물가공연구회 육성으로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
  * 농산물 가공연구회(한과·장류·음료분과) 육성
- 지역의 선도 품목(사업) 특성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 선도
  * 지역농업특성화 시군담당자 워크숍(4. 9, 110명) 및 우수시군 선정(10월, 10개소)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유형별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월, 500부)

<농산물가공연구회 교육>

<우수 제품 전시(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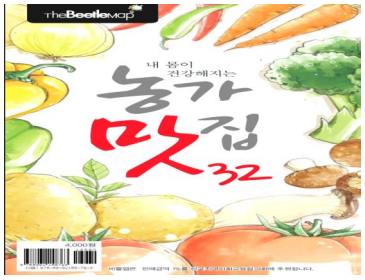

<농가맛집 지도 발간>

○ 미흡한 점
- 다양한 가공장비에 대한 정보부족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건의사항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량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4-1-3-3(계속)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 당 자	조록환 연구관
전화번호	031-290-0270	이메일	tryjolh@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농가민박, 오토캠핑, 농촌교육농장,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등 농어촌에 다양한 관광상품 제공

○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관광 사업육성 및 기반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 사업규모 : 2,000백만원('13년 450백만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추진내용

- 농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 농촌교육농장 운영 및 법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농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디자인 실태 조사 및 디자인 요소 분석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 추진내용

가. 농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 푸드투어리즘 유형별 목표시장 설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 푸드투어리즘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 증진 방안 개발
  -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농가 음식관광 성공사례' 책자 발간 : 1,000부
- 지역 특산 향토음식을 활용한 맛기행 루트 개발: 3종(와인, 한우, 국수)
- 한국형 푸드투어리즘 외래관광객 유치 및 서비스방안 개발
  - · 음식관광객 특성분석, 외국인관광객 서비스전략 개발(중국어권, 영어권)

나. 농촌교육농장 운영 및 법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농촌교육농장 목표고객 및 유형별 운영방안 도출 : 1종
-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 : 2종
  - · 농촌교육농장 보험상품 개발 및 품질 인증 개선방안 도출

다. 농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디자인 실태 조사 및 디자인 요소 분석

-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개선방안 도출 : 3유형
  - · 표준규격표시 디자인 2유형(과일·채소류, 발효·가공류), 택배용 디자인 1유형
- 농촌관광마을 포장디자인 가이드 북 발간 : 1000부
  - ·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및 법규, 디자인 가이드(가공류, 발효류, 택배포장) 등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실태조사 및 시설 유형 분석 : 2유형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2,300				2,300
'10	5			700				700
'11	5			400				400
'12	5			400				400
'13	5			400				400
'14	5			400				4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			700				700
'11	5			420				420
'12	5			390				390
'13	8			450				4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관광상품개발 건수 8건 : 16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 제고	농촌관광상품개발	상품개발건수	건	5	8	16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 음식관광 연구과제 선택으로 농촌 지역농특산물의 수요확대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을 통하여 농촌관광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음
- 농촌교육농장 보험상품개발 방안도출 및 현장활용가능한 보험상품개발로 농촌교육농장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수요확대가 기대됨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1-4-2(계속)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담 당 자	조안태
전화번호	044-201-2185	이메일	call118800@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농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 산·학·연·관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지역전략식품('17까지 90개)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시설비는 자부담 20%)

○ 사업추진체계 : 산·학·연·관 사업단 구성→지자체→농식품부 선정(사업단), 평가 및 국고보조금 지원 →지자체(보조금 교부 및 사업단관리 등)

○ 지원내용 :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등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 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1,894억원)

○ 추진실적 : 지역전략식품 67개소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2,078			102,260		204,338
'10	34		32,200			32,000		64,200
'11	41		28,560			28,400		56,960
'12	28		18,220			18,060		36,280
'13	18		14,840			14,680		29,520
'14	12		9,158			9,120		18,278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4		32,200			32,000		64,200
'11	41		27,760			27,600		55,360
'12	28		17,911			17,751		35,662
'13	19		12,905			12,745		25,6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흑자사업단 비율	(흑자사업단개소/평가대상사업단)×100	%	50	53.8	10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예비사업단 민간전문가 컨설팅(4회)을 통하여 사업추진 체계 및 사업방향 제시로 민간보조사업자 지원 효율성 확보

- 사업단 컨설팅을 통하여 '13년 사업비 절감(국비 1,934백만원)

○ 미흡한 점

- 사업단의 자조적인 자립화 및 사업단연합회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한 '14년 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4억 정도) 미 확보

○ 건의사항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 및 사업단 공동마케팅을 위한 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금(4억원) 지원

4-2-1-1(계속)	①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송현주(사무관)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90	이메일	songhjoo@korea.kr yujj8610@korea.kr

1. 사업목표

○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9		2,436			2,308		4,744
'10	114		336			336		672
'11	106		442			442		884
'12	107		390			351		741
'13	140		544			503		1,047
'14	142		688			640		1,32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110		484			444		92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당초계획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체험관광인프라 조성	테마공원조성	사업장 수	개소	65	65	100
	체험마을조성	사업장 수	개소	45	4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13년도 사업도 기본방침 충실히 이행 : 예산신청 전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의무이행, 총사업비 규모 30억원이상 사업 사업성검토 실시, 조성규모는 시·군당 1개 지구 조성 원칙 등
- '14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13.3)
  ·검토결과 6개도 9개 시·군·구 중 6개 타당성 확인 및 결과 통보
- '14년 신규 지구 예산신청(안) 적정성 검토('13.5~6)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서면 모니터링 실시('13.7~8)
  ·'07~'13년까지 조성 중인 65개 지구

- '14년 신규 및 계속지구 예산신청 및 반영('13.6, 기재부)
  ·신규 3, 계속 32개 지구, 34,368백만원
- '13년 말 기준 16지구 개장, 49개 지구가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공사중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 농촌관광 등급평가 실시(7월~11월) : 200개소(체험마을 118, 관광농원 3, 농촌민박 79)
-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45개소(1~12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신규지정 103개소(누계 803개, 1~12월)
-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389명)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보험 386개 마을, 화재보험 159개 마을 지원(1~12월)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역 20개소 선정심사 및 개발(3~6월)
- 농어촌체험마을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계획 수립(1월) 및 교육 실시(3~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평가 및 결과 후속조치(4~9월)
  ◦ 308개 마을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대상마을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체험마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4~9월)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2-1-1(계속)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담 당 자	남우진(사무관) 변민준(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657 044-200-5660	이메일	wjnam@korea.kr pw4344@korea.kr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에 대한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657억원)

○ 사업규모 : - 개소(개소 당 50억원 내외)

- '13년까지 35개소 착수 20개소 완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 추진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추진체계 : 시·군(사업신청) → 시·도(대상자 추천) → 기재부·해양수산부(대상자선정) → 시도(선정통보)→ 시·군(사업집행·관리)

○ 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도농교류촉진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13개소에 대해서 160억원(국비80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6	-	38,211	-	-	38,211	-	76,422
‘10	12	-	6,344	-	-	6,344	-	12,688
‘11	12	-	7,190	-	-	7,190	-	14,380
‘12	13	-	8,476	-	-	8,476	-	16,952
‘13	13	-	7,976	-	-	7,976	-	15,952
‘14	16	-	8,225	-	-	8,225	-	16,450

- 동 사업은 광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세부내역사업(어촌어항관광개발)으로 ‘12년까지 “어촌관광단지조성(세세사업)”사업에 한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 세부내역사업 내 사업내용이 유사한 “낚시 등 공원조성(세세사업)”사업을 시행계획에 추가포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2	-	6,344	-	-	6,344	-	12,688
‘11	12	-	7,190	-	-	7,190	-	14,380
‘12	13	-	8,476	-	-	8,476	-	16,952
‘13	13	-	7,976	-	-	7,976	-	15,952

- 동 사업은 광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세부내역사업(어촌어항관광개발)으로 ‘12년까지 “어촌관광단지조성(세세사업)”사업에 한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 세부내역사업 내 사업내용이 유사한 “낚시 등 공원조성(세세사업)”사업을 시행계획에 추가포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체험마을 소득 증가율은 목표치 105% 달성

- '13년 정부조직개편(농림수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으로 우리부 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신규설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 증가율(%)	{(당년도 체험마을 체험소득-전년도 체험마을 체험소득)/전년도 체험마을 체험소득}×100	%	26.2	27.5	10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서 도시민에게는 생활의 활력을 어업인에게는 어업 외 소득증대 기회제공

○ 미흡한 점

-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신규사업의 수요는 추가발생되어 평균사업비 축소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발생

○ 건의사항

-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투자규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관리 필요

4-2-1-2(계속)	산림휴양공간 조성(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 당 자	박상춘
전화번호	042-481-4212	이메일	pscfoa@forest.go.kr

1. 사업목표

○ 산림의 보건·휴양기능 극대화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8년 ~ 계속

○ 총사업비 : 6,936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6,936억원)

○ 사업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유자연휴양림(직접), 공유자연휴양림(국고보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조건 ┌자연휴양림(50억 기준) : 국유(국고100%), 공유(국비50%, 지방비50%)
  └공유산림욕장(4억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절차

사업대상지 지정고시 (산림청장) ⇒ 사업계획서 수립 승인신청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 ⇒ 사업계획 승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 조성공사 계약체결 ⇒ 시공 및 준공 ⇒ 정 산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행(2008~2017)

○ 2013년도 추진 내용

- 자연휴양림 설계 : 4개소(국가1 , 지방자치단체 3)
- 자연휴양림 조성 : 17개소(국가 3, 지방자치단체 14)
- 자연휴양림 보완 : 70개소(국가 37, 지방자치단체 33)
- 산림욕장 조성 및 보완 : 11개소(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8	-	1,877	1,667	-	1,877	-	5,421
'12	94		333	467		333		1,133
'13	113		381	210		381		972
'14	141	-	305	210	-	305	-	820
'15	150	-	420	380	-	420	-	1,220
'16	150	-	438	400	-	438	-	1,276

※ 연도별 사업개소는 누적치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113	-	381	210	-	381	-	97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림휴양 공간조성	지자체자연휴양림연간가동율	(지자체자연휴양림이용객실수/지자체자연휴양림총객실수)×100	%	44.0	54	123
	국립자연휴양림이용자만족도(%)	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인이용자를대상으로리커트 5점척도측정후100점기준으로환산	%	85.0	83.0	9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산림휴양시설 확대
- ‘숲체험 나눔사업’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인프라 확대
  · 노약자, 장애인 등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을 도입한‘숲체험 나눔사업’ 추진 (무장애데크로드 4개소, 나눔객실 20실)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경기 양주, ’11～’14, 80억원)
  · 아세안 10개국의 전통주택을 조성하여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향수 달래기 및 문화체험의 장 제공, 한·아세안 우호 증진 목적

○ 미흡한 점

-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대가 요구됨

○ 건의사항

-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4-2-1-3(계속)	수목원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과	담 당 자	장영택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dx0106@forest.go.kr

1. 사업목표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2,720억원)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지원대상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13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54개 수목원 및 박물관 지원)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지사)	⇒	사전타당성심사 및 결과 통보 (산림청)	⇒	광특예산 확 정 (국회)	⇒	국고보조금 교 부 (산림청)	⇒	사업실행 (지자체)	⇒	사업완료 보고 (지자체)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지방수목원 : 60억원,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산림박물관 : 40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추진내용 : 국가식물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집·증식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박물관을 확대 조성

○ 추진근거

- 「산림기본법」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37개소에 대해서 181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3	-	104,109	-	-	103,976	-	208,085
'10	34	-	19,733	-	-	19,733	-	39,466
'11	38	-	27,752	-	-	27,752	-	55,504
'12	32	-	23,776	-	-	23,776	-	47,552
'13	37	-	18,133	-	-	18,133	-	36,266
'14	32	-	14,715	-	-	14,582	-	29,297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34	-	19,733	-	-	19,733	-	39,466
'11	38	-	27,752	-	-	27,752	-	55,504
'12	32	-	23,776	-	-	23,776	-	47,552
'13	37	-	18,133	-	-	18,133	-	36,26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83.8%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누적 평균 확보량	공립수목원의 식물자원 확보량 평균	종	2,000	1,676	83.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국민소득·휴양문화 확산으로 녹색생태 탐방·체험·교육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으로 국민 서비스 강화
- 생물다양성 협약(CBD, 02)이후 기후변화·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가 강화되어 생물다양성의 안정적인 확보, 연구 기반 확충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집행 대책회의, 현지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도모

○ 미흡한 점

- 사업추진의 예산확보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수목원 조성 사업지연
- 식물자원확보가 미진한 공립수목원 신규등록으로 공립수목원의 식물자원확보량 평균이 감소됨

○ 건의사항

- 없음

4-2-1-4(계속)	말산업 육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담 당 자	하욱원(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24	이메일	hauw@korea.kr

1. 사업목표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 투자액 : 600억원)

○ 사업규모 : '17년까지 승마시설 500개소, 승마인구 200만명 확보

○ 지원형태, 조건 : 보조(20~50%), 융자(20~70%), 민간대행(10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농축협, 마사회, 민간단체, 농업인 등

○ 추진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승마시설 26개소 등	-	-	29,300	-	36,600	-	65,900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승마시설 11개소 등	-	-	9,300	-	11,600	-	20,900
'14	승마시설 15개소 등	-	-	20,000	-	25,000	-	45,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승마시설 11개소 등	-	-	9,300	-	11,600	-	20,9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 신고 개소수 목표치 105%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말산업육성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개소)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 신고 개소수	개소	20	21	10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말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말산업 육성법' 제정·시행('11.7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12.7월)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미흡한 점

- 지속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되어, 사전에 심사를 강화하고 공공성, 인허가 용이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토록 조치하고 있음

○ 건의사항

- 말산업 육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동 산업이 성장하여 농업분야 6차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4-2-2-1(계속)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송현주(사무관)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90	이메일	songhjoo@korea.kr yujj8610@korea.kr

1. 사업목표

○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력회복과 농외소득 증대 및 도농간 균형발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고 100%), 지자체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13				268	15	1,096
'10		183				67	5	255
'11		169				72	5	246
'12		158				51	5	214
'13		138				36		174
'14		165				42		207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131				36		16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는 농어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계획보다 초과하였으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일자리증가율	{(당년도 일자리수-전년도 일자리수)/전년도 일자리수}	%	29	29	100
	체험마을 매출액증가율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수-전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수)*100	%	10.6	10.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도농교류 촉진>

- 2013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계획 수립('13.3월)
- 2013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3.6월)
  ·305개 체험마을 및 지자체(11) 참석, 방문객 93천명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 20개소 선정심사 및 개발(3~6월)

- 1사1촌 우수기업, 단체, 기관 사회공헌인증 등을 통해 농어촌마을과 결연 확대
  ·1사1촌 결연 : ('12) 9.6천개 → ('13) 10.4천개
- '13년도 도농교류 정부포상 추진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21

<농어촌 축제>

-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주도의 농촌 마을·권역 단위 축제 지원 확대
  ·지원실적 : ('12) 33개 축제 → ('13) 37개

<도농교류협력사업>

- 도농교류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지원조건 등 공모방식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 '13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13.1)
  ·211개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 체험마을 응모
- 1차 전문가 서류심사 및 2차 심사회 실시('13.1)
  ·최종 103개 선정 : 민간단체 25, 초등학교 49, 체험마을 5, 체험휴양마을협의회 9, 농어촌 인성학교 15개
  * 농어촌 인성학교는 별도 추진('13.4)
- 도농교류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3.1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389명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보험 386개 마을, 화재보험 165개 마을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리더, 주민 등의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1월)
- 체험마을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13.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평가 및 결과 후속조치(4～9월)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4～8월), 관리대상마을 워크숍 개최(9월)
- 체험마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4～9월)
  ·체험휴양마을 통합관리, 문서수발, 교육관리, 메신저 연계 등
- 농어촌체험마을 대표·사무장 역량강화 교육(4,523명, 2～12월)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2-2-2(계속)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종자생명산업과	담 당 자	이수현
전화번호	044-201-2477	이메일	shlee29@korea.kr

1. 사업목표

○ 도시농업을 전시·체험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5억원)

○ 사업규모 : 도시농업박람회 1식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 제1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2억원, 서울시)

○ '13년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3억원, 대구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박람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0				800		1,600
'10	-	-	-	-	-	-	-	-
'11	-	-	-	-	-	-	-	-
'12	1식	200	-	-	-	200	-	400
'13	1식	300	-	-	-	300	-	600
'14	1식	300	-	-	-	300	-	6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박람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1식	200	-	-	-	200	-	400
'13	1식	300	-	-	-	300	-	6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관람객 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박람회 관람객 수	계획 대비 실적	%	20,000	133,000	66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각 시·도,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임을 감안하여 제1회 박람회 대비 예산 확대(50%) 지원
-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농업 박람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홍보하고,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

○ 미흡한 점

-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작공간, 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

○ 건의사항

-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4-2-3-1(계속)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문체부)

담당부서	관광개발지원과	담 당 자	최계원
전화번호	044-203-2884	이메일	hasllar@korea.kr

1. 사업목표

○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 지역을 활용한 체류형·체험관광을 통해 '느리고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문화 정착 유도

※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 :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 즉, 자연친화적 환경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며 삶의 질적향유를 추구하고, 현대인들의 인간다움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 총사업비 : 해당없음('11년까지 기투자액 : 119억원)
- 사업규모 : 슬로시티 인증지역 대상 사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자본보조,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추진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12,920	12,920		25,840
'10	6				5,050	5,050		10,100
'11	10				2,000	2,000		4,000
'12	12				1,850	1,850		3,700
'13	12				2,250	2,250		4,500
'14	10				1,770	1,770		3,54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6				5,050	5,050		10,100
'11	10				2,000	2,000		4,000
'12	12				1,850	1,850		3,700
'13	12				2,250	2,250		4,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방문객 증가율	한국관광지식 정보시스템 통계	증가율	3	4.5	150

※ 2013년 한국관광지식 정보시스템 통계 미집계로 상반기 측정(231십만명→245십만명)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슬로시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

○ 건의사항

- 슬로시티 인증지역이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악형, 도시근교형 (제천, 남양주, 전주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지정되므로 본 과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제외

4-2-4-1(계속)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 당 자	농촌지도사 임은성
전화번호	031-299-2677	이메일	lim77@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체험관광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품질관리 강화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이용하여 유치원, 초중고교의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 하는 농장을 육성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 및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증진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형성 및 품질관리, S/W개발 등 명소·명품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총사업비 : 64억원('12년까지 기투자액 : 187.8억원, 국비 50%)

○ 사업규모 : 6개 사업, 1,680개소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 명품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농촌체류형 민박기술 보급, 지역농업특성화 어메니티 분야 등

○ 사업량('13) : 60개소, 32억원(국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기관별 역할 분담

기 관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국립농업과학원)	▷	❍ 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평가 ❍ 전문교육, 지도자료 지원, 사업 홍보 등 ❍ 중앙단위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도농업기술원	▷	❍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주관, 기술지원, 홍보 등 ❍ 도단위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시군농업기술센터	▷	❍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주관, 사업추진 지원 ❍ 농업인 교육, 홍보 등

○ 세부사업내용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 · 농산어촌체험관광 지역 협의체 구성 및 one 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 · 농촌관광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농촌관광대학 운영 등) 및 컨설팅
  -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 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개발
- 농촌교육농장 육성
  - · 전문가 컨설팅,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교구교재 및 워크북 제작
  - · 농장주의 운영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 농촌체험 명품화
  - · (상품혁신) 환경친화적 시설정비, 마을갤러리 등 H/W, 명품체험 S/W
  - · (운영체계) 커뮤니티 비즈니스체계구축, 법인화 또는 사회적 기업화
  - · (인적자원) PBL 문제중심학습교육, 어메니티자원활용 기술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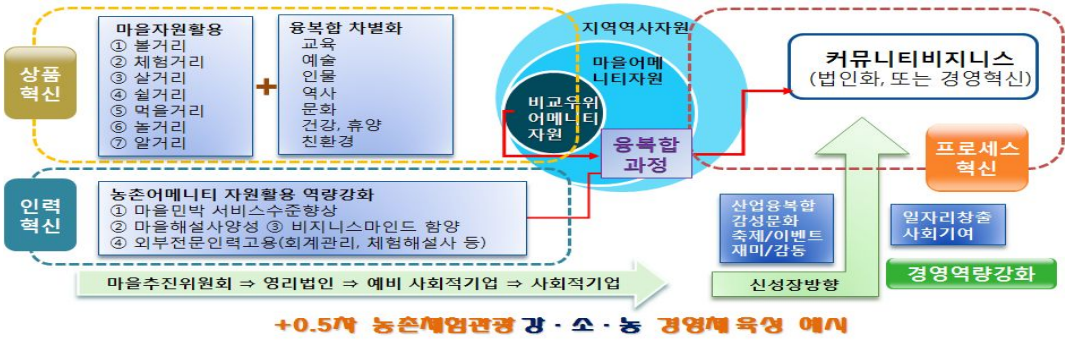

- 농촌 체험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교구·교재 제작 등
- 농가민박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컨설팅 실시
- 어메니티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농업 특성화
  - · 지역의 농업기반과 농촌자원의 특성을 살린 어메니티 기반 조성
  - · 농촌관광 핵심리더 양성 및 시군간 관광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1조(농어촌산업 진흥),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체험관광 수요자에 대한 수용능력과 기 조성된 농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6개 사업 1,680개소를 목표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2		15,400	560		1,560		31,920
'10	109		2,050			2,050		4,100
'11	105		2,000	220		2,220		4,440
'12	84		1,900	90		1,990		3,980
'13	104		3,600			2,800		6,400
'14	225		7,500	250		7,750		15,5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09		2,050			2,050		4,100
'11	105		2,000	220		2,220		4,440
'12	84		1,900	90		1,990		3,980
'13	104		3,600			2,800		6,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대상자 만족도 : 93.4
- '13 농촌교육농장 방문객 만족도 : 89
- '13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만족도 : 89.4

⇒ 분야별 조사결과 90.6%로 목표대비(79%) 114.6% 초과 달성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지원	수혜자 만족도	3개 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 (5점 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 - 대상자만족도(당해년도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대상자) - 방문객만족도(당해년도 농촌교육농장 방문객) - 교육생만족도(당해년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생)	%	79	90.6	114.6
	사업량	4개 사업(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명품화,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개소	45	4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장단위 표준화된 농업농촌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계와 소비자에게 신뢰받기 위한 품질인증 농장 선정 : 48농장

· 품질인증 평가 기준 마련 : '13. 7. 26('12 용역연구 결과 및 전문가 논의)

* 농업 자원, 교육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교육 환경, 교육 서비스 등 5항목 72지표

* 기준 : 인증(80점 이상), 예비 인증(60점 이상~80점 미만), 탈락(60점 미만)

·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로 농촌교육농장 자긍심 고취

· 품질인증 농장(48) 포털 사이트(happyfarm.or.kr) 구축 및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자료집 제작하여 홍보 아이템으로 활용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개념 및 절차) 및 선정농장(48개소) 프로그램(일반현황, 교육장, 교구 사진, 교육활동계획안, 워크시트, 활동 사 등) 소개

- 농진청·코레일·지자체 협력을 통한 레일그린 활성화 : 13개소

  · 레일그린 협력지자체 추가 선정 : ('12) 8 → ('13년)13개소

    *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 보완

    * ('12) 본사중심, 토,일 2회 운영 → ('13) 지역본부 중심, 수, 토, 주중 상시운행

  · 생산자 및 지역 공동체가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 : 11개소

    * 이동식 파머스마켓 **"황금마차PX"** (철원, '12. 11월 개장), **매출액 : 250백만원**

  · 지자체에서 **농촌체험관광 해설사**로 육성 : 866명

    * 농촌체험관광 해설사에 의한 안내 설명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농촌체험 상품 개발·운영 만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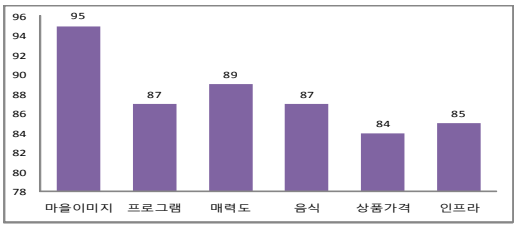

만족도 조사('13.5.25~6.8)

- ▸마을**이미지(마을경관, 자연환경)** 95점
- ▸프로그램(농촌문화,볼거리,체험거리,놀거리) 87점
- ▸매력도(향토음식, 농특산물, 주변자원) 89점
- ▸재방문의사 76%

○ 미흡한 점

- 농촌체험학습장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13년에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나 구속력과 실효성이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시범 추진 : ('13) 48 → ('14) 118 → ('17) 409개소

- 기 개발된 우수한 농촌자원 컨텐츠(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등)의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시스템이 미약

- 코레일・지자체 상품운영 애로사항 발굴・공유 협업 매뉴얼 미비

○ 건의사항

- 농촌체험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단계별 성장 관리 및 브랜드화 추진, 차별화된 컨텐츠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농촌체험 명품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4-2-4-2(계속)	초등학생의 농어촌체험·교류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사업목표

○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에 대해 농어촌을 체험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농어업 우호세력 및 미래의 건전한 농수산물 소비자 육성

2. 사업내용

○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의 1교1촌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된 농어촌 체험학습 운영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 지원대상 :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국 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5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3) 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촌 체험마을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 '13년부터 팜스쿨에서 도농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	11						11
'10	20	1						1
'11	20	2						2
'12	30	3						3
'13	50	5						5
'14	50	5						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50개소	5						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팜스쿨	운영학교 개소수	운영학교 개소수	개소	50	49	9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단순히 체험마을 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교내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제5절

문화·여가여건 개선

5-1-1-1. (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	담 당 자	윤덕영
전화번호	044)203-2622	이메일	enosh@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하고 정보 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사업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지자체) → 예산신청서 검토(문화부) → 정부지원예산 확정(기획재정부) → 예산확정(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문화부) → 예산집행 및 정산(지자체)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지원조건 : 지방비 및 부지 확보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 주요내용
  -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건립비의 80%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1관당 한도액: 16억원)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개관 건립 목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		45,062			34,888		79,950
'10	19		14,595			14,877		29,472
'11	15		11,058			8,010		19,068
'12	11		5,995			4,867		10,862
'13	10		10,005			5,631		15,636
'14	4		3,409			1,503		4,91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9		14,595			14,877		29,472
'11	15		11,058			8,010		19,068
'12	11		5,995			4,867		10,862
'13	10		10,005			5,631		15,63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수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신규개관 수	관	6	7	11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건립·운영 내실화 도모
  · 신규 건립 예정 농어촌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건축·개관 준비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13년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

○ 미흡한 점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13년 말 기준 6.1만명당 1개관)

※ 미국 3.3만명('09년), 영국 1.3만명('09년), 독일 1만명('11년), 일본 4만명('11년)

○ 건의사항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한도액 증액('04년 이후 동일) 필요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율: 총 건립비의 80%, <u>최대 16억원 한도</u>
일반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율 : 총 건립비의 40%, 한도액 없음

5-1-1-2(종료)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	미래인재기반과	담 당 자	박영미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563	이메일	ympark@msip.go.kr

1. 사업목표

○ 지역특성을 고려한 테마 중심의 중·소규모 과학관 건립을 지원하여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

○ 총사업비 : ('13년까지 기투자액 : 365억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과학관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2~3년간 최대 10억원까지 매칭 지원

○ 사업 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친화적인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취약한 지방과학기술문화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과학관육성법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14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9(2)				4,000	4,000		8,000
'11	9(4)				3,000	3,000		6,000
'12	6(1)				2,000	2,000		4,000
'13	4				1,400	1,400		2,800
'14	-				-	-		

* ( )는 신규 과학관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9(2)				4,000	4,000		8,000
'11	9(4)				3,000	3,000		6,000
'12	6(1)				2,000	2,000		4,000
'13	4				1,400	1,400		2,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과학관 확충 정책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34개 건립이 목표였으나, 총 39개를 건립하여 목표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신규 건립 지원 수	개수	34	39	114.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지방 소도시의 과학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대

- 테마과학관 '09년 16개에서 '13년 39개로 확충
- 우주·천문, 조류·곤충·갯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과학문화 접근성 제고 및 생태체험기회를 확대

5-1-2-1(계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 당 자	최대경
전화번호	044-203-3139	이메일	mabarian@korea.kr

1. 사업목표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5개소 지원('13년도 까지 48개소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375억원

○ 사업 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35조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연차별 추진계획

○ '10~'14년 복합체육시설 25개소 지원(매년 5개소)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		480		12,000	4,120		16,600
'10	5				3,000	750		3,750
'11	5				3,000	750		3,750
'12	5				3,000	750		3,750
'13	5				3,000	750		3,750
'14	1		480			1,120		1,600

- '14년부터 동 사업이 체육기금에서 광특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개소당 6억원 정액지원에서 국비 30% 정율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				3,000	750		3,750
'11	5				3,000	750		3,750
'12	5				3,000	750		3,750
'13	5				3,000	750		3,7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00% 달성 목표 5개소 → 완료 5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개소수	지원개소수	개소	5	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일정대로 추진됨

○ 미흡한 점

- '14년부터 동 사업의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광특(지역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소 당 6억씩 정액지원에서 사업비의 30% 정율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바뀌었고,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추진방식도 바뀜에 따라 정부의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5-1-3-1(계속)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	담 당 자	이옥주
전화번호	044-203-2630	이메일	iokju@korea.kr

1. 사업목표

○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유휴 공공시설 및 노후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원(재정자립도 30% 미만은 70%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해소의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조성지원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13. 9월

○ 신청 접수 : '13. 10 ~ 11월

○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 '14. 1월

○ 사업비 시도 교부 : '14. 2월

○ 조성사업 시행 : '14. 2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접수 : '14. 1 ~ 2월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30		3,395		8,225
'10	14			797		548		1,345
'11	19			1,147		583		1,730
'12	22			1,143		687		1,830
'13	15			932		613		1,545
'14	10			811		964		1,77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4			797		548		1,345
'11	19			1,147		583		1,730
'12	22			1,143		687		1,830
'13	15			932		613		1,54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농어촌 작은도서관 개관 수	읍면지역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 수	관	15	1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정보 습득과 도서관이용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간,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의 장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고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 간 균형 및 사업추진의 안정화 도모

○ 미흡한 점

- 작은도서관 조성 이후 운영 내실화 미흡

○ 건의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관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지도 및 지원 필요

5-1-4-1(계속)	지역문화 컨설팅기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 당 자	김현정
전화번호	044-203-2556	이메일	khjjung@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지역문화재단(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문화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연간 4억원('12년까지 기투자액 : 36.9억원)
○ 사업규모 : 매년 14개 내외 컨설팅 과제 지원
('13년까지 138개 과제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50% 매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지역 대학)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 연차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사업 컨설팅, 지자체간 연계 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광특회계(부처편성사업) 편성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81			2,081		4,162
'10	15		448			448		896
'11	14		430			430		860
'12	13		429			429		858
'13	13		408			408		816
'14	15		366			366		73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5		448			448		896
'11	14		430			430		860
'12	13		429			429		858
'13	13		408			408		81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결과 활용도	사업실적 보고	점	82	84	102.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증가 추세로 지역 대학에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주관기관 범위 확대

○ 미흡한 점

-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은 지역의 문화정책 현안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결과를 통해 지역정책에 반영되고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구용역 또는 사업 제안서 형태로 추진한 사례가 있음

5-2-1-1(계속)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	담 당 자	류현욱
전화번호	044-203-2733	이메일	eric7729@korea.kr

1. 사업목표

○ 전국 문예회관 및 연계된 소외시설 등에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지원조건 : 정액, 국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주요내용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 및 연계시설 파견 공연

○ 시도별 배분내역 : 지역별 문예회관 대상 공모사업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에 위치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과 연계소외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실시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2월 중)
- 국립예술단체 프로그램 협의 및 문예회관 대상 사업공지 (3월 중)
- 문예회관 사업 신청 및 배정(4월 중)
- 사업 실행 및 평가(4월~12월)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1개 지역 (328,068)			11,793	2,900			14,693
'10	51개 지역 (55,000명)			2,500				2,500
'11	80개 지역 (67,068명)			3,375				3,375
'12	80개 지역 (72,000명)			3,035				3,035
'13	80개 지역 (67,000명)			2,883				2,883
'14	80개 지역 (67,000명)			-	2,900			2,900

* '14년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예산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통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1개 지역 (55,000명)			2,500				2,500
'11	80개 지역 (67,068명)			3,375				3,375
'12	75개 지역 (65,920명)			3,035				3,035
'13	78개 지역 (61,103명)			2,883				2,88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성과 : 소외지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레퍼토리 및 맞춤프로그램을 파견하여 소외지역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 성과 목표치 : 수혜인원 67,000명, 실적치 61,103명
  ※ 사업 수혜지역 80개 지역, 실적치 78개 지역
  ※ 참여 문예회관 : 78개소/연계시설 : 41개소(공연 횟수 : 136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수혜인원	자체 조사	명	67,000	61,103	91.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을 지원하여 소외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하고 지역문화예술 수준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

○ 미흡한 점

- 국립예술단체 안정적인 공연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2-1-2(계속)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담 당 자	김영란 김주녕 박선주
전화번호	02-3413-4756 02-2077-9307 02-3704-4526	이메일	keaijin@korea.kr joonyeung@korea.kr seonju37@korea.kr

1. 사업목표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찾아가 함께 책읽기 등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고 안정적인 독서기반을 제공하여 문해력 증진 및 독서 문화 격차 해소

○ 농·어촌, 산간지역 및 중·소도시의 학교, 복지시설 등 문화체험 기회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문화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 마련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축소된 형태의 작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학교에 문화교육 확대

2. 사업내용

가. 찾아가는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2,894백만원('13년 투자액 : 733백만원)

○ 사업내용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지원

○ 추진실적 : 전국 135개 공공도서관 및 참여기관(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2,700명 참여, 독서프로그램 4,320회 운영 및 도서 43,796책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절차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운영도서관 공모 ('13.1월) → 운영도서관 선정('13.2월) → 전국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지원('13.2월~11월) → 운영 평가('13.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도서관 및 독서관련 비영리단체)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①항 제8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시행령 제12조(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제2호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제4호 농산어촌의 주민

나.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추진기간: 2013. 8월 ~ 12월 .

○ 추진실적: 13회, 13개 지역(장소), 7,985명 참여

○ 주제별 전시 주제를 가지고 복제유물전시, 탑본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119,812천원

○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 지원형태/조건 : 직접수행/전액 국고

○ 추진내용 : 전국의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전시버스관람, 체험교육 운영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 사업기간 : 2013. 3. 13 ~ 11. 22

○ 총사업비 : 84,000천원

○ 사업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 지원형태/조건 : 직접수행/전액 국고

○ 추진내용 : 전국의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전시버스관람, 체험교육 운영

※ 2013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결과 : 총 57회, 명 4,180명 참여

차수	교육일	지역	학교	참여인원 (단위:명)
1차	3월 13일	강원 철원	문혜초등학교	87
2차	3월 14일	강원 양구	죽리초등학교	80
3차	3월 15일	강원 철원	토성초등학교	40
4차	3월 27일	경남 의령	정곡초등학교	26
5차	3월 28일	경남 창원	우산초등학교	44
6차	3월 29일	경남 창원	하북초등학교	100
7차	4월 9일	전북 군산	개정초등학교	73
8차	4월 10일	충남 보령	주포초등학교	51
9차	4월 11일	충남 당진	합덕신촌초등학교	47
10차	4월 24일	경남 함안	법수초등학교	53
11차	4월 25일	경남 하동	적량초등학교	49
12차	4월 26일	경남 진주	수곡초등학교	58
13차	5월 8일	강원 화천	풍산초등학교	67
14차	5월 9일	강원 속초	청호초등학교	50
15차	5월 10일	강원 고성	천진초등학교	58
16차	5월 22일	경남 김해	대감초등학교	43
17차	5월 23일	경남 밀양	태룡초등학교	51
18차	5월 24일	경남 창녕	장마초등학교	33
19차	6월 11일	경북 청도	풍각초등학교	84

20차	6월 12일	경북 칠곡	낙산초등학교	83
21차	6월 13일	경북 의성	다인초등학교	81
22차	6월 14일	경북 상주	모서초등학교	67
23차	6월 19일	전남 여수	봉덕초등학교	48
24차	6월 20일	전남 순천	월등/황전초등학교	101
25차	6월 21일	전남 구례	문척초등학교	60
26차	6월 24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79
27차	6월 26일	충북 영동	미봉초등학교	52
28차	6월 27일	충북 보은	수정초등학교	76
29차	6월 28일	충북 청주	내곡초등학교	67
30차	7월 10일	경남 남해	지족초등학교	63
31차	7월 11일	경남 진주	예하초등학교	67
32차	7월 12일	경남 합천	삼가초등학교	123
33차	8월 28일(수)	세종시	장기초등학교	112
34차	8월 29일(목)	세종시	도담초등학교	102
35차	8월 30일(금)	세종시	연동초등학교	104
36차	9월 11일(수)	강원 홍천	화계초등학교	83
37차	9월 12일(목)	강원 인제	용대초등학교	47
38차	9월 13일(금)	강원 양양	상평초등학교	80
39차	9월 24일(화)	경남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264
40차	9월 25일(수)	경남 거제	명사초등학교	41
41차	9월 26일(목)	경남 통영	광도초등학교	124
42차	9월 27일(금)	경남 고성	방산초등학교	58
43차	10월 10일(목)	경기 여주	북내 초등학교 도전분교	79
44차	10월 11일(금)	강원 영월	연당초등학교	58
45차	10월 12일(토) ~10월13일(일)	강원 영월	세계민속악기박물관	150
46차	10월 16일(수)	강원 정선	봉양초등학교	99
47차	10월 17일(목)	강원 평창	주진초등학교	52
48차	10월 18일(금)	강원 평창	계촌초등학교	66
49차	10월 23일(수)	경남 산청	도산초등학교	52
50차	10월 24일(목)	경남 거창	신원초등학교	30
51차	10월 25일(금)	경남 함양	마천초등학교	86
52차	11월 06일(수)	경남 김해	주동초등학교	43
53차	11월 07일(목)	경남 김해	칠산초등학교	80
54차	11월 08일(금)	경남 양산	영천초등학교	62
55차	11월 20일(수)	경남 남해	고현초등학교	35
56차	11월 21일(목)	경남 사천	곤명초등학교	62
57차	11월 22일(금)	경남 하동	화개초등학교	150
학교 55개(3,766명), 박물관 2개(414명)				4,180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찾아가는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10				3,110
'10	1,500명/75개관			450				450
'11	1,800명/90개관			447				447
'12	2,700명/135개관			747				747
'13	2,700명/135개관			733				733
'14	2,200명/135개관			733				73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500명/75개관			450				450
'11	1,800명/90개관			447				447
'12	2,700명/135개관			747				747
'13	2,700명/135개관			733				733

나.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48				748
'10	40,226명, 56개소			221				221
'11	41,286명, 78개소			164				164
'12	60,000명, 28개소			127				127
'13	8,000명, 16개소			119				119
'14	9,000명, 20개소			117				117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9,964명, 56개소			221				221
'11	40,392명, 82개소			182				182
'12	37,163명, 28개소			179				179
'13	7,985명, 13개소			119				119

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5,700명/170개소			412.3				412.3
'10	2,000명/25개소			60.6				60.6
'11	3,000명/35개소			85				85
'12	3,200명/35개소			87.7				87.7
'13	3,500명/35개소			89				89
'14	4,000명/40개소			90				9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352명/29개소			60.6				60.6
'11	4,855명/48개소			85				85
'12	5,217명/60개소			84				84
'13	4,180명/57개소			84				8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도서관수	선정 수	개관	135	135	100
	프로그램운영횟수	1개관*32회	횟수	4,320	4,320	100
	참여어린이수	135개관*20명	명	2,700	2,700	100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기관수	합 계	개	16	13	81.3
	참가인원	합 계	명	8,000	7,985	99.8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참여기관	횟수	회	35	57	154
	참여어린이수	참여인원	명	3,200	4,180	137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 목표치/실적 : 참여기관 35개교/57개교, 참여인원 3,200명/4,180명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규모 증대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접근이 어렵고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정보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책읽기와 도서 선물 등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정적인 독서습관 형성 및 책 읽기 즐거움 제공, 도서관 견학 등 도서관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 증대, 도서관·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험 기회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문화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 마련
- (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확대 운영으로 인한 정책 수혜자 증대

○ 미흡한 점

- (국립중앙박물관) 한정된 인력으로 과중한 운영, 회차 증가 및 장거리(기간) 출장 반복으로 직원의 사기저하 초래 및 안전운영에 지장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2-1-3(계속)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 당 자	이경화
전화번호	044-203-2552	이메일	hihappy7@korea.kr

1. 사업목표

○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확대시킴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문화재능 기부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봉사 및 세대 간 소통과 일자리를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4,053백만원('13년 예산)

○ 사업규모(사업량) : 379개 프로그램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정과제('08.2) :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09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09년~계속)

3. 연차별 추진계획

○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동아리, 어르신 문화축제, 어르신 신바람 놀이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2			11,885				11,885
'10	170			2,300				2,300
'11	202			2,185				2,185
'12	150			2,400				2,400
'13	160			2,500				2,500
'14	170			2,500				2,5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70			2,300				2,300
'11	202			2,185				2,185
'12	340			3,453				3,453
'13	379			4,053				4,053

- 초고령화시대(노인인구비율 20%)로의 급속한 이행에 대비한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 사업 확대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수(개)	지원사업 수	개	160	379	23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문화향유 증진에 크게 기여.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어르신들의 근본적인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이 아닌 향유계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예산지원 체계 필요.

5-2-1-4(계속)	문화나눔사업(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	담 당 자	엄희정
전화번호	044-203-2519	이메일	kiki93@korea.kr

1. 사업목표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만족도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추진내용 : 저소득층 등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 제공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3. 연차별 추진계획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자발적 이용 가능한 문화카드 지원 또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12년 신규과제)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837	50,198		171,035
'12	160만명				34,300	14,400		48,700
'13	160만명				34,946	14,400		49,346
'14	144만명				51,591	21,398		72,989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2	160만명				34,300	14,400		48,700
'13	160만명(예상)				34,946	14,400		49,346

* '13년 문화이용권 사업 '14. 1월말 완료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160만명, 실적 160만명(예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수(명)	문화카드 및 기획바우처 수혜자 수	명	160만	160만 (예상)	100

* '13년 문화이용권 사업 '13년 1월말 완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미흡한 점

- 농어촌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부족

○ 건의사항

- 농어촌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카드 이용여건 개선(가맹점 발굴 등)

5-2-2-1(계속)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 당 자	김현정
전화번호	044-203-2556	이메일	khjjung@korea.kr

1. 사업목표

○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의 구축과 발전을 위한 자생력 기반 마련 및 생활문화공동체의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2억원('12년까지 기투자액 : 48억원)
○ 사업규모 : 27개 단체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행단체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 연차별 추진계획

○ 1개 단체 당 최대 3년 지원 원칙으로 전년도 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 여부 결정 및 공모를 통한 신규지원 단체 선정·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80			5,980
'10	19				1,200			1,200
'11	25				1,200			1,200
'12	24				1,200			1,200
'13	27				1,180			1,180
'14	27				1,200			1,2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9				1,200			1,200
'11	25				1,200			1,200
'12	24				1,200			1,200
'13	27				1,180			1,18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로 인하여 당초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함(목표 20개 단체, 실적 27개 단체)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예술단체 지원 개수	지원단체 수	단체	20	27	13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신규단체에 대하여 커뮤니티 조성 등 감안 예산지원 규모 축소로 인하여 당초 선정 지원단체 목표치(20개소)대비 단체 지원 수 확대 지원(27개소)

○ 미흡한 점

-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 커뮤니티 조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형성 및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당초 목표치 대비 성과 달성을 못한 일부 단체가 있음

5-2-2-2(계속)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담 당 자	한혜진
전화번호	044-203-2839	이메일	with1uck@korea.kr

1. 사업목표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42개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6,7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정률, 50%
- 지원내용 : 문화관광축제 지원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제48조의2(지역축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도 문화관광축제 42개 지원 : 67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250	34,250		68,500
'10	44개/44개				7,250	7,250		14,500
'11	44개/44개				6,700	6,700		13,400
'12	45개/45개				6,700	6,700		13,400
'13	42개/42개				6,700	6,700		13,400
'14	40개/40개				6,900	6,900		13,8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4개/44개				7,250	7,250		14,500
'11	44개/44개				6,700	6,700		13,400
'12	45개/45개				6,700	6,700		13,400
'13	42개/42개				6,700	6,700		13,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 지원 : 42개 축제, 67억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관광축제 지원	문화관광축제 당 관람객수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통계	천명	700	7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문화관광축제의 다변화를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내 관광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흡한 점

- 지속적인 콘텐츠개발이 요구됨

5-2-2-3(계속)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사업목표

○ 문화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청소년 및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우수 뮤지컬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계속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시·군 단위 10개 지역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12) 680백만원(380 : 민간경상보조, 농특, 300 : 농협중앙회 별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로 청소년, 농업인 관람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	20		15				35
'10	10	4		3				7
'11	10	4		3				7
'12	10	4		3				7
'13	10	4		3				7
'14	8	3		3				6

* 기타회계는 농협중앙회 300백만원 별도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10	4		3				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 뮤지컬 공연	도농교류 뮤지컬 공연지역수	공연지역수	개소	10	1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청소년, 소외계층 대상 단체공연 경험이 풍부한 공연단을 선정하여 지역별 2회 이상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
- 해당 시·군의 적극적 협조로 공연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 및 참석 유도
- 농촌 청소년의 흥미 유발 가능한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으로 많은 참석 및 호응 유도
- 농촌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없음

5-2-2-3(계속)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 당 자	김현정
전화번호	044-203-2556	이메일	khjjung@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문화 활동가 양성으로 한 마을의 주요자원의 가치발견 및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4억원('12년까지 기투자액 : 22억원)
○ 사업규모 : 216명 인력양성, 18개 기획사업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재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간 200여명 내외 지역의 문화활동가 양성 교육 및 15개 내외 기획사업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0			2,800
'10	320				1,400			1,400
'11	331				400			400
'12	209				200			200
'13	261				400			400
'14	250				400			4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20				1,400			1,400
'11	331				400			400
'12	209				200			200
'13	261				400			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2년 대비 기획사업 지원 확대로 목표 대비 교육인원 수 감소 (목표 350명, 실적 261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이모작	교육인원 수	사업추진실적자료	명	350	261	74.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단계별 교육 과정에 지역문화재단의 참여 및 컨설팅을 통한 기획사업 성과 제고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 성과공유 포럼을 통해 교육 및 기획사업 결과 등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역문화 이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미흡한 점

- 해당 없음

5-3-1-1(계속)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담 당 자	정해경
전화번호	044-203-2763	이메일	creed@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초·중·고요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소통·공감 능력 함양

○ 문화 소외·취약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향유권 증대

2. 사업내용

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사업규모 : '13년도 7,254개교, 예술강사 4,485명 파견
- 지원금액 : 총 사업비 704억원(국고 394억원, 지방비 58억원, 지방교육재정 252억원)
- 지원조건 : 신청학교 심사를 통해 강사파견 학교 선정
- 지원내용 :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취약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사업 규모 : '13년도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26개교

  * 예술교육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사업비 25억원(국고 25억원)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470			164,817		157,631		322,448
'10	5,400	-	-	32,323	-	30,250	-	62,573
'11	5,570	-	-	32,247	-	29,811	-	62,058
'12	6,000	-	-	32,247	-	29,570		61,817
'13	6,200	-	-	33,000		33,000		66,000
'14	6,300	-	-	35,000		35,000		70,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436			32,323		30,250		62,573
'11	5,772			32,247		29,811		62,058
'12	6,531			32,247		29,570		61,817
'13	7,254			39,421		31,101		70,522

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4			10,000				10,000
'10	-	-	-	-	-	-	-	-
'11	26	-	-	2,500	-	-	-	2,500
'12	26	-		2,500	-	-	-	2,500
'13	26	-	-	2,500	-	-	-	2,500
'14	26	-	-	2,500	-	-	-	2,5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26	-	-	2,500	-	-	-	2,500
'12	26	-	-	2,500	-	-	-	2,500
'13	30	-	-	2,500	-	-	-	2,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수혜자 만족도	{∑매우만족,만족, 보통, 불만,매우불만 (5점척도)X20} / 전체응답자	점	79	(79) *진행중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취약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
  · 2013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7,254개교 중 읍, 면, 리 및 도서·벽지 학교는 3,357개교(46.2%)로 우선 지원
-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은 물론, 소통·공감으로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문제 해소와 성장기 아이들의 바른 인성 형성에 기여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6절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1-1-1(계속)	경관보전직불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민동명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mmin@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12년까지 기투자액 : 515억원)

○ 사업규모 : '12 경관직불 사업면적 13,786ha, 796개마을, 18,386농가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601	65,305				27,988		93,293
'10	16,600	15,679				6,720		22,399
'11	13,741	13,903				5,958		19,861
'12	13,786	7,579				3,248		10,827
'13	12,796	14,072				6,031		20,103
'14	12,678	14,072				6,031		20,10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0	15,679				6,720		22,399
'11	'11	13,903				5,958		19,861
'12	'12	7,579				3,248		10,827
'13	'13	14,072				6,031		20,10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관보전직불제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당해연도 방문객 수/전년도방문객 수×100-100	%	3	3.5	116.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작물을 이용한 축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축제 개최로 방문객 증가 및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활성화 및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
- 농촌경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농촌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능 외에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한 점

- 주민 자발적인 경관가꾸기, 마을가꾸기의 확산·발전이 부진하고, 경관직불제를 단순히 소득보전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마을경관협약이 형식화되는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소극적

○ 건의사항

- 실효성 있는 마을경관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2010년 수준으로 단가인상 필요
  (현재 ha당 15만원→ ha당 30만원)

6-1-1-2(계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 당 자	최춘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772	이메일	ctchoi@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총사업비 : _ ('13년까지 기투자액 : 2,990억원, 909천ha)

○ 지원형태 : 자체단체 경상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요건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농지 50만원/ha, 초지 25)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농관원, 농어촌공사

○ 사업규모 : '13년도 조건불리지역 98.1천ha

○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3. 연차별 추진계획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하여 정주농 비율을 98.5%로 유지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0,866	203,117				64,308		267,425
'10	118,379	41,745				17,840		59,585
'11	107,737	38,762				16,286		55,048
'12	108,400	43,588				10,864		54,452
'13	98,175	39,511				9,659		49,170
'14	98,175	39,511				9,659		49,17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03,253	924				385		1,309
'11	99,939	71,489				30,315		101,804
'12	102,525	41,438				10,328		51,766
'13	98,142	39,363				9,629		48,99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정주농 비율은 108.5%로 목표 대비 110.2% 달성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마을 활성 실천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로 목표치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정주농 비율(%)	최근5년간 정주농비율/당해년도 정주농비율 *정주농비율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	98.5	108.5	11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밭직불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완화를 통해 실제 농가 수령액 증가

-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조건불리지역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마을공동 기금 사용 다야와 추진

○ 미흡한 점

- 마을 공동기금 조성 비율 완화(30%→20)로 연 1회 이상 실천해야 하는 마을 활성화 사업 위축

○ 건의사항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부담률(80%→90) 상향 검토

6-1-2-1(계속)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과	담 당 자	장영택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dx0106@forest.go.kr

1. 사업목표

○ 사업 목적

-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산림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
- 산림생태계의 연구·교육 및 탐방·체험을 위한 국민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13년까지 기투자액 : 1,154억원)

○ 사업규모 : 당해연도 사업물량

('13년까지 완료사업 : 39개소 자생식물원및생태숲조성)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지사)	⇒	사전타당성심사 및 결과 통보 (산림청)	⇒	예산확정 (국회)	⇒	국고보조금 교 부 (산림청)	⇒	사업실행 (지자체)	⇒	정산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자생식물원 : 15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지역생태숲 : 30억원,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추진내용

- 자생식물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자생식물의 조사·증식·보존 및 서식지내 복원·적응 추진

○ 추진근거 :

- 「산림보호법」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산림기본법」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32개소에 대해서 121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3	-	42,852	10,500	-	53,322	-	106,674
'10	33	-	10,918	1,000	-	11,918	-	28,836
'11	33	-	8,302	1,750	-	10,052	-	20,104
'12	32	-	8,793	2,000	-	10,793	-	21,586
'13	32	-	8,893	3,250	-	12,143	-	24,286
'14	23	-	5,946	2,500	-	8,416	-	16,86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33	-	10,918	1,000	-	11,918	-	28,836
'11	33	-	8,302	1,750	-	10,052	-	20,104
'12	32	-	8,793	2,000	-	10,793	-	21,586
'13	32	-	8,893	3,250	-	12,143	-	24,286

4. 성과목표 달성도

○ '12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개수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개수	개소	44	4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축제, 인근 관광자원 연계 사업 기획되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 친환경 생태숲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지습지 식생을 보호하고 우수한 지역특성을 살려 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태숲 조성
  · 테마 탐방로 조성등으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반영
  · 고산지대 자생.휘귀 특산식물의 유전자원보존과 학술연구 및 자연학습장으로 이용
- 지역주민 ·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도모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지역 고유 자생 · 향토식물의 체계적인 보존 · 육성을 위하여 자생식물원 확대조성 필요

6-1-3-1(계속)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민동명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mmin@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의 전통농법·경관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13~'19, 287억원('13:12억)
- 사업규모 : 7년간 25개소('13년 3개소)
- 대상지역 :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고70%, 지방비 30%), 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내용 : 농어업유산자원 발굴·정비 및 관리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유산자원을 매년 5개지구씩 2019년까지 총25개소 발굴·정비하고,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예산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25				10		35
'10	-	-				-		-
'11	-	-				-		-
'12	-	-				-		-
'13	3	11				4		15
'14	1	14				6		2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3	11	-	-	-	4		1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자원적자원활용 사업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사업진도율(%)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사업지구	개소	100	100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유산지정제도' 도입으로 농어업인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활동과 시스템 등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자원등을 발굴·정비하고,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체험자원이나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 도모

6-1-4-1(계속)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 당 자	김상범
전화번호	031-290-0265	이메일	landlife@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경관 가꾸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관 보전관리 기술의 개발·보급 및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2014

○ 사업규모 : 2,700백만원('13년 300백만원)

○ 시행방법 : 농촌진흥청 시험연구비에 의한 연구사업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추진내용

- 농촌마을의 자원발굴 및 모바일 DB 구축
- 그린로드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기반 조성 연구
- 농업 농촌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체계 개발 연구
- 농촌경관디자인 추진전략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의 디자인 요소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 농어촌정비법 제3조 자원조사, 제5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관리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 추진내용

- 농촌 경관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4유형
  - · 농촌경관 유형 : 자연경관, 농업생산경관, 생활경관, 역사·문화경관

<영주 주치골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예산 장복리마을>

- 마을경관 및 공간 계획 : 5종(이천 도니울마을, 강릉 소금강장천마을 등)
- 마을길 조성 : 2종(용인 학일마을, 강릉 안반데기마을 등)
- 농업유산 관리기술 개발 : 1종(농업유산 발굴, 선정 및 관리기준 등)
  - · (발굴) 강원 강릉 안반데기 등 2, 충북 제천 의림지 등 5, 경남 남해 죽방렴 등 5, 전남 신안 염전 등 12, 제주 돌담밭 등 3 등 27개소
  - · (DB항목) 자원개요 6, 지역현황 4, 유산적 가치 10 등 20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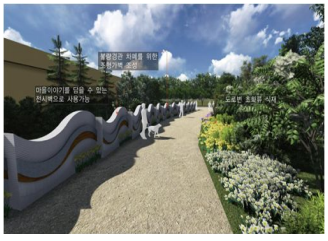
<경관 디자인 적용사례>

<리모델링 시설별 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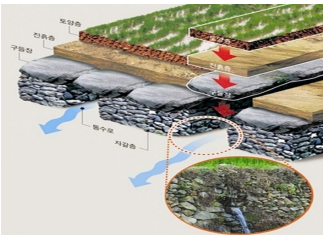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설별 지침 개발 : 3종 125시설
  - · 농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개소)과 연계하여 생산·주거·커뮤니티 공간의 실행지침 개발 및 제공(마을시설 18유형)
- 농촌 어메니티자원 활용 '농촌체험' 앱 개발 및 정보서비스 : 1종
  - · 전국 257개 농촌마을 체험정보 제공 : 체험유형별, 지역별 검색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5			2,700				2,700
'10	140	-	-	700	-	-	-	700
'11	140	-	-	700	-	-	-	700
'12	125	-	-	700	-	-	-	700
'13	5	-	-	300	-	-	-	300
'14	5	-	-	300	-	-	-	3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79	-	-	700	-	-	-	700
'11	145	-	-	700	-	-	-	700
'12	134	-	-	700	-	-	-	700
'13	14			300				3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경관 조성·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지원 : 14/5(28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출 구축	농촌경관 조성·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지원 건수	연구보고서 및 현장지원 보고서	건수	5	14	28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연구사업추진시 사전 여론수렴 2013년 녹색기술자문단 녹색경관 분과 자문회의('12.11.20), 중간진도관리('13.07.26), 연말평가('13.12.05) 등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지침에 의거 일정대로 추진하였으며,
- 농식품부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추진대책"의 농어업 유산제도, 경관계획가이드라인 과제수행,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지침 등 정책 교류 및 농촌경관포럼, 농업유산전문가회의를 통한 학술 교류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달성하였음.
- 연구성과는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농촌경관워크샵 등 행사에서 일반인 및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 및 홍보하여 우수한 대외적 평가를 얻었음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2-1-1(계속)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 당 자	윤 태 근
전화번호	044-201-7143	이메일	ytg700@me.go.kr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하수도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 사업비 : 4,924억원(국고 3,386억원, 지방비 1,538억원)

○ 사업규모 : 신규사업 106개소, 계속사업 186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개량사업 3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3조 1항

3. 연차별 추진계획

○ '15년까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7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10년 ~ '14년 기간 중 **총 2조 309억 원** 투자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5,352	10,798	865,297		659,443		2,030,890
'10	279	104,967	2,348	98,349		88,091		293,755
'11	365	82,537	2,373	148,599		134,337		367,846
'12	214	95,482	2,230	156,605		132,009		386,326
'13	292	130,429	1,748	206,472		153,782		492,431
'14	307	81,937	2,099	255,272		151,224		490,53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79	104,967	2,348	98,349		88,091		293,755
'11	365	82,537	2,373	148,599		134,337		367,846
'12	214	95,482	2,230	156,605		132,009		386,326
'13	292	130,429	1,748	206,472		153,782		492,431

- (추경편성) 34개소 48,36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8개소 '13년도 조기 준공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율 : 목표 60, 달성 60.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율	군지역 하수도 보급률 통계	%	60	60.6	10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보급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음

○ 미흡한 점

- 도시지역에 비해 산재해있는 농어촌 마을의 특성상 단기간에 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정부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 매년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신규사업 수요는 많으나 신규사업수가 한정되어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신규사업 확대 필요

※ 농어촌 신규사업 신청건수 : '12년 612개소, '13년 503개소, '14년 439개소

6-2-1-2(계속)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환경부)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 당 자	박재완
전화번호	044-201-7411	이메일	wanjp@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투자액 2,533억원)

○ 사업규모 : ('13) 15개소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고(70%, 15억원까지/개소)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지자체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4호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75억원 투자하여 15개소에 지원(신규사업 8개, 계속사업 7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	42,361				6,879		49,240
'10	13	10,137						10,137
'11	13	8,392						8,392
'12	11	7,972						7,972
'13	15	7,475				1,428		8,903
'14	12	8,385				5,451		13,83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3	10,137						10,137
'11	13	8,392						8,392
'12	11	7,972						7,972
'13	15	7,475				1,428		8,90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생활폐기물 소각률은 26.9%로 목표치 보다 2.4p 증가되어 11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농어촌생활폐기물소각률	농어촌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량	%	24.5	26.9	11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증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자가처리 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사업추진 초기부터 입지선정 등을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님비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일부반대 상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 추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6-2-2-1(계속)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농식품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 당 자	최남근(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441	이메일	gun102@korea.kr

1. 사업목표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환경 보전

○ 추진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유기질비료('99년 ~ 계속), 토양개량제('57~ 계속)

○ 총사업비 : '13까지 투자액 18,481억원(유기질비료 10,173, 토양개량제 8,308)

○ 사업규모 : '13까지 지원물량 33,894천톤(유기질 20,889, 토양개량제 13,005)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고보조 70%(지방비 3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86	1,107,218				616,586		1,723,804
'10	3,311	231,413				152,956		384,369
'11	3,300	220,612				107,405		328,017
'12	3,500	210,612				113,405		324,017
'13	3,700	220,612				119,405		340,017
'14	3,875	223,969				123,415		347,384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311	231,413				152,956		384,369
'11	3,300	220,612				107,405		328,017
'12	3,568	210,612				114,852		325,464
'13	3,752	221,275				127,743		349,01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미흡('13 목표 : 225kg/ha → 실적(잠정) : 256, 13.8% 증)

·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3년 일몰로 연차별 지원 규모 축소

* 예산(포당) : ('10) 731억원(1,800원) → ('11) 366(1,100) → ('12) 200(800)

· 농협 계통 공급량은 감소하였으나, 비료업체의 시중 판매량 증가

* 공급량(성분량 기준) : ('12) 472천톤(농협 387) → ('13) 452(350)[4.4%, △10.6]

* 친환경비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맞춤형 비료 공급기간이 짧아 농업인은 관행 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규산질비료는 대다수 필지에서 목표 충족

· 규산질비료 시용필지에 대한 검정결과 목표치인 157ppm을 대다수 필지가 충족

· 다만, 일부 토양채취·검정 오차 및 산간지·배수 불량답(사질답) 등에서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이를 감안 가중 평균치로 산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225kg/ha)	화학비료 사용량 (kg)/전국 경지 이용면적(ha)	kg/ha	225	256 (잠정)	86.3
	논토양 유효 규산 함량(ppm)	살포한 다음 해의 토양 유효규산 함량 측정치 (ppm)	ppm	157	186 (잠정)	118.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지속 추진
  - · 농수축산 부산물, 음식물쓰레기 등 가용자원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12 : 286만톤 → '13 : 308)
  - ·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속 지원('12 : 71만톤 → '13 : 67)
- 친환경비료 교육 및 홍보 강화
  - · 친환경비료 사용방법·효과에 대한 농업인 교육(4,729회, 230천명)
  - · 친환경비료 홍보 리후렛 89만부 제작·배부(지자체 53만, 농협 36만)
  - · 홍보효과 제고를 방송 CF 제작·송출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1,090회

○ 미흡한 점

- 화학비료 절감목표 미달성
  - · 화학비료 절감을 위하여 기관·단체·농협 등 간담회를 거쳐 종합대책 수립('14.4월중) 후 교육·홍보 등 실시 계획

○ 건의사항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지원 예산 확대 필요

6-2-2-3(계속)	친환경농업기반(지구)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 당 자	김 동 남
전화번호	044-201-2438	이메일	young08@korea.kr

1. 사업목표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사업과 지역단위 마을에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구) '95～계속, (단지) '06～계속

○ 총사업비 : - ('13년까지 기 투자액 : 5,076억원)

○ 사업규모

- (지구)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광역) 사업면적 6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농·축협, 농업법인)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구)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단지)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추진체계

- (지구)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신청(사업자→시장·군수→시도)→ 사업계획 자체심의 후 평가 순위 선정(시·도지사) → 시·도 예산통지(농식품부→시·도) → 사업지구 확정(시·도지사→시장·군수)→ 사업지구 확정 보고(시도→농식품부) → 사업진행(사업자)

- (광역) 사업추진주체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계획서 수립 · 신청(농업법인) → 사업계획서검토 · 제출(시군, 도) → 사업계획평가,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보조금 배정(농식품부) → 사업지도 · 감독, 보조금배정(시군, 도) → 사업시행(농업법인) → 보조금 배정→사업시행→ 사업정산 및 보고(시도→농식품부)

○ 추진내용

-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단위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와 마을단위 소규모 지구를 선정,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시설 · 장비*를 지원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 · 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 판매에 필요한 시설 · 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해 '17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300개소 선정 · 지원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4		209			348	139	696
'10	29		24			40	16	80
'11	28		24			40	16	80
'12	17		26			43	17	86
'13	30		45			75	30	150
'14	30		45			75	30	15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29		24			40	16	80
‘11	28		24			40	16	80
‘12	28		26			43	17	86
‘13	36		45			75	30	150

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해 ‘17년까지 광역단지 60개소 선정 · 지원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5		1,214			1,340	530	3,084
‘10	16		295			240	63	598
‘11	23		341			311	108	760
‘12	23		242			282	121	645
‘13	20		209			328	131	668
‘14	13		127			179	107	413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6		295			240	63	598
‘11	23		341			311	108	760
‘12	23		242			282	121	645
‘13	17		209			328	131	66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후관리 강화, 인증기준강화, 여건변화(저농약인증 폐지, 전년도 인증면적 증가 추세, 친환경인증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른점 등) 등이 있었으나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36.7%로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음(101.9%)
- 집단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농업의 양적 육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인증품의 질적 가치 상승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관리강화 노력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광역·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 * 무농약 이상	(광역·지구조성의 전체면적에 대한 친환경 인증면적의 비율 산출	%	36.0	36.7	101.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 및 예산지원을 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이행농가 및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광역단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안정적 기반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전국 평균보다 인증면적과 인증단계에서 질적 우위에 있고,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은 전국 평균(7.0%)보다 5.2배 높은 36.7%를 차지

○ 미흡한 점

- 영농비용 부담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경영여건 변화(사망, 전출 등) 등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부진 및 친환경 포기 사례 발생
- 특히 과수는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 둔화

○ 건의사항 : 없음

6-2-2-4(계속)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담 당 자	정종범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7381	이메일	jjbmail@korea.kr

1. 사업목표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류)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하여 농·어촌 지역 환경개선 및 농·어업인에게 선진적인 환경복지 제공

2. 사업내용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사업】

○ 사업기간 : 2004～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845억원)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한국환경공단)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환경공단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

○ 사업기간 : 2011～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58억원)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농약용기 수거·처리사업】

○ 사업기간 : 1987~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78억원)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지원형태 : 농약병 50원/개. 농약봉지 60원/개

○ 지원조건 : 한국환경공단 30%, 지방자치단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 40%

○ 사업시행주체 : 한국환경공단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적체폐비닐처리사업 : 44억원 지원

○ '13년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 : 19억원 지원

○ '13년 농약용기 수거·처리사업 : 21억원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6,500			27,530				27,530
	975,000			9,750				9,750
'10	84,500			10,130				10,130
'11	39,000			5,130				5,130
	195,000			1,950				1,950
'12	50,000			5,130				5,130
	195,000			1,950				1,950
'13	39,000			3,570				3,570
	195,000			1,950				1,950
'14	39,500			3,570				3,570
	195,000			1,950				1,950

<농약용기 수거·처리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9,720			4,458		4,458	5,945	12,188
'10	45,440			753		753	1,003	2,509
'11	48,600			826		826	1,102	2,754
'12	48,180			810		810	1,080	27
'13	58,000			1,016		1,016	1,355	3,387
'14	59,500			1,053		1,053	1,405	3,511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사업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88,509			938				938
'11	76,618			5,210				5,210
	195,000			1,950				1,950
'12	35,000			5,133				5,133
	195,000			1,950				1,950
'13	38,000			4,425				4,425
	195,000			1,950				1,950

<농약 용기 수거·처리 사업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49,773			777		777	1,036	2,590
'11	51,039			809		809	1,078	2,696
'12	51,925			829		829	1,104	2,762
'13	52,537			1,015		1,015	1,354	3,38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폐비 수거·처리 사업	적체폐비닐 누적재고	한국환경공단 처리실적 확인	천톤	39	38	102.6
농약용기 수거·처리사업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	한국환경공단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	천개	52,500	52,53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영농폐비닐 내 이물질 혼입 최소화로 재활용 소요비용 감소 효과
-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합리화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처리장의 적정운영 및 지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2차 환경오염 방지
- 농어촌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 미흡한 점

- 단위당 생산성 높은 지역중심의 선택적 수거로 지리적으로 낙후된 산간·오지지역 등 수거 사각지대 발생
- 한국환경공단 직영시 공동 집하장은 물론 경작지까지 주기적으로 수거하였으나,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는 대부분 집하장 순회수거 및 소량수거 기피

6-2-3-1(계속)	해양폐기물 정화(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 당 자	김채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301	이메일	nobakim@korea.kr

1. 사업목표

○ 연근해 주요해역·항만 및 어항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대행사업,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민간대행(국고100%), 지자체 보조(국고 50~6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사업내용

-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 해양폐기물 정화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200	10,700		74,900
'10	11개 지자체				13,600	2,300		15,900
'11	〃				13,600	2,300		15,900
'12	〃				12,400	2,100		14,500
'13	〃				13,400	2,000		15,400
'14	〃				11,200	2,000		13,2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개 지자체				13,600	2,300		15,900
'11	〃				13,600	2,300		15,900
'12	〃				12,392	2,137		14,529
'13	〃				13,489	2,333	1,350	17,17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 수중침적 쓰레기 수거량 목표를 3,886톤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해양쓰레기 산출량은 1,853톤으로 실제 3,190톤을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
- 최근 5년('08~'12) 동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평균 실적(52,672ha, 4,913톤)과 '13년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3,866톤의 목표를 설정,
- '13년 사업 수행 해역면적*(14,831ha)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상당히 감소하고, 실시설계 결과 1,853톤 밖에 물량이 산출되지 않아 '13년 목표(3,866톤)와 괴리 발생

* 그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국가무역항, 연안항의 해양환경개선 및 선박운항 항로 확보를 위해 추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중침적쓰레기 수거량	수중침적쓰레기 수거량	톤	3,866	3,190	82.5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지자체)	해양쓰레기 수매량	해양쓰레기 수매량	톤	5,000	5,275	105.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 등 어민의 생활터전을 친환경적으로 회복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을 통해 어민들의 해양 환경 정화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와 어업인의 인식제고

6-2-3-2(계속)	소하천정비(소방방재청)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 당 자	박 혜 열
전화번호	02-2100-5461	이 메 일	p980426@korea.kr

1. 사업목표

○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다목적 소하천정비

○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로 친수환경조성 및 치수안정성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지자체 보조, 국비보조율 50%

○ 추진내용 : (총사업비) 12조 7,452억원('13년까지 투자액 1조 8,575억원)

(사업규모) 총 35,157km('13년까지 15,709km 완료, 정비율 44.6%)

- '13년 : 사업량 322㎞, 사업비 5,166억원 투자(국비 2,585, 지방비 2,581)

○ 추진근거 : 소하천정비법('95년 제정) 제6~8조 정비계획수립, 제13조 국비지원, 정비사업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소하천 총 22,612개소 35,157㎞, 26조 1,132억원 소요(국 12조7,452, 지 13조3,680)

- '95~'13년 : 15,709㎞(44.6%), 4조3,377억원 투자(국비 1조8,575, 지방비 2조4,802)
- '14년 추진 : 204㎞, 4,179억원 투자(국비 2,094, 지방비 2,085)
- '15년 이후 : 19,244㎞, 21조3,576억원 소요(국비 10조6,783, 지방비 10조6,793)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m)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58	1,109,009	-	-	-	1,107,911	-	2,216,920
'10	414	207,169	-	-	-	207,169	-	414,338
'11	368	207,169	-	-	-	207,169	-	414,338
'12	250	226,855	-	-	-	226,855	-	453,710
'13	322	258,461	-	-	-	258,143	-	516,604
'14	204	209,355	-	-	-	208,575	-	417,93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m)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14	207,169	-	-	-	207,169	-	414,338
'11	368	207,169	-	-	-	207,169	-	414,338
'12	250	226,855	-	-	-	226,855	-	453,710
'13	322	258,461	-	-	-	258,461	-	516,60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① 전국 소하천 총연장 : 35,157km ② '12년까지 소하천 정비연장 : 15,387km

③ '13년 소하천 정비연장 : 322km

→ ('13년까지 소하천 정비율) = [(② + ③) / ①] × 100

= [(15,387km + 322km) / 35,157km] × 100 = **44.6%**

▶▶ 목표(44.6%) → 실적(44.6%) ⇒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확대(%)	(당해연도 소하천정비 연장 / 전국 소하천 총연장) ×100	%	44.6	**44.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구성 및 기관장의 부진사업장 방문, 우수 기관에 대한 평가·분석,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적기 자금집행,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추진, 미준공 사업장 관리 등 연간 성과관리 일정이 충실히 이행됨

⇒ 6월 이전 조기 완공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효과를 최대화 하고 공모전을 통해 기존 형식을 탈피, 주민 호응도를 향상시킴

○ 미흡한 점

- 국가·지방하천에 비하여 소하천 정비율이 낮아 미정비 소하천에서 매년 홍수피해 발생

《최근 10년간 전국하천 피해액 대비 소하천 피해액》

(단위 : 억원)

내용 \ 연도별		연평균	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하천	계	1,446	14,462 (100%)	2,076	1,539	4,549	512	134	938	577	2,266	1,458	413
	국가및 지방하천	763	7,627 (52.7%)	863	906	2,358	264	53	507	315	1388	797	176
	소하천	684	6,835 (47.3%)	1,213	633	2,191	248	81	431	262	878	661	237
총 피해액		6,845 * 소하천 10%	68,454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6,393	1,476

* 최근 10년간('04~'13) 전체 하천피해액 중 47.3%가 소하천에서 발생
* 정비율 : (국가하천) 80.3%, (지방하천) 49.1%, (소하천) 44.6%

-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50%)이 과중하여 지방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

○ **건의사항**

- 재해예방 및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사업 투자 확대 필요
- 피해발생 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현 예산 운영 방식을 재해 발생 전 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투자(국비 지원)로 피해저감 및 예산절감
-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 정비율이 낮은 소하천의 정비율을 5년 내 지방하천 정비수준(49%)으로 상향하기 위해 매년 20%이상의 사업비 증액투자가 필요

  * '14년 예산(국비 2,094억원) 수준으로 투자시 정비완료에 52년 소요(2065년 완료)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비추어 현행 국고보조율 50%를 60%로 상향 조정 필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근거마련

  * (근거) 지방재정법, (위원장) 안전행정부 2차관, (개최일) 2회/ '12.7.17, '13.8.7

  -→ (의결사항) 국비 상향(50%→60%) 조정 동의, 지자체 차등지원 방안 검토 등

6-2-3-3(계속)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환경부)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담 당 자	박석천 사무관 장경환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41 044-201-7042	이메일	buffer@me.go.kr amakin83@me.go.kr

1. 사업목표

○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하구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쾌적한 한반도 조성

※ 매년 반복되는 홍수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대강 전 권역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체결('09.5.18)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 총사업비 : 108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440억원)

○ 사업규모 : 집중 호우 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비 40~70% 지자체에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광역시 40%, 일반 시·군 70%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3			42,134		31,401		73,535
'11	45			7,616		5,792		13,408
'12	62			8,616		6,391		15,007
'13	62			8,625		6,399		15,024
'14	62			8,634		6,406		15,040
'15	62			8,643		6,413		15,05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45			7,616		5,791		13,407
'12	66			8,616		6,392		15,008
'13	69			10,816		9,591		20,40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하천 ·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쓰레기 46천톤 수거 · 처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쓰레기 수거처리	쓰레기 수거량	계획 대비 달성 실적	천톤/년	47	48.6	103.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집중 호우시 하천 · 하구로 다량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등을 초래하는 부유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 처리

- 지자체 담당자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 교육('13.1.24)

○ 미흡한 점

- 장마 ·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한계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3-1-1(계속)	목재펠릿 사용 확대(산림청)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담 당 자	최태환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201	이메일	choita-1@forest.go.kr

1. 사업목표

○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사업규모 : 펠릿 보일러 2,346대 보급,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4개소

○ 사업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주택용 보일러 보급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시설용 보일러 보급 : 국비 50%, 지방비 50%
- 산업용 보일러 보급 : 국비 50%, 자부담 50%
-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국가·공공용 보일러 보급 : 국비 100%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추진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이용증진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천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제조시설20 보일러17	56,233				35,124	28,230	119,587
'10	제조시설8 보일러4	11,600				9,630	8,010	29,240
'11	제조시설3 보일러4	10,858				10,019	8,640	29,517
'12	제조시설1 보일러3	10,925				5,025	3,660	19,610
'13	제조시설4 보일러3	11,425				5,225	3,960	20,610
'14	제조시설4 보일러3	11,425				5,225	3,960	20,610

- 목재펠릿 보급사업 관련 예산이 계획만큼 반영되지 않아 계획 변경

○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천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제조시설8 보일러4	11,600				9,630	8,010	29,240
'11	제조시설3 보일러4	10,858				10,019	8,640	29,517
'12	제조시설1 보일러3	10,925				5,025	3,660	19,610
'13	제조시설4 보일러2	11,955				5,225	9,960	27,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목재펠릿 보급사업	목재펠릿 소비 증가율	(당해년도 목재펠릿 소비량 - 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 /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100	%	50	216	432

* 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 174천톤, 당해연도 목재펠릿 소비량 550천톤

*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량 급증에 따라 목표치 초과 달성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목재펠릿 공급 등에 따라 목재펠릿 소비량이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

○ 미흡한 점

- 수입산 대비 국내산 목재펠릿 소비량이 저조

* 수입산 485천톤, 국내산 65천톤

○ 건의사항 : 없음

6-3-1-2(계속)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담 당 자	방문진(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8	이메일	munjin@korea.kr

1. 사업목표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난방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 사업비('13) : 501억원('12년까지 기 투자 2,948억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 사업규모 : 전국 105ha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지원
○ 주요사업 내용
- 시설원예, 축산분야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보급하여 난방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발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63			380,997		126,999	126,999	634,995
'10	250			120,000		40,000	40,000	200,000
'11	210			100,400		33,467	33,467	167,334
'12	155			74,400		24,800	24,800	124,000
'13	105			50,077		16,692	16,692	83,461
'14	43			36,120		12,040	12,040	60,2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06			50,900		16,967	16,967	84,834
'11	126			60,504		20,168	20,168	100,840
'12	155			44,906		14,969	14,969	74,844
'13	100			47,536		15,845	15,845	79,22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유류사용 절감비율 목표 23%보다 24.8% 높은 28.7%로 조사
- 지열 냉난방기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보급 확대로 시설원예 농가의 유류사용 절감율 상승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 농가 유류사용 절감율(%)	(전년도 유류사용량 - 금년도유류사용량)/전년도 유류사용량] ×100	%	23	28.7	124.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 보급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

- 지열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지원으로 면세유 등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 미흡한 점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시 농가의 자부담(사업비 14억원/ha, 자부담 2.8억원)이 많고 지자체에서의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비 일부 미집행

○ 건의사항 : 건의사항 없음

6-3-1-2(계속)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양식산업과	담 당 자	서밀가 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636	이메일	smg1335@korea.kr

1. 사업목표(수산분야)

○ 어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난방비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사업내용(수산분야)

○ 사업지원대상 : 양식어업인(생산단체 포함)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연차별 추진계획(수산분야)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W/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23,280/31.6	-	-	16,860	·	5,620	5,620	28,100
'14	20,811/28.2	-	-	15,071	·	5,023	5,024	25,118

* 1ha = 737kW('13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지침 지열면적 ha당 기준적용)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W/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24,965/33.9	-	-	16,860	-	5,620	5,620	28,100

* 1ha = 737kW('13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지침 지열면적 ha당 기준적용)

* 실적('13.12월말 실집행) : 13,480백만원

4. 성과목표 달성도(수산분야)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유류사용 절감비율 목표 2,124TOE보다 154TOE높은 2,278TOE(107%)로 조사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따른 설치 어가의 유류사용 절감율 상승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 농어가 유류사용 절감율(%)	당초 : [(전년도 유류사용량-금년도 유류사용량)/전년도유류사용량]×100 변경 : 화학연료절감량= 보급전경유사용TOE-보급후 전기사용 TOE	당초(%) 변경(TOE)	당초(23) 변경 (2,124)	변경 (2,278)	변경 (107)

*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서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1TOE=1,000만kcal)

* TOE를 사업규모(kW) 환산함

* 성과지표 측정기준 변경 사유 : 현재 측정기준은 샘플선정 측정값으로 전체 시설 보급용량(kW)을 TOE로 환산한 측정값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수산분야)

○ 잘된 점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소(평균 59%)에 따른 어업인 경영비 절감

○ 미흡한 점

- 자부담 확보 애로로 일부사업자 사업포기 또는 사업지연(이월)

  * (계획) 16,860백만원 → (교부) 16,636백만원, (불용) 224백만원

  * ('13.12월말 실집행) 13,480백만원(계획대비 80%)

○ 건의사항

- 지방비 여건이 어려워 어가 경영규모보다 과소하게 사업비 배정
-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가에는 경영규모에 맞는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사업체계 개선 필요

6-3-1-3(계속)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환경부)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담 당 자	현세환(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22	이메일	wlslwnxkd@korea.kr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 당 자	김창우(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402	이메일	nymp78@korea.kr

1. 사업목표

○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자원에서 퇴·액비,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방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

○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여 에너지 자립기반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

2. 사업내용

가.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

○ 사업기간 : '91~계속

○ 총사업비 : '13년까지 기투자액 10,860억원(국고기준)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설치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및 가동중인 공공처리시설 중 개선·증설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8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단위농협)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자체) ⇒ 국고지원(환경부) ⇒사업시행(지자체)

○ 추진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24조

나. 가축분뇨(음식물류 포함) 에너지화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4,688톤/일(20개소)

○ 총사업비 : 7,351억원(총국고 2,405억원 중 '13까지 1,259억원 기 투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7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자체) ⇒ 국고지원(환경부) ⇒사업시행(지자체)

○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 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 34개소(4,478톤/일) 등 매년 30여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정화·자원화)시설 설치 및 개선, '17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 10개소(1,000톤/일) 시설 설치

○ '14년 4개소(710톤/일) 등 '17년까지 20개소, 4,688톤/일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가축분뇨(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14년까지 1개소(150톤/일) 완공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가.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5	0	0	494,410	0	123,603	0	618,013
'10	32			82,090		20,523		102,613
'11	33			85,207		21,302		106,509
'12	33			107,767		26,942		134,709
'13	33			119,469		29,867		149,336
'14	34			99,877		24,969		124,846

나. 가축분뇨(음식물류 포함) 에너지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	0	0	549	0	234	0	783
'10	2			12		5		17
'11	2			38		16		54
'12	4			73		31		104
'13	6			138		59		197
'14	8			288		123		411

<시행계획 추진실적>

가.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2			80,790		20,198		100,988
'11	33			77,017		19,377		96,271
'12	33			97,507		24,377		121,884
'13	33			101,430		25,358		126,788

나. 가축분뇨(음식물류 포함) 에너지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3			18,790		42,700		61,490
'11	13		-	30,235	-	61,287	-	91,522
'12	11		-	25,743	-	54,614	-	80,357
'13	12		-	23,040	-	38,027		61,06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BOD) 삭감량

- 해양배출 금지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2~3.4배) ·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확대(3,000두 미만 → 5,000두 미만) 등에 따른 처리량 증가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 준공(수도권매립지, 광주, 대전, 진주)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가축분뇨자원화 · 에너지화	가축분뇨 오염물질 삭감량	삭감부하량=유입부하량-배출부하량	(BOD, 톤/일)	113.8	136.2	119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완공 수	'13년에 완공 (시운전 착수)한 시설 수 집계	개소	4	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가축분뇨 자원화공공처리시설 26개소를 설치 · 운영을 통하여('13년 6개시설 준공) 연간 283천톤 가축분뇨를 퇴 · 액비 등 자원화처리

○ 미흡한 점

- 개별농가의 불량 퇴 · 액비 활용에 따른 가축분뇨 퇴 · 액비에 대한 인식 저하, 양질의 퇴 · 액비에 대한 수요와 유통 부진

○ 건의사항

- 양질의 퇴액비 생산과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품질기준 마련 등 관리 필요

6-3-1-4(계속)	가축분뇨처리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방역관리과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75	이메일	bullsvet@korea.kr

1. 사업목표

○ 가축분뇨 처리시설 · 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 비료로 자원화하고 퇴액비로 생산된 농산물, 조사료 등을 농축산업에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1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 ('13년까지 16,615억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및 융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 등

○ 지원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 · 액비 등으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사업추진주체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추진근거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추진경위
- 농림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04.11)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 수립('07.6)
- 국정과제, 녹색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으로 채택('08, '09)

3. 연차별 추진계획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을 위하여 '13년 1,467억원 지원

- 공동자원화(누계) : ('10)56개소 → ('11)68 → ('12)88 → ('13)98
- 액비유통센터(누계) : ('10)121개소 → ('11)147 → ('12)162 → ('13)177
- 액비저장조(누계) : ('10)6,524기 → ('11)7,508 → ('12)8,408 → ('13)9,208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축발기금			
합계		224,764	7,599	-	182,212	217,523	46,116	678,214
'10		77,321	1,771	-	-	42,865	8,505	130,462
'11		78,124	1,962	-	-	41,646	8,120	129,852
'12		69,319	1,534	-	-	38,841	6,500	116,194
'13		-	1,619	-	85,274	47,665	12,046	146,604
'14		-	713	-	96,938	46,506	10,945	155,10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축발기금			
'10		77,321	1,771	-	-	42,865	8,505	130,462
'11		78,124	1,962	-	-	41,646	8,120	129,852
'12		69,319	1,534	-	-	38,841	6,500	116,194
'13		-	1,619	-	80,024	44,515	7,246	133,40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가축분뇨 자원화율 목표치 99.7% 달성

- (목표 미달사유) '13년 성과지표 가축분뇨 자원화율 90.0%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화방류수질 강화 및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29)을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7년까지 91.0%로 설정하고 '13년 자원화율을 목표로 89.2%로 설정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환경부 주관) : 지역단위에 발생되는 양분량과 토양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하여 양분 초과지역은 양분의 외부 반출 또는 양분의 배출원 감축 의무(시행시기 미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축산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율	(가축분뇨 자원화물량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 100	%	89.5	89.2	99.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가축분뇨 처리시설 · 장비 및 유통기반 확충 등으로 가축분뇨를 퇴비 · 액비 등으로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기반 구축

· 자원화율 : ('11) 87.6% → ('12) 88.7 → ('13) 89.2

○ 미흡한 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무조건 반대 집단 민원 발생** 등으로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지연

6-3-1-5(계속)	①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농식품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담 당 자	안형근연구관
전화번호	044-201-1637	이 메 일	hgahn@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친환경기술 연구 추진

○ 추진근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1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2. 사업내용

○ 바이오매스에너지작물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지원

- 사업기간 : '07 ~ '18
- 사업주체 : 산・학・연 연구팀
- 사업 규모 : '13년도 10과제(지정공모 8, 자유응모 2)
- 지원금액 및 형태 : 5,920백만 원(기획과제 5,590, 일반과제 330), 출연
- 지원조건 :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Matching fund
- 추진내용 : 바이오매스 생산용 신품종 개발, 바이오매스 생산용 주요 효소 생합성 기작 조절,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구축,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우수한 미세조류 발굴 및 고밀도 연속 순환 배양 방식 최적화 기술 개발 등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까지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기술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	230	-	-	-	-	54	284
‘10	10	40	-	-	-	-	10	50
‘11	11	43	-	-	-	-	10	53
‘12	12	46	-	-	-	-	11	57
‘13	13	49	-	-	-	-	11	60
‘14	14	52	-	-	-	-	12	64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5	40	-	-	-	-	9	49
‘11	11	43	-	-	-	-	10	53
‘12	12	52.9	-	-	-	-	15.6	68.5
‘13	13	59.2	-	-	-	-	17.8	77

- 농림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시행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과제인 ‘지역단위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 포함됨에 따라 국비 증가가 발생됨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산업기술개발	특허출원건수	국내특허출원실적	건	2	4	200
	논문게재건수	논문게재건수	건	7	23	32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해당사업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투자 증대와 성과의 확대를 보이고 있음
- 기 설계되었던 기술개발 단계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계속사업 외에도 꾸준히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07～'13 :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기술 개발(기초)
    '14～'16 : 부존자원 에너지화 시범사업 등 응용기술 개발(응용)
    '17～'18 :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이전, 농가보급 등 실용화기술 개발(상용화)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6-3-1-5(계속)	②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해수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 당 자	주두만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536	이메일	redjoo58@korea.kr

1. 사업목표

○ 수산해양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효율적 활용방안 구축

○ 비식용 해조류 원료를 외해 초대량 양식에서부터 자동화 시스템의 원료수급, 전처리, 고부가 유용물질 및 희귀금속 회수, 그린에너지 생산까지 경제적 기반의 일관공정개발 및 원천 기술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0년 ~ 2018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협약체결(해수부) ⇒ 주연구기관지정 ⇒사업비 출연 ⇒ 사업비 정산(기술진흥원→해수부)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제3세대 비식용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원료확보 및 그린에너지 융합공정 전환기술을 통해 수송용/발전용 및 기초화학 대체원료 생산 기반 기술 개발
- 수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신소재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국고 100%

○ 추진근거 :

-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 농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및 에너지화로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 및 수산녹색산업 발굴기회와 신규 고용창출 효과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기반구축, 10~13년) 에너지화 수율 45% 수준의 요소기술 기반구축

○ (2단계 기술통합, 14~16년) 에너지화 수율 60% 수준의 경제성 있는 통합공정 구축

○ (3단계 실증/상용화, 17~19년) 에너지화 수율 65% 수준의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일관통합공정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에너지화수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0	-			1,000				1,000
'11	45%			1,000				1,000
'12				1,000				1,000
'13				800				800
'14	≥45%			800				800

* 사업규모의 수치는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일관공정 에너지화 수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에너지화수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10	-			1,000				
'11	45%			1,000				1,000
'12				1,000				1,000
'13				800				800

* 사업규모의 수치는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일관공정 에너지화 수율(%)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활용기반 구축	특허출원지수	(국제(국내)특허 출원(등록)건수 ×1.2) + (국내특허 출원건수 × 0.6)	-	10	10.8	108
	학술논문발표지수	(SCI급 논문발표건수 × 1.2) + (비SCI급 논문발표건수 × 0.6)	-	15	1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과제수행 기간에 대한 특허 성과로는 국제특허출원 3건, 국내특허 등록 4건, 국내특허출원 3건이며, 이러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 등록 성과는 우수한 원천기술 확보 성과이며, 논문 성과로는 SCI급 논문 12편, 비SCI급 논문 1편이며 세계 상위 12% 안에 드는 논문(IF 기준)이 4편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흡한 점

- 연구의 성공을 위한 해조류의 지속적인 원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지 미확보

○ 건의사항

-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그린에너지화(바이오오일 및 바이오알코올, 바이오가스 생산) 및 통합활용(고부가 유용물질 회수) 연구를 성공하기 위해 지속적 원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4ha 이상의 해조류 고밀도 생산기지의 확보가 필요하고 절실

6-3-2-1(완료)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과	담 당 자	김승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76	이메일	k702@korea.kr

1. 사업목표

○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농촌의 에너지 자립도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 2013년

○ 총사업비 : 5,400백만원(국고2,700, 지방비 2,638, 자부담 62)

○ 사업규모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1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전북 완주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8.8%, 자부담 1.2%

○ 사업시행주체 : 전라북도 완주군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1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12년)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추진

○ ('13년) 녹색마을 조성 공사 추진 및 완공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개소	2,771				2,217	554	5,542
'10	1개소 설계	608				487	121	608
'11	1개소 조성	1,890				1,512	378	1,890
'12	1개소 완공	273				218	55	273
'13	-							
'14	-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시범사업('10~'12년)으로 종료 결정(녹색위 '11.10.31)

  * 이후, 녹색마을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13~'20년까지 총 40개 녹색마을 조성 계획)

- '10년도 지방선거로 인한 지방비 확보 지연,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 중지('12.12.27~'13.3.5)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개소 설계	-				-	-	-
'11	1개소 공사	129				129	-	258
'12	1개소 공사	683				683	-	1,366
'13	1개소 완공	1,589				1,527	62	3,178

- 기본계획 변경('12.3월), 실시설계 확정('12.4월) 및 재원분담비율 변경('13.12월)을 통해 현장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지방비가 증가하고 자부담 감소

  * 사업비(백만원) : **(당초)** 국고 2,700, 지방비 2,338, 자부담 362

  (변경) 국고 2,700, 지방비 2,638, 자부담 6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완공 : 100% 달성

- 에너지시설 설치 등 마을 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12.6월)

- 개별주택 공사 및 마을 안길 하수구 흄관 매설공사 완료('12.12월)

- 녹색마을센터 등 공동이용시설 공사 완료('13.12월)

* 마을 정비 : 개별주택 단열보수(36호) 및 태양광 설치(49호), 태양광 가로등 설치(20개), 도로포장 및 우수관로시설 정비

* 공동이용시설 : 녹색마을센터, 게스트하우스(6동), 찜질방 등 시설공사 완료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48.5kW), 태양열(57㎡), 지열(45RT), 풍력(400W)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녹색마을 조성 공사 완공	녹색마을 조성 공사 완공률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촌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녹색마을 에너지 자립도 증대

* 태양광, 지열 등 시설 설치를 통한 마을 에너지 자립도 40%이상 예상

- 녹색마을센터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체험 시설을 운영하여 농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 교류에 기여

○ 미흡한 점

- 지방비 확보에 많은 시간 소요,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해빙시 까지)되어 완공 시기가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며, 재원 분담 비율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6-3-2-1(계속)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 당 자	이철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7401	이메일	fehgag1@korea.kr

1. 사업목표

○ 소규모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 에너지화를 통해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 총사업비 : 2,080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51.4억원)

○ 사업규모 : '13-20년까지 40개소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보조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10-'12년 시범사업 1개소 50억원, '13-'20년까지 40개소 2,080억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	4,050	-	4,050	-	8,100
'10	1		-	164	-	164	-	328
'11	-		-	1,387	-	1,387	-	2,774
'12	-		-	949	-	949	-	1,898
'13	1		-	100	-	100	-	200
'14	1		-	1,450	-	1,450	-	2,9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		-	164	-	164	-	328
'11	-		-	1,387	-	1,387	-	2,774
'12	-		-	949	-	949	-	1,898
'13	1		-	100	-	100		2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1개소 추진

- 사업대상지 선정, 전문가포럼 운영, 용역 중간보고 추진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녹색마을 조성 개소	대상지 선정	개소	1	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3년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 미흡한 점

- '13년 사업대상지 목표가 2개소이나, 1개소만 예산 반영

○ 건의사항

- 녹색마을 모델 확보 등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년 예산 반영 필요

6-3-2-1(완료)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 당 자	김주미
전화번호	042-481-4124	이메일	kjm1028@forest.go.kr

1. 사업목표

○ 산촌지역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통해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의 모델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2013년

○ 총사업비 : 10,672백만원

○ 사업규모 : 2개소 조성

○ 지원형태 : 국비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근거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까지 2개 마을에 대해서 국비 5,612백만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0	5,612	0	0	3,050	2,010	10,672
'10			220			25		245
'11			1,513			775	500	2,788
'12	1		2,586			1,500	1,000	5,086
'13	1		1,293			750	510	2,553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20			25		245
'11			1,513			775	500	2,788
'12	1		2,586			1,500	1,000	5,086
'13	1		1,293			750	510	2,55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개소 목표치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개소)	계획 대비 실적	개소	1	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등유·경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촌지역의 난방·온수 시설의 에너지원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산촌마을 주택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

○ 미흡한 점

- 저탄소 녹색마을 운영위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 저하 및 운영성과 분석 미흡

○ 건의사항

- 정기적인 운영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

6-3-2-2(계속)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에너지개발부	담 당 자	임문희 차장
전화번호	031-420-3330	이메일	imhee@ekr.or.kr

1. 사업목표

○ 전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목표에 준정부 기관으로서 적극 참여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수리시설유지관리 재원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농어업인 영농편익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 총사업비 : 2,092억원 (13년까지 기 투자액 : 871억원)

○ 사업규모 : '17년까지 발전소 83개소 54,481㎾ 건립

○ 지원형태 : 국고(출자금) + 자체자금

○ 지원조건 : 국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장려 등)
-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33조(사업의 범위)제2항 제3호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부터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 출자금 투입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개소 11,948㎾		-	52,000	-		7,500	59,500
‘11	4개소 1,780㎾		-	-	-	-	2,300	2,300
‘12	15개소 2,703㎾		-	10,000	-	-	1,500	11,500
‘13	9개소 2,115㎾		-	15,000	-	-	3,700	18,700
‘14	8개소 7,464㎾		-	13,500	-	-	-	13,500
‘15	5개소 5,690㎾		-	13,500	-	-	-	13,500

* ‘13년까지는 준공 실적 규모, ’14년 이후는 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4개소 1,780㎾	-	-	-	-	-	2,300	2,300
‘12	15개소 2,703㎾	-	-	10,000	-	-	1,500	11,500
‘13	13개소 4,149㎾	-	-	15,000	-	-	3,200	18,200

* ‘13년 사업규모에는 저수지둑높이기 3지구(장성, 가북, 오태) 2,231㎾ 포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에너지개발 준공규모(㎾) 목표치 93%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준공규모	준공서류	㎾	21,672	20,149	93

* '13년 실적 : 덧붙임 1 참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 자원조사를 통해 수상태양광발전에 적합한 저수지를 선정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13. 05월)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상태양광 시범지구(2지구 410㎾) 준공으로 사업영역 확대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기관 표창 수상('13. 10월)

- 에너지개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실무」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완료('13. 12월)

○ 미흡한 점

- 발전용량이 큰 사업지구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 발전소 운영 및 건설지구 내실화를 통한 수익 창출 극대화 필요

○ 건의사항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출자금)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제7절

지역역량 강화

7-1-1(계속)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안치홍 사무관 송현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5 044-201-1535	이메일	chahn@korea.kr yhson@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인, 농고·농대, 귀농인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지원을 통해 미래 정예농업인력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할 마을리더, 사무장, 주민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주체 양성

2. 사업내용

가. 농업인 교육훈련

○ 전문기술과 경영역량을 갖춘 창조적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및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고, 농대, 품목·농업인단체, 민간교육기관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27,825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5,126백만원(지자체·민간보조, 농특)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100%, 지방비 0~40%, 자부담 0~30%), 민간(국고 50~70%, 자부담 30~50%, 정액)
- 지원내용 :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프라 구축비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현 법률 제9조, 제22조~제23조 및 제2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8조,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2 및 제39조

나. 리더양성, 사업동기화 주제별 특화과정 등 운영(총 17개 과정)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도농교류지원)

○ 사업규모(사업량) : - 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37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가. 농업인 교육훈련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367명	156,855						156,855
'10	27,042	36,033						36,033
'11	25,000	35,016						35,016
'12	26,500	35,754						35,754
'13	27,825	25,126						25,126
'14	34,000	24,926						24,92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35,270	36,033						36,033
'11	29,762	35,016						35,016
'12	36,663	35,754						35,754
'13	37,560	25,126						25,126

나. 리더양성, 사업동기화 주제별 특화과정 등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628	58.5						58.5
'10	3,525	8.8						8.8
'11	3,767	11.5						11.5
'12	4,006	12.6						12.6
'13	4,530	12.6						12.6
'14	3,800	13.0						13.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4,524	14						1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가. 농업인교육훈련

- 농업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성 및 역량 향상 목표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교육훈련	교육전후 역량향상률	{(교육후 역량-교육전 역량)/교육전 역량}×100 *전문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대상 장기농업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교육과정)	%	15	15.1	100.6

나. 리더양성, 사업동기화 주제별 특화과정 등 운영

- 체험마을을 주도할 마을대표, 사무장, 주민 등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보다 많이 실시하였으므로 목표를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인적역량강화	교육인원수	교육인원	명	4,230	4,523	106.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농업인교육훈련>

- 교육품질 제고와 성과 발굴·확산을 위한 방법 다양화 추진
  ·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기획과제, 자생적 학습조직 등 신규운영)
  · 교육운영 관리·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운영 성과제고 (교육전・후 역량향상률 목표대비 100.6% 달성)
- 수산고 실습장비 시설정비 지원(수산 마이스터고 기반 시설 구축)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개편('13.3.23)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로 예산(3억원)을 이체하여 완도수고에 정상 지원

  * 2013년 자영수산고 실습교육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5.24)

<리더양성, 사업동기화 주제별 특화과정 등 운영>

- 농어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주도할 인적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도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인적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13.1월, 총 12개과정, 4,230명에 대해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 실시(3～12월)
  · (교육계획) 12개 과정 4,230명 → (실적) 12개 과정 4,523명
- 교육생 역량수준에 맞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시행으로 지속적인 교육생 증가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 농어촌 전문자격제도 운영
- 교육을 통한 농촌체험마을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사업성과 제고
- 성과관리 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한 객관화된 교육성과 도출

○ 미흡한 점

- 미래 후계농업인력육성을 위해 농업계 고교생 및 대학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 필요
- 체험마을 주민의 경우 사계절 생업으로 인한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저조함(현장방문 교육으로 해소함)

○ 건의사항

- 농업계 고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미래 후계농업인력육성 지원 추진
- 체험마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필요

7-1-2(계속)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사업목표

○ 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활성화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품질 제고

2. 사업내용(비예산사업)

○ 인증기관 : ('12까지)농식품부 →('13부터) 지자체 시·도지사

○ 인증절차 : ('12까지) 인증신청(기관·단체)→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농식품부) →('13부터)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시·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8							
'11	8							
'12	11							
'13	11							
'14	1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1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일반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계획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건수	인증건수	건	11	12	11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 12건

·체험지도사 10건, 마을해설가 2건

* 인증기관 : ㈜지역아카데미 4, ㈜지역활성화센터 1, ㈜퍼포먼스웨이컨설팅 1,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2, 대구대학교 동아시아 관광연구소 3, 제주관광대학교

○ 미흡한 점

- 없음

○ 건의사항

- '13부터 인증기관이 농식품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이 어려움

7-2-2-1(계속)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사업목표

○ 마을정비 사업시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을 사전 분석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는 농어촌 구현

* 총괄계획가는 마을정비사업 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의 기본계획을 포함 권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제시(농어촌정비법 제54조)

2. 사업내용

○ 마을권역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사업지구(7개소) : 원주, 괴산, 예산, 임실, 진도, 의성, 하동

3. 연차별 추진계획

○ '12～'13년도 : 총괄계획가 시범운용

* 조기 선발, 역할 정립·교육 및 활동메뉴얼 제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조정자문위원 운영방안 변경 등 추진(총괄계획가 운용방안 모델개발 연구 병행)

○ '14년도 : 농산어촌지역 총괄계획가 확대 시행

*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지자체 확대시 스스로 농산어촌 마을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를 영입 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지원

4. 추진실적

○ '12년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결과 및 확대방안 시달('13.1월)

○ '12년 시범지역 총괄계획가 간담회 개최('13.1월)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선정·위촉('13.1~2)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번권역 기본계획 승인('13.3월)

○ 총괄계획가, 추진위원장 등 합동 워크숍 개최('13.3월)

○ '13년도 지역개발분야 농촌개발시험연구 추진('13.3~12월)

- 과제명 : 농촌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 실태 및 향후 발전모델 연구

○ '13년도 총괄계획가 제2차 합동 워크숍 개최('13.10월)

7-3-1-1(계속)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개발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 지역자율의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2. 사업내용

○ 지역주도, 지역자율의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 구성)

- 구성 및 운영자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장 및 위원 : 50명 내외(위원장 1, 부위원장 1명 포함)
  ·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역 할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도 : 지자체에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을 권고하고, 각종 평가 시 협의회 구성·운영 여부를 평가

○ '13년도 :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정도를 각종 점검 및 평가시 반영

4. 추진실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심사 추진시 평가 항목에 반영

- '14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평가지표에 반영

7-3-2-1(계속)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 당 자	강창엽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555	이메일	cushionmind@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개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2.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 운영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의 외연 확대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도 : 농어촌 지역정책 포럼 운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2013년 운영계획 수립(2월)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운영(연중)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자체, 언론, 대학, 지방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억원)

	사업규모 (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	-	-	-	-	-	-	-
'11	4	0.3						0.3
'12	4	0.8						0.8
'13	4	0.7						0.7
'14	4	0.6						0.6

4. 추진실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총4회 개최(분기별 1회)

- 매회 약 80~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정책, 자원 등 농어촌지역 정책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 결과집 발간

  * 제9차 포럼(4.24), 새 시대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 제10차 포럼(7.8),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 제11차 포럼(10.8),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 제12차 포럼(12.13), 농촌 공간 재편에 대응한 전략 모색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사업규모 (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4	0.3						0.3
'12	4	0.8						0.8
'13	4	0.7						0.7

7-3-3-1(계속)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송현주(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이메일	songhjoo@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체험관광과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웰촌포털사이트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						64
'10		19						19
'11		8						8
'12		9						9
'13		9						9
'14		19						1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9						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웰촌포털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광 정보 제공과 다음포털(daum) 등 민간 콘텐츠 제공사와의 정보 교류를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홈페이지 및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한 예약기능 개선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포텅사이트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설문	%	84	84.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점

- 웰촌포털 컨텐츠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통신 환경변화(Web ⇒ Mobile)에 대응한 시스템 보급(1～12월)

· 농촌체험관광 중심으로 웰촌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및 콘텐츠 재배치

* 체험/자연/전통문화/웰빙 등 4개 분야 농촌체험마을 테마 분류에 의한 마을 정보 및 숙박·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여행작가 등 전문가 추천 농촌 테마여행 여행정보 및 농촌체험을 중점으로 메인화면 개선

· 전국 단위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모바일 서비스실시

· 고객편의를 위한 모바일 로그인 및 예약 기능 도입

* 체험마을 숙박, 체험, 마을 캠핑장 등 모바일 예약시스템 구축

- 웰촌포털 농촌체험관광 정보 채널의 확대 운영

· 대형 포털에 농촌체험관광을 주제로 블로그 및 카페 운영

* 블로그(네이버, blog.naver.com/welchon4u), 카페(다음, cafe.daum.net/welchon4u)

- 농촌체험관광 정보의 허브(HUB) 사이트 역할 제고 및 민간 부문 연계 정보 개방 확대

· 농촌체험관광 대국민 정보 확산을 위한 민간 대형콘텐츠사와의 정보 연계 및 공유

* 다음포털 체험학습 및 SKP(SK 플래닛)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농촌체험관광 자료 공유 및 정보 제공

· 정부3.0 공공기관 정보개방 과제 중 농촌체험관광 DB 선도 이행

· 네이버, 다음포털 사이트에 농촌체험관광을 주제어로 배너 및 키워드 검색 광고 연중 실시(1~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영상 제작 및 보급(1~12월)

· '13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및 농촌체험학습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 제작 및 보급(40개 마을)

* 위원장 마을 소개 및 주요 체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 자체 제작

- 웰촌포털시스템 개선 및 체험관광 성향 조사(상·하반기)를 위한 외부 만족도 조사로 지속적 서비스 개선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4-1-1(계속)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담 당 자	안종락(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8	이 메 일	a5257@korea.kr

1. 사업목표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 단계부터 준비, 실행,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종합적 지원으로 귀농귀촌의 시행착오 최소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총사업비 : - 억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국고 50%, 지방비 50%),
민간경상보조(70~10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530				31,900		69,430
'10	22개 시군	1,500				1,500		3,000
'11	25개 기군	2,300				2,300		4,600
'12	27개 시군	2,600				2,600		5,200
'13	35개 시군 등	15,190				12,500		27,690
'14	40개 시군 등	15,940				13,000		28,940

- 당초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됨.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2개 시군	1,500				1,500		3,000
'11	25개 시군	2,300				2,300		4,600
'12	27개 시군	2,600				2,600		5,200
'13	35개 시군 등	14,190				11,500		25,690

-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체험관' 사업시행자(하남시)의 사업포기로 10억원 불용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귀농·귀촌가구 증가율 목표치 263%, 실적 126%

- 귀농·귀촌가구는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목표치 과다 설정으로 목표치 미달 : ('08)2,218호 → ('09)4,080 → ('10)4,067 → ('11)10,503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계획 대비 실적	%	263	126	47.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귀농귀촌종합센터·창업박람회를 통한 정보제공·상담, 교육·실습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에 힘입어 귀농귀촌 증가 추세 유지

7-4-2-1(계속)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 당 자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사업목표

○ 농작업 등 농어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기술자, 예술가, 농작업 인력 등)의 인력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활력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 및 단체, 농작업인력 등) 또는 귀농·귀촌인을 농어촌 마을·단체 등과 연계해주는 중개제도를 마련하여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민 일자리 창출 도모

3. 연차별 추진계획 : 해당없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사1촌 운동 및 농촌사랑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시농어촌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함

·1사1촌 자매결연 참여 증가('12 : 9,627개소 → '13 : 10,446개소)

- 농촌사랑봉사활동신청자(1,519명) 현황(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농촌사랑봉사활동 실적 현황
  ·일손돕기 : 부산 50회 등 전국적으로 129회 3,097
  ·의료활동(마사회특별적립금) : 제주 30회 등 전국적으로 97회, 17,919명 진료, 농촌취약계층 환아지원 9명
  ·농어촌 학습도우미방 운영(마사회특별적립금) : 강원, 경남 등 농촌지역 8개 마을 대상으로 32명의 자원봉사자가 초·중학생 233명 학습지도
- 1사1촌 자매결연 10,446개소로 확대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통한 도시민교육 추진
  ·농촌사랑 의료지원 및 학습도우미방 운영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해당없음

7-4-2-2(계속)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담 당 자	이정석 사무관 이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18 044-201-1562	이메일	leejs@korea.kr yijin@korea.kr

1. 사업목표

○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및 재능기부 현장활동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47억원)

○ 사업규모 : ('14) 현장포럼 350개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농촌 재능기부 공모 12개 시·군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농촌 재능기부 공모는 10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도, 시·군)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31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 농촌현장포럼 350개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농촌 재능기부 공모 12개 시·군 및 재능기부홍보 등에 3,868백만원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01			1,500	2,698		12,799
'10	-	-	-	-	-	-	-	
'11	-	-	-	-	-	-	-	
'12	포럼40	1,635	-	-	1,500	-	-	3,135
'13	포럼234 센터9	3,098	-	-	-	1,076	-	4,174
'14	포럼234 센터9 공모12	3,868	-	-	-	1,622	-	5,49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12	포럼40	1,635			1,500			3,135
'13	포럼234 센터9	2,963				1,076		4,03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인당 지원액 증가율 목표치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현장포럼 운영	계획 대비 실적	%	234	234	100
"	색깔마을 선정	계획 대비 실적	%	3,000	3,01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주민주도 마을발전 지원 체계 마련(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설립, 현장포럼 234개소) 및 농촌 재능기부 활성화(재능기부 회원 5만명 달성 및 재능기부 연계마을 1,488건)를 통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현장포럼 전·후 공동체활성화 변화 : 75.6% → 81.6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 담당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필요

-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법의 조기 제정

참고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2-3-1-1(계속)	농어업인 교교생 학자금 지원(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 당 자	김지선
전화번호	02-2133-5397	이메일	2jidol@seoul.go.kr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범위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손자녀, 동생이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단 수업료의 경우 분기당 50만원 한도)

○ 지원부담 : 시비70%, 구비30%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2013년도 추진결과

<'13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	-	-	-	-	20	-	20
서초구	10	-	-	-	-	8	-	8
강동구	17	-	-	-	-	12	-	12

<'13년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	-	-	-	14	-	14
서초구	13	-	-	-	-	8	-	8
강동구	9	-	-	-	-	6	-	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22명/27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27	22	81

5. 자체평가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 미흡한 점

- 농업인 전출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지원인원 증감 예측이 어려움

2. 부산광역시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부산광역시)

담당부서	교수학습기획과	담 당 자	김희정
전화번호	051)860-0314	이메일	hjkim1210@korea.kr

1. 사업목표

○ 안전하고 행복한 기숙사 생활을 통한 학교 교육의 만족도 제고

○ 공동체 생활과 전인적 교육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2. 사업내용

○ 학력증진 및 인성 함양 프로젝트

- 기숙사 야간 특강 수업, 인터넷 사이버 학습, 정독실 운영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인성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0 : 기숙형고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지방비 10,000천원), 인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지방비 20,000천원), 자율학교 지정

○ 2011 : 기숙형고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지방비 10,000천원), 인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특교 22,000천원, 지방비 20,000천원)

○ 2012 : 기숙형고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종료, 지방비 10,000천원), 인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특교 28,000천원, 지방비 20,000천원)

○ 2013 : 기숙형고교 운영, 인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지방비 20,000천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 지원(지방비 23,000천원) 전국 기숙형고교 우수학교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비 특교 25,000천원)

○ 2014 : 기숙형고교 운영, 인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지방비 10,000천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75		143		218
'10	1					30		30
'11	1			22		30		52
'12	1			28		30		58
'13	1			25		43		68
'14	1					10		1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1					30		30
'11	1			22		30		52
'12	1			28		30		58
'13	1			25		43		6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지정·육성 학교수	지정·육성 학교수	교	1	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기숙형고교 운영의 안정적 정착
- 기숙형고교 희망 학생수 증가

○ 미흡한 점

- 교사 및 행정직원 업무 과중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 건의사항

- 기숙사 전담 부서의 전문인력 보강

2-3-1-1(계속)	농어업인 교교생 학자금 지원(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농축산과	담 당 자	이영일(주무관)
전화번호	051-888-4811	이 메 일	yilee@korea.kr

1. 사업목표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 투자액 : 394백만원)

○ 사업규모 : ('13) 30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302명에게 394백만원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2	-	-	-	-	394	-	394
금정구	5	-	-	-	-	7	-	7
강서구	150	-	-	-	-	200	-	200
기장군	147	-	-	-	-	187	-	187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302	-	-	-	-	394	-	394
금정구	5	-	-	-	-	7	-	7
강서구	150	-	-	-	-	200	-	200
기장군	147	-	-	-	-	187	-	187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302명/302명

- 목표치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302	302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영세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 경감 도모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농산물 개방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추진요망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부산광역시)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 당 자	김윤경
전화번호	051)860-0718	이메일	ykadel@korea.kr

1. 사업목표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농어촌 학교 무료통학버스 운영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당초계획) >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회계)	학교 자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1/124					1,794	1,764	3,558
'10	9/16					291	72	363
'11	9/17					366	76	442
'12	15/23					147	488	635
'13	24/34					495	564	1,059
'14	24/34					495	564	1,05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교특회계)	학교 자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1	10/18					366	116	482
'12	15/23					147	488	635
'13	28/45					848	375	1,223

※ 학교 자체 예산은 인근 공기업,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운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통학차량 지원	지원 학교수	통학차량 지원학교수	교	24	28	11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대구광역시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달성군보건소)

담당부서	보건과	담 당 자	최윤서
전화번호	053-668-3773	이메일	@korea.kr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빈곤, 고령, 질병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비 : 184,842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관련기관에서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사업량
- 방문등록관리가구 : 4,301가구
- 대상자 직접방문 횟수 : 15,608회

○ 사업내용
- 취약계층 건강실태 조사 및 주기별 방문건강관리
- 대상자 건강수준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방문등록관리 및 직접방문 횟수, 사업비

<'13년도 시행계획>

구분	사업규모 (가구,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방문건강관리	2,700가구 9,450회				92	92		184

<연차별 시행계획>

구분	사업규모 (가구,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4	4,500가구 15,608회				92	92		184
'15	4,500가구 15,608회				92	92		184
'16	4,500가구 15,608회				92	92		184
'17	4,500가구 15,608회				92	92		184

※ 2013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비 총괄 운영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및 방문전문인력 감소

4. 추진실적

<'13년도 추진실적>

구분	사업규모 (가구,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방문건강관리	4,301가구 15,608				92	92		184

5.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운영과	담 당 자	김현우
전화번호	053-231-0211	이메일	hyunwoo@korea.kr

1. 사업목표

○ 기숙형고교 운영 내실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01. ~ ’13.12.

○ 사업주체 : 포산고, 다사고

○ 추진내용

- 기숙사생 대상 진로·인성·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교별 기숙사생 대상 진로·인성·학력 프로그램 운영
- 2013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분석 및 현장 컨설팅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3,630		3,630
‘10	1					150		150
‘11	2					1,100		1,100
‘12	2					780		780
‘13	2					800		800
‘14	2					800		8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					150		150
'11	2			41		1,100		1141
'12	2			64		780		844
'13	2					800		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	70	86	12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내실있는 진로·인성·학력 프로그램 운영

○ 미흡한 점

- 지자체 재정 지원 감소

○ 건의사항

-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달성군교육지원청)

담당부서	교육복지지원과	담 당 자	이 상 민
전화번호	053-235-0183	이 메 일	hotmin0422@korea.kr

1. 사업목표

○ 체계적인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으로 학부모 역할정립 및 자녀 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3. 1. ~ 12. 31.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47개교

○ 추진체계 : 단위학교를 학교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내용 :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인성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 등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29조, 제30조, 대구교육방향과 공약이행을 위한 전략과제(Ⅲ-26.평생학습교실운영 강화), 2013 교육감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계획 알림(평생체육보건과-1827, 2013.3.7.)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47개교					224		224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달성군	47개교					224		22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 학교평생학습관 지정계획 학교 수

- 실적 : 학교평생학습관 지정학교 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평생학습관	학교평생학습관 지정 학교 수	지정학교 수 / 지정계획 학교 수*100	교	47	4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및 가정-학교 간 소통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미흡한 점

- 지역 특성 상 맞벌이가정이 많아 학부모교육 참여율이 저조함

○ 건의사항

- 학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

2-3-1-1(계속)	농어업인 교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담 당 자	한상훈
전화번호	053-803-3445	이메일	daniel0208@korea.kr

1. 사업목표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 투자액 : 796백만원)

○ 사업규모 : ('13) 44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442명에게 796백만원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442	-	-	-	-	796	-	796
동구	70	-	-	-	-	73	-	73
북구	9	-	-	-	-	23	-	23
수성구	8	-	-	-	-	31	-	31
달서구	5	-	-	-	-	4	-	4
달성군	350	-	-	-	-	665	-	665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383	-	-	-	-	439	-	439
동구	67	-	-	-	-	48	-	48
북구	9	-	-	-	-	12	-	12
수성구	8	-	-	-	-	11	-	11
달서구	0	-	-	-	-	0	-	0
달성군	299	-	-	-	-	368	-	368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442명/383명

- 목표치 86%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442	383	8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 건의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달성군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 당 자	노영주
전화번호	235-0141	이메일	nyju@edunavi.kr

1. 사업목표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12. 31.

○ 사 업 비('13) : 405백만원

○ 지원대상 : 원거리 소규모 학교

○ 사업규모 : 11교

○ 지원형태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에게 무료 통학버스 지원

○ 사업내용

- 직영통학차량 운영교에 차량운영비 11,336천원 지원 (도림초, 논공초)
- 임차통학차량 운영교에 차량임차료 297,073천원 지원 (현풍초, 구지초, 유가초, 용계초, 가창초, 금포초, 동곡초, 하빈초, 반송초)
- 방학 중 및 학기중 토요일 방과후학교 차량 임차료 95,659천원 지원 (유가초, 용계초, 가창초, 금포초, 동곡초, 구지초)

○ 추진근거 :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11개교					405		405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11개교					405		40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무료통학버스 지원 학교수	(통학버스관련예산지원 학교수)/(통학버스운영 학교수)*100	교	11	1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무료통학버스지원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발해짐

4. 인천광역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인천시보건소)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 당 자	김순심
전화번호	032-440-2713	이메일	jw1004@korea.kr

1. 사업목표

○ 무의도서 주민에게 진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수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병원선 현황

- 건조일 : 1999. 6. 31(인천 531호)
- 승선인원 : 13명(환자수송가능인원 : 8명)

  ·의료진 5명(의사1, 한의사1, 치과의1, 간호사2), 선원 8명

- 크 기 등 : 6.1M×30.75M, 111톤

○ 진료실적

- 진료도서 : 옹진군 4개면 11개도서
- 진료실적 : 44회 출항 121일 8,418명
- 운영예산 : 60,000천원(국비 1, 시비5억)

○ 추진근거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관리운영」보건복지부 규정

「옹진군병원선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300명	0	0	0	0	2.100		2.100
'12	7,000명	0	0	0	0	450		450
'13	7,000명	1	0	0	0	500		600
'14	7,000명	2	0	0	0	450		650
'15	7,000명	0	0	0	0	450		450
'16	7,000명	0	0	0	0	450		45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7,000					500		500
'11	7,000					400		400
'12	7,818					450		450
'13	8,418	100				500		6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45회 출항 120일 7,000명

- 실적 : 44회 출항, 121일 8,418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병원선 이동진료	7,000명	이동진료인원	명	7,000	8,418	12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병원선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서 의료 사각지역에 있는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미흡한 점

- 병원선 장비 부족으로 만성질환자 검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의료인력과 장비 보강 필요

○ 건의사항

- 병원선 약품비, 운영유류비 등을 지방비(시비)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함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인천시교육청)

담당부서	책임교육과	담 당 자	김수정 장학사
전화번호	032-420-8129	이메일	yuri1800@ice.go.kr

1. 사업목표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고교

○ 사업규모 : 3교, 1,509명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관리운영비, 급식비 포함)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부방법

- 운영비: 입사인원에 따라 학교별 차등 교부
- 프로그램운영비: 일괄 교부(강화고, 강화여고 40백만원, 삼랑고 30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3교	55						
'12	3교	100				1,540		1,640
'13	3교					1,555		1,555

4.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을 확대하여 실질적 교육력 제고

○ 미흡한 점

- 지자체의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의 지속적 지원 필요 ('12년에만 지원)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강화군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담 당 자	강혜원
전화번호	032-930-4114	이메일	riverhw@korea.kr

1. 사업목표

○ 스마트 농업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용화·전문화와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사업주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강화군(농업기술센터0

○ 교육대상 :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 교육과정 : 3개과정 190명

- 대학 : 환경원예과 80명, 향토자원개발과 44명
- 대학원 : 농업CEO과 66명

○ 추진근거 : 강화군조례 제1613호(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대학 신입생 선발 및 입학식 3월 / 190명

○ 기초 및 전문이론 및 실습현장교육 40주

○ 농업대학 동문체육대회 1회 700명

○ 농업대학 및 대학원 해외연수 각 1회 총50명

○ 졸업식 12월 190명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200명, 4개학과			30		110	50	190
'11	200명, 4개학과			30		110	50	190
'12	170명, 4개학과			30		80	20	130
'13	190명, 3개학과			30		90	20	140
'14	190명, 3개학과			30		90	20	14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00명, 4개학과			30		110	50	190
'11	200명, 4개학과			30		110	50	190
'12	170명, 4개학과			30		80	20	130
'13	190명, 3개학과			30		90	20	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졸업율	(졸업인원/계획인원)*100	%	93	91	0.9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시설로 교육만족도 매년 상승되고 있음
- 농업대학 교육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농업기술센터 군 농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인천 현대유비스 병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들의 보건복지와 농업대학 명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내 현장견학은 강화특성에 맞는 작목 및 재배기술 도입의 유리성 등으로 반응이 좋았음
- 해외연수 및 현장견학시 내실있는 견학 일정으로 학생들의 교육 파급효과 높았음

○ 미흡한 점

- 외래강사 섭외시 우수강사의 요구 금액과 농업대학 강사기준의 차이로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2-3-1-1(계속)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담 당 자	장세환
전화번호	032-440-4363	이메일	sifox69@korea.kr

1. 사업목표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4) 54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분권교부세 포함)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여건개선), 제6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9	-	-	-	-	747	-	747
남동구	2	-	-	-	-	2	-	2
계양구	1	-	-	-	-	1	-	1
서 구	6	-	-	-	-	8	-	8
강화군	480	-	-	-	-	595	-	595
옹진군	130	-	-	-	-	141	-	141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407	-	-	-	-	416	-	416
남동구	1	-	-	-	-	1	-	1
계양구	0	-	-	-	-	0	-	0
서 구	4	-	-	-	-	6	-	6
강화군	345	-	-	-	-	344	-	344
옹진군	57	-	-	-	-	65	-	65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619명/407명

- 목표치 66%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619	407	6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미흡한 점

- 서해5도 교육비 지원 및 기타 교육비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에 대하여 사전 예산 미삭감 조치로 잔액발생

○ 건의사항

-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 표준시행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별 시행지침수립에 어려움이 있는바 농식품부의 「표준 시행지침(안)」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람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기획관실 (급식지원팀)	담 당 자	조미경
전화번호	032-440-2177	이메일	mk21happy@korea.kr

1. 사업목표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농가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35개교 263,711명

○ 지원내용 :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의 구입비 차액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 쌀, 한우, 계란

○ 총사업비 : 61억원(시 29억원, 군·구 25억원, 학부모 7억원)

○ 재원분담 : 초등(시 55%, 군 · 구 45%),
그외(시 40%, 군 · 구 35%, 학부모 25%)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33,075명/2,490개소					28,700	5,600	343
'10	248,531명/454개소					6,500	2,100	86
'11	183,690명/450개소					5,800	1,900	77
'12	173,720명/471개소					5,700	700	64
'13	263,711명/535개소					5,400	700	61
'14	263,423명/580개소					5,300	200	5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56,133명/412개소					3,945	-	39
'11	244,664명/442개소					2,883	-	29
'12	231,543명/447개소					2,920	-	29
'13								

※ 2010년~2012년 자부담 집행현황 파악 불가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지원학생수	계획 대비 실적	명	263,711	263,711	100%

※ 현재 정산진행 중으로 정확한 실적은 3월 이후 파악 가능

5. 건의사항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

5. 광주광역시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담당부서	미래인재교육과	담 당 자	황정숙
전화번호	062-380-4284	이메일	0823hjs@hanmail.net

1. 사업목표

○ 공공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2. 사업내용

○ 운영대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운영기간 :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운영관리

- 지역수요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 반영

3. 연차별 사업 예산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7.0	7.3
'14	35						7.0	7.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30						6.6	6.6

- 농어촌학교 11개교 설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30명/30명

- 목표치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공공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참여인원	명	30	3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타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전파로 평생교육 참여 인원 급증

○ 미흡한 점

- 평생교육 담당자 및 기관장이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시각과 역할에 따라 기관별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이 기관별 차이가 큼

2-3-1-1(계속)	농어업인 교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담 당 자	이종군
전화번호	062-613-3965	이메일	tlgo73@korea.kr

1. 사업목표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 투자액 : 265백만원)

○ 사업규모 : ('13) 205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205명에게 265백만원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5	-	-	-	-	265	-	265
동구	3	-	-	-	-	4	-	4
서구	14	-	-	-	-	19	-	19
남구	55	-	-	-	-	73	-	73
북구	33	-	-	-	-	45	-	45
광산구	100	-	-	-	-	124	-	124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154	-	-	-	-	195	-	195
동구	3	-	-	-	-	4	-	4
서구	10	-	-	-	-	13	-	13
남구	32	-	-	-	-	55	-	55
북구	40	-	-	-	-	44	-	44
광산구	69	-	-	-	-	79	-	79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205명/154명

- 목표치 75%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205	154	7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 건의

2-3-2-2(계속)	학교 급식비 지원(광주광역시)

담당부서	체육복지건강과	담 당 자	남광수
전화번호	380-4393	이메일	princen@korea.kr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급식비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으로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

○ 농촌지역 초·중학생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광주광역시 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14교(초 11, 중 3) 1,793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광주광역시 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속적 실시

4.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4교(초 11, 중 3)
- 지원금액 및 형태 : 1,914백만원, 급식비지원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24	1,069	1,793
2014						827	1,087	1,914
(증△감)						103	18	12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70					4,332	5,720	10,052
‘13	1414					724	1,069	1,793
‘14	14/14					827	1,087	1,914
‘15	14/14					877	1,138	2,015
‘16	14/14					927	1,188	2,115
‘17	14/14					977	1,238	2,215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	.	.	.	1,793	1,914	급식비 지원 학교수	내부자료

6. 대전광역시

2-3-1-1(계속)	농어업인 교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담 당 자	임형순
전화번호	042-270-3735	이메일	yj4864@korea.kr

1. 사업목표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 경감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 투자액 : 122백만원)

○ 사업규모 : ('13) 83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도 시행계획 및 실적**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83	0	0	0	0	122	0	122
동 구	12					17		17
중 구	4					5		5
서 구	25					37		37
유성구	40					60		60
대덕구	2					3		3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64	0	0	0	0	87	0	87
동 구	10					14		14
중 구	4					6		6
서 구	14					19		19
유성구	36					48		48
대덕구	0					0		0

○ **2014년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79	0	0	0	0	118	0	118
동 구	12					18		18
중 구	5					7		7
서 구	20					30		30
유성구	40					60		60
대덕구	2					3		3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83명/64명

- 목표치 77%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83	64	7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 건의

7. 울산광역시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울산광역시울주군)

담당부서	보건과(방문건강팀)	담 당 자	이미아주무관
전화번호	052-229-8504	이메일	miaya78@korea.kr

1. 사업목표

○ 한방순회 진료사업을 통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예방의학인 한방의료 대중화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목 적 : 퇴행성질환 및 만성질환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대 상 : 의료취약계층, 경로당, 복지관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일 시 : 2013년 2월 ~ 12월

○ 내 용

- 침 시술,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
- 한방관련 건강 상담
-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교육
- 잘못된 한방상식 소책자 배부
- 만성질환자 대상자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 등록・연계

○ 인 력 : 한방공중보건의사 2명, 담당자 2명

○ 예 산 : 5,500천원 (군비 100%)

○ 추진상황

구분	추진업무명	장소명	소재지	운영 횟수	인원 (명)	비고
울주군 보건소	순회한방진료	계		101	1,820	
		상천경로당	삼남면	4	87	
		교동주공경로당		1	17	
		방기경로당		1	22	
		상방경로당		1	14	
		태봉경로당		4	63	
		신화마을경로당	언양읍	1	19	
		대암경로당		1	11	
		활천경로당	두서면	3	57	
		하동경로당		1	16	
		인보경로당		1	13	
		서하경로당		1	16	
		전읍경로당		2	28	
		계당경로당	두동면	1	18	
		중리말경로당		1	14	
		사촌경로당	삼동면	1	18	
		왕방경로당		7	87	
		금곡경로당		5	31	
		화산경로당	온양읍	10	179	
		남부노인복지관		14	335	
		하서마을회관		10	192	
		남창1리경로당		1	20	
		오산경로당	온산읍	10	158	
		신온1리경로당		3	39	
		신온3리경로당		2	28	
		덕신경로당		1	18	
		온덕1구경로당		1	30	
		율리경로당	청량면	10	216	
		화정경로당		1	38	
		한솔그린빌경로당	웅촌면	1	20	
		화정마을회관	서생면	1	16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 9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7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5		17.5
'10	-					-		-
'11	300명/5개소					4		4
'12	400명/5개소					4.5		4.5
'13	400명/5개소					4.5		4.5
'14	400명/5개소					4.5		4.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11	314명,5개소					4		4
'12	128명,5개소					0.3	1	1.3
'13	1,820명,30개소					5.5		5.5

- 합동평가 기준 변경으로 기존 사업에 투입 예정이었던 자원을 한방순회진료로 전환 투입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방순회진료	한방순회 진료인원	실적/계획	명	400	1,820	45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2013년 보건소 한방사업 중 한방순회진료사업 확대로 성과지표 목표치에 상향도달

-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 해소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미흡한 점

- 한방이라는 특정 의료부분에 국한된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도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 건의사항

- 관련 타부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운영과	담 당 자	권기회 주무관
전화번호	052-210-5465	이메일	33chance@use.go.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농복합지역의 기숙형고교에 학교특성을 고려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 기숙형고교 특성에 맞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공유로 학교의 자율적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울주군 기숙형고교(남창고)

○ 사업규모 : 1교, 24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기숙형고교 방과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 1인당 225,000원(년간지원비/240명)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방과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교육청 자체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8		311		369
'10	1교					89		89
'11	1교			26		72		98
'12	1교			32		72		104
'13	1교					54		54
'14	1교					24		24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교육청 자체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교					89		89
'11	1교			26		72		98
'12	1교			32		72		104
'13	1교					54		5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1교(1인당 225,000원, 240명) /1교(1인당 225,000원, 240명)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률	%	1교	1교	100
	1인당 지원금액	계획 대비 실적	%	225천원	225천원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기숙형고교에 학교특성을 고려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 제고

○ 미흡한 점

- 학교자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다각적인 지원유도 부족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담 당 자	손 혜영
전화번호	052-210-5574	이메일	hyeyoung@use.go.kr

1. 사업목표

○ 공공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2. 사업내용

○ 운영대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운영기간 :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운영관리

- 7학급 이상 : 1학교 1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제 확립
- 6학급 이하 : 당해 학교의 연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 시행
- 지역수요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 반영

○ 추진근거 : 2013년 평생교육 운영 계획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9					469	119	588
'10	51					70		70
'11	51					77		77
'12	51					92		92
'13	64					124	119	243
'14	53					106		10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51					70		70
'11	51					77		77
'12	51					92		92
'13	64					124	119	243

- 농어촌학교 74개교+도서관 1기관 : 75기관의 70%인 53기관을 추진기관으로 목표치 설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35% 달성

- '13년 실적 : 참여인원 39,528 ÷ 농어촌인구(2010년 통계청 자료) 47,858명 × 100 = 82.5%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공공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참여인원	명	35	82.5	235.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타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전파로 평생교육 참여 인원 급증

○ 미흡한 점

- 평생교육 담당자 및 기관장이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시각과 역할에 따라 기관별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이 기관별 차이가 큼

2-1-6-1	울산시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울산시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담 당 자	한미화
전화번호	210-5882	이메일	han3204@use.go.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교육정책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

2. 사업내용

○ 위원수 : 17명

○ 운영기간 : 2013. 1월 ~ 12월

○ 기능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밑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위원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					6		6
'10	17					1		1
'11	17					1		1
'12	17					2		2
'13	17					1		1
'14	17					1		1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위원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		해	당	없	음			
'12								
'1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횟수	회	1	0	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안발생 시 회의가 개최되므로 적극적 운영이 어려움

2-3-1-1(계속)	농어업인 교교생 학자금 지원(울산광역시)

담당부서	농축산과	담 당 자	정연태(주무관)
전화번호	052-229-2925	이 메 일	boston25@korea.kr

1. 사업목표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 투자액 : 526백만원)

○ 사업규모 : ('13) 387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387명에게 526백만원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7	-	-	-	-	526	-	526
중구	2	-	-	-	-	3	-	3
남구	-	-	-	-	-	-	-	-
동구	8	-	-	-	-	11	-	11
북구	16	-	-	-	-	21	-	21
울주군	361	-	-	-	-	491	-	491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387	-	-	-	-	526	-	526
중구	2	-	-	-	-	3	-	3
남구	-	-	-	-	-	-	-	-
동구	8	-	-	-	-	11	-	11
북구	16	-	-	-	-	21	-	21
울주군	361	-	-	-	-	491	-	491

4. 성과목표 달성도(사업물량 위주로)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실적 : 387명/387명

- 목표치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지원율	계획대비실적	%	387	38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건의사항

-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 건의

2-3-2-2	학교 급식비 지원(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담 당 자	이은영
전화번호	210-5595	이메일	dmsdudl@use.go.kr

1. 사업목표

○ 가정평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급식비를 우선지원

2. 사업내용

○ **울주군 전 초등학교 및 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그 외 학교는 식품비 일부 지원**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 확대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2					15,250		15,250
'10	.					.		.
'11	.					.		.
'12	.					.		.
'13	56					7,257		7,257
'14	56					7,993		7,99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11	.					.		.
'12	.					.		.
'13	56					7,257		7,25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수	지원학교수	교	56	56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없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담 당 자	조희정
전화번호	052-210-5875	이메일	rainbi97@use.go.kr

1. 사업목표

○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 학생의 무료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2. 사업내용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지원 대상 : 노후 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사업량) : 통학차량 지원학교 12개교
- 지원조건 : 농어촌 통폐합학교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차량 교체비, 차량 신규 구입비
  통학차량운영비(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1					1,209		1,209
‘10	9					120		120
‘11	10					160		160
‘12	10					380		380
‘13	11					150		150
‘14	12					399		399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9					120		120
'11	10					160		160
'12	11					380		380
'13	12					710		71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2014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울산행복학교(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를 2013년에 구입함으로써 당초 목표치 대비 109%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	농어촌 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지원학교수	교	11	12	10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 시 통학차량 임차료, 안전요원 인건비, 통학차량 유류비, 각종 운영비, 통합학교 학생의 실비 통학비를 추가 가산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8. 경기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기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지역보건팀)	담 당 자	윤영희
전화번호	031-8008-4320	이메일	hananim@gg.go.kr

1. 사업목표

○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건강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재가암 및 장애인과 보호자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 허약노인, 조손, 한부모 등

○ 사업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441여명의 방문건강관리전문 인력이 사업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과정 : 대상자 발견→신규방문 및 등록(대상자 건강 문제 및 위험요인 등 파악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중재 (대상자 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대상자 평가(추후 관리 여부 결정, 요구도 조사 등 평가)

○ '13년 예산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국고보조지출한도액을 기초로 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건강증진법 제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700	16,700		33,400
'10	202,000				5,300	5,300		10,600
'11	202,400				5,500	5,500		11,000
'12	205,000				5,900	5,900		11,800
'13								
'14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85,107				5,300	5,300		10,600
'11	207,862				5,500	5,500		11,000
'12	240,398				5,900	5,900		11,800
'13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포괄운영에 따름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기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노희정(행정7급)
전화번호	(031)8008-4414	이 메 일	hjroh@gg.go.kr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 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2005년 지방이양)

○ 사업비('13) : 327백만원(지방비 294, 자부담 33)

※ 도비 65, 시군비 228, 자담 33(도비 20%, 시군비 70%, 자담 10%)

○ 지원대상 : 각 시군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도내 3개소(용인, 이천, 여주)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市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90%(시군 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추진근거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와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3개소					294	33	327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3개소					280	30	31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은 총 3개소

- 도내 3개 여성농업인센터(용인, 이천, 여주)에 운영비 등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운영지원 사업량	운영지원 사업량	개소	3	3	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13년 계획대로 사업 추진

○ 미흡한 점

- 기존 여성농업인센터(용인, 이천, 여주) 위주의 사업추진
- 센터별 지역실정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미흡

  (수요가 적을지라도 기존 프로그램의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지와 예산이 부족함)

○ 건의사항

- 지방재정 악화 및 ‘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시군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분권교부세의 연장 또는 국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며,
- ‘15년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시·도 및 시·군 담당자회의 등)가 선행되어야 함

2-3-1-1(계속)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경기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노희정
전화번호	(031)8008-4414	이 메 일	hjroh@gg.go.kr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경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계속(※ 2005년 지방이양)

○ 사 업 비('13) : 4,589백만원(지방비 4,589)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고, 고교생 자녀를 둔 전업적 농업인

- 제한조건 :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일 것

○ 사업규모 : 3,897명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분권교부세 포함)

○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FTA 체결국 증가 및 농산물 개방 진전으로 농업·농촌 위기 가중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3,897명					4,589		4,589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3,897명					4,180		4,18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인원	학자금지원인원 (연평균)	명	3,897	3,897	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자녀 교육비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착 유도

○ 미흡한 점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
- 사업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위축 및 효과 저조

○ 건의사항

- ‘15년 사업 실시를 위해, 신속한 중앙정부의 계획 확정 필요

- 지방재정 악화 및 ‘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시군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편,

- 대통령 공약사항 중 “고교무상교육(순차적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15년부터는 읍면지역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 및 대안(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마련이 요구됨

2-3-2-2(계속)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경기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노희정
전화번호	(031)8008-4414	이 메 일	hjroh@gg.go.kr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우수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젊고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계속(※ 2005년 지방이양)

○ 사 업 비('13) : 729백만원(지방비 729)

○ 지원대상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사업규모 : 450명(※ 여주자영농고 현재 정원)

○ 지원형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지원조건 : 지방비 100%(분권교부세 포함)

○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

○ 사업내용 : 여주자영농고 재학생에게 급식비(1일, 3식) 지원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비의 지원)

※ '85.2.21 정무 제2장관실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재가로 지원계획 확정(대통령 지시사항 '84.11.3)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영농과생에게 양질의 급식 지원으로, 농업·농촌을 선도할 후계 농업세대 육성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1개소					729		729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	1개소					710	170	88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고 급식지원	급식지원 학교 수	급식지원 학교 수	개소	1	1	1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함

○ 미흡한 점

- 자영농과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급식비 지원단가가 현실물가 및 친환경학교급식 등 타 사업의 지원단가에 못 미치는 실정임

○ 건의사항

- 지방재정 악화 및 '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도, 도 교육청)

- 분권교부세 유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됨

9. 강원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강화(강원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담 당 자	홍인숙
전화번호	033-249-2674	이메일	dolparihong@korea.kr

1. 사업목표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신부 건강보호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월~ 12월

○ 총사업비 : 410백만원(도비 123, 시군비 287)

○ 사업규모 : 5개군(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사업내용 : 임신부 산전진찰, 뇨·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X-선촬영기등

○ 사업 시행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도지회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사업량 축소 : 횡성군 제외

→ 사업지역 산부인과 병·의원 개설로 인한 사업제외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20.2		22.5
'10	556				2.3	3.8		6.1
'11	2,440					3.9		3.9
'12	2,221					4.3		4.3
'13	2,350					4.1		4.1
'14	2,200					4.1		4.1

※ '13년 사업대상 축소(산부인과의원 개원- 횡성군 제외)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556				2.3	3.8		6.1
'11	2,440					3.9		3.9
'12	2,221					4.3		4.3
'13	2,350					4.1		4.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실적	계획대비실적	명	2,350	1,925	82%

5. 자체평가

○ 추진실적 - 5개 군 132회 검진, 1,925명 진료

○ 임신가정의 시간적·정신적 부담감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앞으로 계속 이용하겠다(89%), 주변 임신한 이웃에 소개할 것이다(86%) 등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컸음

-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77%), 산전진찰의 걱정이 줄었다(93%) 등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감도 다소 긍정적임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 당 자	주무관 이미아
전화번호	033-249-2612	이메일	leeyun33@korea.kr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이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학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촌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총사업비 : 218백만원('13년까지 기투자액 : 3,356백만원)
○ 사업규모 : 2개소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10%, 시군비(분권교부세 포함) 75%, 자부담 15%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동법 시행령 및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3					278	49	327
'11	2					185	33	218
'12	2					185	33	218
'13	2					185	33	218
'14	2					198	22	22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					278	49	327
'11	2					185	33	218
'12	2					185	33	218
'13	2					185	33	21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등 필수사업의 경우 여성농업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 높음
- 교육·문화사업 등은 열악한 센터운영 상황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고충상담	상담인원	명	240	279	116
	영유아보육	이용인원	명	8,369	5,074	61
	방과후 학습지도	지도인원	명	6,321	5,329	84
	문화프로그램운영	참여인원	명	8,477	8,068	95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열악한 농촌 교육현실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여성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 사교육비 절감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농촌의 교육문제, 농업문제, 여성문제, 문화적 욕구들을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농촌의 활력화에 기여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책임교육과	담 당 자	강대현 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432	이메일	kangdh@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실질적 교육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1개군, 기숙형고교

○ 사업규모 : 18교, 1,98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기숙사 운영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

○ 지원조건 : 기숙사 정원×12개월×10만원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및 급식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80		9,300	38,340	59,720
'10	18교			12,080		1,940	27,100	41,120
'11	18교					1,720	2,810	4,530
'12	18교					1,720	2,810	4,530
'13	18교					1,960	2,810	4,770
'14	18교					1,960	2,810	4,77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1교			14,240				23,600
'11	18교			350			130	1,670
'12	18교			520				2,490
'13	18교						3,420	3,42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18교(1인당 10만원, 1,980명) / 18교(1인당 10만원, 1,980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률	%	18교	18교	100
	1인당 지원금액	계획 대비 실적	%	10만원	10만원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을 확대 하여 실질적 교육력 제고

○ 미흡한 점

- 지속적인 지역자치단체의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제정 부족
- 사감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 및 기숙사 입사생들의 자기부담률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치단체의 지원 유치 병행 부족
- 지역적인 특색을 살릴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부족.
- 학습 프로그램과 인성 프로그램의 부조화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진흥과	담 당 자	김요안 주무관 안선희 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535	이메일	bluemi@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관
- 운영실적 : 1,634강좌, 23,783회, 438,407명 참여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초, 중, 특수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279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3,518,000천원(교육비특별회계)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마을학교도서관으로 지정 운영(47개)
- 지원조건 : 학교도서관 지역주민에게 개방 및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주)NHN문화재단에서 우리마을학교도서관 개관시 도서 3,000권 지원 및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사업시행주체 : 강원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86		2,286
'10	22개관					510		510
'11	22개관					487		487
'12	22개관					410		410
'13	22개관					476		476
'14	22개관					403		40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2개관					510		510
'11	22개관					487		487
'12	22개관					410		410
'13	22개관					476		476

○ 학교도서관실무사 배치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956		15,956
'10	240교					2,040		2,040
'11	361교					3,069		3,069
'12	355교					3,018		3,018
'13	279교					3,518		3,518
'14	279교					4,311		4,311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40교					2,040		2,040
'11	361교					3,069		3,069
'12	355교					3,018		3,018
'13	279교					3,518		3,518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수	운영기관	관	22	22	22
학교도서관전담 인력 배치	배치율	전담인력배치율	%	284	279	98
우리학교마을도 서관운영	학교수	운영학교수	개	47	4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 학생·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학교도서관 279교에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종으로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능 강화

○ 건의사항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강화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사업 협의 및 지원

2-1-6-1(계속)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책임교육과	담 당 자	오문석 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433	이메일	oms831@korea.kr

1. 사업목표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 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17개 지역교육청

○ 사업규모 :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추진내용

- 교육시설 확충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심의)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등 기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의

○ 추진근거 : 강원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규칙,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개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7청							
'11	17청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2	17청							
‘13	17청							
‘14	17청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17청							
‘12	14청							
‘13	15청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 17개 교육청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실적 : 15개 교육청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각 지역교육청 연 회 이상 협의회 개최 여부	%	17	15	88.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각 시·군 교육청, 지자체, 전문가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발전 방향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경비 지원 방안 논의
- 교육경비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건의사항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요하는 각종 협의회 등이 주관청 또는 사업별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가 중복되는 실정임

- 법령 및 조례 등의 일제 정비를 통해 협의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3-1-1(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 당 자	주무관 이미아
전화번호	033-249-2612	이메일	leeyun33@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으로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60,427백만원)

○ 사업규모 : ('13) 3,900명 / 3,133백만원(도비 470, 시군비 2,663)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85%[분권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5,183					4,400		4,400
'11	4,000					4,000		4,000
'12	5,000					4,000		4,000
'13	3,900					3,133		3,133
'14	3,500					2,800		2,8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885					3,863		3,863
'11	4,028					3,248		3,248
'12	3,609					2,876		2,876
'13	3,900					3,133		3,13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추진실적 : 도내 18개시군 3,900명에 3,133백만원 지원(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 도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고고생자녀 학자금지원	학자금지원학생수	(학자금지원학생수/예산계획서상 지원학생수)×100	명	3,900	3,900	100

5. 자체평가

○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2-3-2-2(계속)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 당 자	주무관 이미아
전화번호	033-249-2612	이메일	leeyun33@korea.kr

1. 사업목표

○ 미래 농업 인력인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의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농업인 후계세대의 육성 및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3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4,463백만원)

○ 사업규모 : ('13) 290명 / 268백만원(도비 134, 교육청 134)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50% 교육청 50%

○ 사업시행주체 : 교육청

○ 추진근거 : 대통령지시사항/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370					134	134	268
'11	370					134	134	268
'12	370					134	134	268
'13	290					134	134	268
'14	290					134	134	268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42					121	121	242
'11	370					134	134	268
'12	329					102	102	204
'13	290					134	134	26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 도내 3개 학교 290명(기숙 120명, 비기숙 170명) 268백만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학생수	(급식비지원학생수/예산계획서상 지원학생수)×100	명	290	290	100

5. 자체평가

○ 도내 3개학교 290명(합숙 120, 비합숙 170)농업계 고등학생의 연간 195일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

2-3-2-4	통·폐합학교 통학차량을 활용한 고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귀가 지원(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 당 자	남 철
전화번호	033-258-5455	이메일	namcheol@korea.kr

1. 사업목표

○ 통·폐합학교 통학차량을 활용한 고등학생 방과후(야간) 교육활동 통학편의 제공으로 교육여건 및 교육효과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사업대상 : 방과후 교육활동 후 22시 이후부터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귀가 수단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중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등학교에 지원한 통학차량을 방과후 교육활동 귀가에 활용 가능한 학교

○ 사업내용 : 고등학생 방과후 차량 운영비 지원(인건비, 4대보험, 유류비)

○ 지원조건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에 지원한 통학차량을 방과후 교육활동에 활용 가능한 고등학교

○ 추진근거 : 연도별 고등학교 방과후(야간) 차량지원 계획

3. 연차별 추진계획

○ '10년부터 분기별로 고등학교 방과후(야간) 차량운영비(인건비, 4대보험료, 유류비) 지원

※ 단, 지원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학교에 한함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20	1,820
'10	26교						370	370
'11	26교						370	370
'12	25교						360	360
'13	25교						360	360
'14	25교						360	36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4						293	293
'11	17						261	261
'12	15						315	315
'13	18						291	29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방과후(야간) 차량 지원 학교 18교
- 실적 : 방과후(야간) 차량 지원 학교 18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13년 고등학교 방과후(야간) 차량지원	차량지원학교수	지원학교수/ 계획학교수	%	18	1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야간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방과후(야간) 교육 활동 후 교통편의 제공으로 교육 여건 개선

7-1-2.(계속)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강원도)

담당부서	농업경영팀	담 당 자	김동식 주무관
전화번호	033-249-2706	이메일	kingfarmer@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체험지도 및 마을해설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농어촌마을의 활성화와 자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하는데 기여

○ 지역의 특수성과 시장 트렌드를 함께 반영한 농어촌체험·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기획 및 진행 등) 전문지식 습득과 현장에서 응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강화

○ 테마형 농촌체험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관광객에게 농어촌 체험·해설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양질의 농어촌 체험관광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교육인원 : 100명(농어촌체험지도사 60, 농어촌마을해설가 40)
- 교육대상 : 도내 농촌체험마을 리더, 사무장, 주민

○ 교 육 비 : 130백만원(도비 39, 시군비 78, 자부담 13)

○ 교육일정 : '13.10.21~11.29(각 과정 별 4회 교육)
- 농어촌체험지도사
  · '13.10.21~23(2박3일), 11.4~6(2박3일), 11.13~15(2박3일), 11.27~29(2박3일)
- 농어촌마을해설가
  · '13.10.21~23(2박3일), 10.28~30(1박2일), 11.11~12(1박2일), 11.27~11.29(2박3일)

○ 장 소 : 2개소 운영
- 농어촌체험지도사 : 사재산마을(횡성군 안흥면 상안2리 517-2)
- 농어촌마을해설가 : 산채마을(횡성군 둔내면 삽교1리 732)

○ 교육방법 : 이론강의, 실습(토론, 참여형학습, 발표, 체험 등), 현장견학 등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 업 량 : 100명(매년)

○ 사 업 비 : 130백만원(도비 39, 시군비 78, 자부담 13)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7					347	38	385
'12	87					113	12	125
'13	80					117	13	130
'14	100					117	13	13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2	87					98	11	109
'13	80					94	10	10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교육목표 : 100명 / 교육인원 80명
- 체험마을 농촌체험객 증가로 교육 미이수자 발생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 이수율	-실적/목표	명	100	80	8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 전문 인력 양성 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미흡한 점

- 각종 교육과정이 2~3월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시기 조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없음

10. 충청북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청북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보건7급 정인영
전화번호	043-220-3122 043-220-3123	이메일	kala7020@korea.kr mento923@korea.kr

1. 사업목표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 산부인과 병의원 없는 시·군을 위한 출산환경 대책 마련으로 의료취약지인 농촌지역의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사업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 대 상 :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및 노인, 건강위험 요인 있는 일반 지역주민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시행주체 : 12개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126명의 방문관리사
- 사 업 비 : 31억원(기금 50%, 지방비 50%)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대 상 : 산부인과 병의원 없는 시군(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이동 산부인과 전담팀 구성 및 검진 차량 운영
  · 월 2회 이상 산전진료 및 산전검사(20여종) 실시
- 시행주체 : 충주의료원 민간경상보조
- 사 업 비 : 0.8억원(도비 100%)

3. 연차별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관리에서 일반주민으로의 건강관리 범위 확대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 발생 시 이동산부인과 확대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규모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6,000		-	-	61.6	61.6	-	123.2
'10	65,000		-	-	15.1	15.1	-	30.2
'11	66,000		-	-	15.5	15.5	-	31
'12	67,000		-	-	15.5	15.5	-	31
'13	68,000		-	-	15.5	15.5	-	3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68,000	-	-	-	15.5	15.5	-	31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규모(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국비			
합계	-		-	-	23	26.4	-	49.4
'10	1개소		-	-	23	23	-	46
'11	3개소		-	-	-	1.0	-	1.0
'12	2개소		-	-	-	0.8	-	0.8
'13	2개소		-	-	-	0.8	-	0.8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2개소/783명	-	-	-	-	0.8	-	0.8

4. 성과목표 달성도

○ 방문건강관리사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문건강관리	취약가구등록가구수	계획대비 실적	%	68,000	74,535	109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운영횟수)	계획대비 실적	%	48	48	100
	운영실적(진료인원)	계획 대비 실적	%	700	783	112

5. 자체평가

○ 잘된 점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농촌지역의 이동산부인과 운영으로 임신 및 출산에 편리한 환경 제공

1-3-3-7(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충청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 당 자	김유리
전화번호	043-220-3523	이메일	qudwls0812@korea.kr

1. 사업목표

○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한기 문화 활동·교양강좌, 도·농 교류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젊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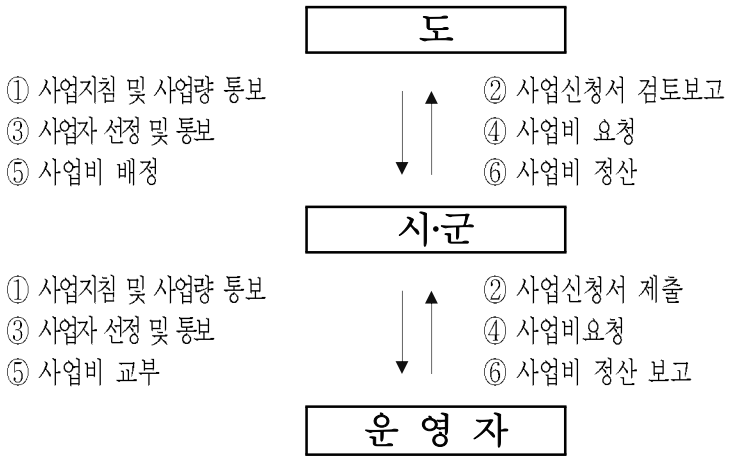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2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 사업추진절차

- 도 : 사업지침시달, 사업자선정, 사업비배정, 사업실적평가 및 지도감독
- 시·군 : 사업신청서접수 및 이송, 사업비교부, 센터지도감독, 사업비정산

○ 사업규모 : 3개소(청주, 청원, 영동)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 · 사무실·상담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시설을 확보.
    다만,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하여 이용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부정기사업비
- 사업 주요내용 :
  -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안내
  - · 여성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 ·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75%(분권 50%포함), 자담 10%

○ 사 업 비 : 420백만원 (개소당 14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17.6	2.5	20.1
'10	3					3	0.5	3.5
'11	3					3.3	0.6	3.9
'12	3					3.6	0.6	4.2
'13	3					3.8	0.4	4.2
'14	3					3.9	0.4	4.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					3	0.5	3.5
'11	3					3.3	0.6	3.9
'12	3					3.6	0.6	4.2
'13	3					3.8	0.4	4.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연)	상담 건수	계획대비 실적	건	620건	641건	103%
영유아 보육활동(연)	보육 건수	계획대비 실적	명	236명	236명	100%
방과 후 학습지도(연)	학습 건수	계획대비 실적	명	132명	132명	100%
농한기 교육 및 문화 활동(연)	활동 건수	계획대비 실적	회	386회	711회	184%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좋으며, 도농교류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이 기대됨.
-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 영유아수 감소, 물가 상승 및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센터 운영 사업비가 편중되어 교육 및 문화활동 위축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충청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담 당 자	최시선
전화번호	043-290-2146	이메일	musim21@cbe.go.kr

1. 사업목표

○ 기숙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내고장 지역 인재 육성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기숙사 운영 내실화 (기숙사 운영비 교당 3,500만원 및 학생 1인당 20만원 자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2008년 이후 계속

○ 사업 주체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 사업 대상 : 단양고 등 충북 13교

○ 추진 내용

- 2013. 1월 기숙사 운영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원

- 2013. 4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구 분	지원 내역(천원)	금액(백만원)	재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교당 3500만원*13교 -학생 1인당 200천원	852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78,000천원 (기숙사 학생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378	자체
합 계		1,230	

- 기숙형고교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지도

- 기숙형 고교의 운영성과 분석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운영성과 분석 : 13교

·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최근 3년간 컨설팅 미실시교

※ 충북 : 괴산고, 옥천고, 진천고, 청원고, 영동고, 단양고 총 6교

· 연구용역 : 전북대 박세훈 교수팀

· 기간 : 2014년 1 ~ 2월

- 업무담당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

· 2013. 전국 기숙형고교 학교장 및 시·도 담당자 워크숍 1회

- 기숙형고교 발전 유공 장관 표창

· 충북 1명 : 청원고 기숙형고교 업무 담당자(교사 어성중)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0년 이후 기숙사 운영비 지속적 지원

○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관리 및 기숙사 시설의 체계적 관리 추진

○ 기숙사 업무전담 교사(사감) 승진 가산점 부여 : 월 0.015점

○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권고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852		852
청원고	1					83		83
옥천고	1					67		67
영동고	1					72		72
진천고	1					60		60
괴산고	1					59		59
음성고	1					70		70
단양고	1					66		66
제천여고	1					71		71
제천제일고	1					59		59
충주여고	1					70		70
보은고	1					61		61
충원고	1					59		59
형석고	1					55		55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852		852
청원고	1					83		83
옥천고	1					67		67
영동고	1					72		72
진천고	1					60		60
괴산고	1					59		59
음성고	1					70		70
단양고	1					66		66
제천여고	1					71		71
제천제일고	1					59		59
충주여고	1					70		70
보은고	1					61		61
충원고	1					59		59
형석고	1					55		5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기숙형고 학교수 대비 기숙형고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학교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운영	기숙사 생활	만족도	%	83	86	104
	기숙사 충원율	입사 학생수	명	1,983	1,937	97.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청북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담 당 자	윤명희
전화번호	043-220-2145	이메일	shineymh@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특화 및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농어촌 주민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등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 추진근거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 사 업 비 : 600백만원('13년도)

○ 지원형태 : 출연금(300백만원) 및 보조금(300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320	-	1,194		1,514
'10년	-	-	-	-	-	-	-	-
'11년	12개 시군	-	-	-	-	170	-	170
'12년	12개 시군	-	-	120	-	318	-	438
'13년	12개 시군	-	-	200	-	400	-	600
'14년	12개 시군	-	-	-	-	306	-	30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	-	-	-	-
'11	12개 시군	-	-	-	-	170	-	170
'12	12개 시군	-	-	120	-	318	-	438
'13	12개 시군	-	-	200	-	400	-	6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출연금(300백만원) 중 2개 분야 21개 사업추진(110백만원)
- 국·도비(300백만원) 중 5개 분야 26개 사업추진(300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공모사업 지원 실적	건	21	47	22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을 통해 중앙, 도, 시·군 평생교육 추진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 수렴, 평생교육 지원,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실천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선정된 프로그램 기관·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농촌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 건의사항

-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 담당자 의견 최대한 반영

2-1-6-1(계속)	시군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청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담 당 자	김현경
전화번호	043-290-2897	이메일	qjenddl@cbe.go.kr

1. 사업목표

○ 지역 민·관·학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 교육현안에 대한 상생적인 협력과 합의점 도출

○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cluster)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주체 : 본청 및 10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청주 제외)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정기회 운영 : 연 2회

○ 지역협의회 재구성 : 임기 만료 예정 외부 및 위촉위원 6명

4. 성과목표 달성도

○ 해당없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2-3-1-1(신규)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충청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 당 자	김유리
전화번호	043-220-3523	이메일	qudwls0812@korea.kr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 경제적 ·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시장 · 군수

<사업추진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도, 시·군, 읍·면·동>	○ 농어업인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실시
↓		
보조금 교부	<도→시·군>	○ 보조금 교부, 성과점검 등
↓		
사업 신청	<농어업인→읍·면·동→시·군>	○ 이·통장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 읍·면·동에 제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재학여부 확인	<학교→읍·면·동>	○ 학자금 지급 학생 재학여부 확인 후 분기별로 읍·면·동에 통보
↓		
사업비 지급	<읍·면·동→학교>	○ 재학여부 확인 후 학교계좌로 사업비 지급
↓		
보조금 정산	<읍·면·동→시·군→도>	○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 농어촌 지역 : 읍·면
준농어촌 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원 학자금 수혜자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호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가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주요 사업내용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분권 26%포함)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부모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610만원 초과인 경우
    ※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점수 1,181점 초과 (건강보험공단 의뢰하여 확인함.)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분권 26%포함)

○ 사 업 비 : 4,028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035					22,360		22,360
'10	6,000					6,103		6,103
'11	5,738					5,749		5,749
'12	3,104					3,084		3,084
'13	4,000					4,028		4,028
'14	3193					3,396		3,39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987					4,935		4,935
'11	3,844					3,667		3,667
'12	3,031					2,909		2,909
'13	2,555					2,472		2,472

※ '13년 추진실적 : 3분기 실적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지원인원수	계획대비 실적	명	4,000	2,536	6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시켜줌.

○ 미흡한 점

- 농촌 고령화로 인한 고등학생 학생 자녀 수 감소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 필요

2-3-2-2(신규)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충청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 당 자	김유리
전화번호	043-220-3523	이메일	qudwls0812@korea.kr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충청북도교육청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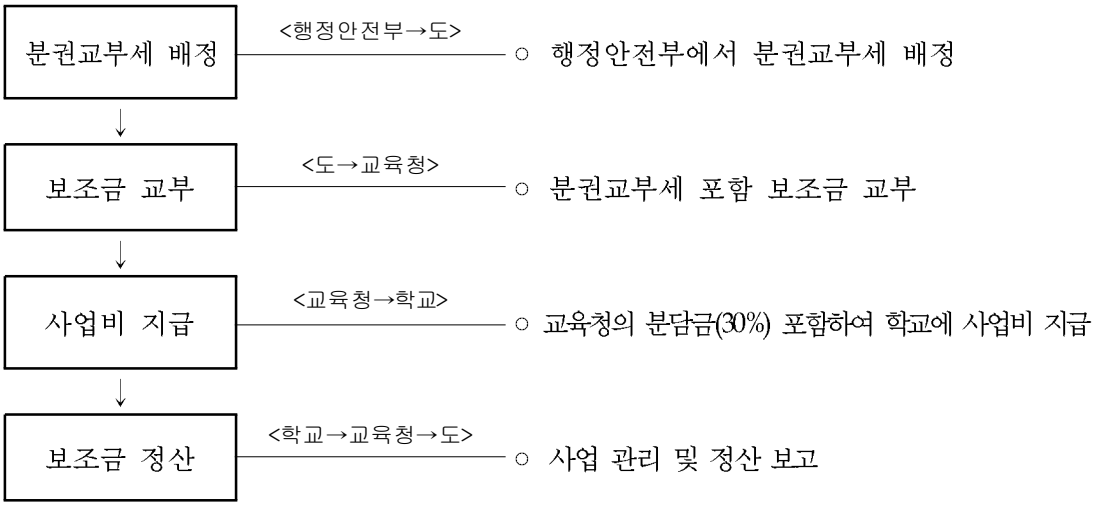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제12조 (경비지원)
- 대통령지시사항('84.11.3) 등

○ 사업 내용

○ 사 업 량 : 280명 (기숙사생 138명, 비 기숙사생 142명)

○ 지원일수 : 연간 200일 (주 5일 수업제)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지원내용 : 자영농고 재학생 급식비의 80%지원

- 기숙사생 : 138명 × 200일 × 5,700원 = 157,320천원
- 비기숙사생 : 142명 × 200일 × 1,900원 = 53,96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50%(분권교부세 23%), 교육청 30%, 자담 20%

○ 급식단가 확대 : ('10) 1,500원 → ('11) 1,700원 → ('12) 1,900원 → ('13) 1,900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도비 50%, 충청북도교육청 50%(자부담 20%포함)

○ 사 업 비 : 272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0					543.2	543.2	1,086.4
'10	280					92	92	184
'11	280					104	104	208
'12	280					105.6	105.6	211.2
'13	280					105.6	105.6	211.2
'14	280					136	136	27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80					92	92	184
'11	280					104	104	208
'12	280					105.6	105.6	211.2
'13	280					105.6	105.6	211.2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지원인원수	계획대비 실적	명	280	28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감경감함.
- 급식비지원으로 차세대 핵심농어업인 후계 세대 육성함.

○ 미흡한 점

- 해당 없음

2-3-2-4(계속)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충청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담 당 자	유여종(주무관)
전화번호	043-290-2898	이 메 일	yough@cbe.go.kr

1. 사업목표

○ 통폐합 학교 및 통학불편 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지원으로 농촌 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비('13) : 5,814백만원,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별도지원

○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노후차량 교체 8대, 443백만원
- 직영차량 운영 118대, 2,465백만원
- 임차차량 운영 118대, 2,906백만원
-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118명

○ 지원형태 : 자체예산

○ 지원조건 : 통폐합 학교 및 통학불편 학교

○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수용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통폐합학교 및 면이하 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9					5,763		
청주	5					158		
충주	30					813		
제천	22					363		
청원	38					1,203		
보은	22					393		
옥천	15					462		
영동	26					490		
진천	15					439		
증평	2					50		
괴산	25					458		
음성	23					784		
단양	16					150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4					5,814		
청주	5					158		
충주	31					813		
제천	22					363		
청원	38					1,203		
보은	22					393		
옥천	16					462		
영동	28					541		
진천	15					439		
증평	2					50		
괴산	25					458		
음성	24					784		
단양	16					1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계획대비 예산지원율 101%, 5,814백만원/5,763백만원

- 계획대비 지원대수 102%, 244대/239대

- 면이하 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 100%, 125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계획대비 예산지원율	지원금액÷ 지원계획금액	%	5,763	5,814	101
	면이하 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지원학교수÷ 대상학교수	%	125	12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면이하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기여(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미흡한 점

- 노후화된 직영차량 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필요

○ 건의사항

-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위한 교육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지원 필요

11. 충청남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남)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 당 자	박종규
전화번호	041-635-4302	이메일	bak4522@korea.kr

1. 사업목표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하여 보건기관 통합 방문건강관리 및 병원선 순회진료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87억원('12년~'16년)

○ 사업규모

- 통합 방문건강관리 450,000가구('13년 90,000가구)
- 병원선 순회진료 1,093,229명('13년 218,300명)

○ 지원형태

- 통합 방문건강관리(국고보조) : 보건복지부 ⇨ 도 ⇨ 시군(보건소)
- 병원선 순회진료(국고보조, 순도비) : 도 자체사업

○ 지원조건

- 통합 방문건강관리 : 『국고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보조』 도비 20%, 시군비 80%
- 병원선 순회진료 : 『국고보조』 국비 3/2, 지방비 1/3
  『자 체』 도비 100%

○ 시행주체 : 도, 시・군(보건소)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충청남도병원선운영조례, 통합 건강관리사업지침

3. 연차별 추진계획

○ ‘13년 15개 시 · 군 90,000가구에 대하여 방문 건강관리 추진

○ ‘13년 6개 시 · 군 28개 도서지역 218,300명의 병원선 순회진료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 통합 방문건강관리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0,000				7,170	8,258		15,428
‘12	90,000				1,510	1,727		3,237
‘13	90,000				1,430	1,647		3,077
‘14	90,000				1,410	1,628		3,038
‘15	90,000				1,410	1,628		3,038
‘16	90,000				1,410	1,628		3,038

- 병원선 순회진료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진료인원)	지방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93,229	391				2,903		3,294
‘12	218,229					638		638
‘13	218,300	100				564		664
‘14	218,600	97				567		664
‘15	218,900	97				567		664
‘16	219,200	97				567		664

<시행계획 추진실적>

- 통합 방문건강관리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0,903				2,940	3,374		6,314
‘12	113,758				1,510	1,727		3,237
‘13	97,145				1,430	1,647		3,077
‘14								
‘15								
‘16								

- 병원선 순회진료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진료인원)	지방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3,500					1,256		1,356
'12	218,229					691		691
'13	235,271	100				565		665
'14								
'15								
'1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계획대비 실적 113%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계				308,300	349,029	113
통합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 등록관리 가구수	계획대비 실적	%	90,000	113,758	126
병원선 순회진료	병원선 진료실적(명)	〃	%	218,300	235,271	10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거동불편자 및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방문진료 및 병원선 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간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

○ 건의사항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요원 충원이 요구됨에 따라 인건비 국고보조가 증액 지원 필요

- 도서지역 거동불편 주민 방문진료를 위하여 병원선 차량지원 필요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충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김애화
전화번호	041-635-2513	이메일	doghk@korea.kr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 업 비('13) : 520백만원(지방비 408, 자부담 112)

○ 지원대상 : 사업신청자의 전년도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4개소(서천, 홍성, 예산 2)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88%, 자부담12% ※예산농협:지방비50%, 자부담50%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설치·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13.1월)

- 4개소(서천1, 홍성1, 예산2)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3.2월)

- 4개소 / 개소당 총사업비 130백만원 중 도비 66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현지점검('13.10월)

-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예산 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08.2	111.8	520
서천	1					114.4	15.6	130
홍성	1					114.4	15.6	130
예산	2					179.4	80.6	260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08.2	111.8	520
서천	1					114.4	15.6	130
홍성	1					114.4	15.6	130
예산	2					179.4	80.6	26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추진 실적	개소	4	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개소당 사업비 상향조정('12년 120백만원→'13년 130백만원)으로 센터 자립기반 구축 및 기능 활성화 도모

○ 건의사항

- 영유아 보육사업 등 필수·임의사업 구분 삭제로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요망(센터대표 건의사항 '13.3월)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충청남도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정책과	담 당 자	송귀원 장학사
전화번호	041-640-7112	이메일	zcar2073@cnoe.or.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실질적 교육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 고교 운영교

○ 사업규모 : 고등학교 16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보통교부금(학교별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기숙사 학생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

▶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기숙형 고교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만들기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1		10,412		11,363
'10	8교					1,350		1,350
'11	17교			335		2,053		2,388
'12	16교			516		2,003		2,519
'13	16교					2,503		2,503
'14	16교					2,503		2,50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8교					1,350		1,350
'11	17교			335		2,053		2,388
'12	16교			516		2,003		2,519
'13	16교					2553		2,553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7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만족도	%	70	7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을 확대 하여 실질적 교육력 제고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청남도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행정과	담 당 자	조권호 주무관
전화번호	041-640-8211	이메일	jgh@cnoe.or.kr

1. 사업목표

○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비문해·저학력(초등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2. 사업내용

○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지원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30교(초-16교, 중-7교, 고-5교, 특수학교-2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4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 사업 지원대상 : 공공도서관
- 사업 규모(사업량) : 6개관/사서보조 인력 19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382백만원
- 지원조건 : 지역주민 대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지원대상 :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 8기관(초등학교-1교, 공공도서관-7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57백만원

- 지원조건 : 18세 이상 성인 대상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8			546		1,978		2,524
'10	3			99		99		198
'11	241			99		555		654
'12	265			114		635		749
'13	44			117		361		478
'14	15			117		328		44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53			429		1,150		1,579
'10	3			99		99		198
'11	241			99		55		154
'12	265			114		635		749
'13	44			117		361		47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수 : 44기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기관수	기관	44	44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가 지역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함
- 비문해 성인의 학력인정 지원체제 구축으로 사회통합 및 새로운 삶의 가치 창조에 기여함
-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됨

○ 건의사항

-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 및 지원 강화 필요

2-1-6-1(계속)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청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기획관	담 당 자	신묘철 주무관
전화번호	041-640-6627	이메일	smccam@cnoe.or.kr

1. 사업목표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 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14개 지역교육청

○ 사업규모 : 연 3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추진내용

- 교육시설 확충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개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				49
'10	15청			14				14
'11	15청			14				14
'12	14청			14				14
'13	14청			7				7
'14	14청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5청			14				14
'11	15청			14				14
'12	14청			14				14
'13	14청			7				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 14개 교육청 연 3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실적 : 14개 교육청 연 3회 이상 협의회 개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협의회 개최	횟수/시군	건	3	3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각 시·군 교육청, 지자체, 전문가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발전 방향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경비 지원 방안 논의
- 교육경비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건의사항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요하는 각종 협의회 등이 주관청 또는 사업별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가 중복되는 실정임

2-3-1-1(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충청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김애화
전화번호	041-635-2513	이메일	doghk@korea.kr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지원, 부담경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계속

○ 사 업 비('13) : 6,176백만원(지방비 6,176, 자부담 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규모 : 22,800명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3. 사업비 지원방법

① 도에서 사업비(량)를 도비 부담금 포함하여 시·군에 배정, 시·군은 도비와 시·군의 부담금을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 입학금 입금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800					6,176	0	6,176
천안시	1,500					400		400
공주시	2,200					580		580
보령시	1,630					428		428
아산시	1,600					425		425
서산시	1,550					410		410
논산시	1,850					505		505
계룡시	70					18		18
당진시	1,950					540		540
금산군	1,500					400		400
부여군	2,100					570		570
서천군	1,200					310		310
청양군	700					230		230
홍성군	1,750					480		480
예산군	1,800					525		525
태안군	1,400					355		355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127					4,357	0	4,357
천안시	1,162					272		272
공주시	1,848					358		358
보령시	1,272					277		277
아산시	1,196					270		270
서산시	1,328					296		296
논산시	1,794					376		376
계룡시	56					11		11
당진시	1,484					324		324
금산군	1,330					322		322
부여군	2,262					447		447
서천군	848					218		218
청양군	915					178		178
홍성군	1,736					363		363
예산군	1,630					368		368
태안군	1,266					277		27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계획대비 지원실적	계획/실적	명	22,800	20,127	88

5. 문제점

○ 국가기관, 직장 등에서 학자금 지원받고 있는 학생과 중복 지원 사례 발생

⇨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대상자 확정 철저

2-3-2-2 (계속)	자영수산고생 급식비(충청남도)

담당부서	수산과	담 당 자	유재영
전화번호	041-635-4132	이메일	yoo3924@korea.kr

1. 사업목표

○ 어촌에 정착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인력 양성

○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젊고 우수한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수산계 고등학교 자영수산과 학생에 대한 식비 일부 보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8~계속

○ 사 업 비('13) : 55,000천원 (분권 27,500, 자부담 27,500)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분권교부	자부담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77명	55,000 (100%)	27,500 (50%)	27,500 (50%)	※ 자부담 : 충남도교육청

○ 지원 대상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 급식비 단가
- 기 숙 학생 : 1일/ 3식/ 3,510원/ 1인
- 비기숙 학생 : 1일/ 1식/ 1,170원/ 1인

3.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	기금등			
충남해양 과학고	77			27.5			27.5	5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계획대비 지원실적	계획/실적	명	77	75	97

2-3-2-4	무료통학버스지원학대(충청남도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	담 당 자	임문희
전화번호	041-640-8012	이메일	imh@cnoe.or.kr

1. 사업목표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읍지역 이하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

○ 사업규모 : 관용 127대, 임차 304대

○ 지원조건 : 학구내에 통학여건이 열악하여 학생 등하교가 어려운 학교

○ 추진근거 : 자체계획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083		54,083
'10	339					8,255		8,255
'11	341					9,354		9,354
'12	340					10,853		10,853
'13	431					12,974		12,974
'14	412					12,647		12,647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39					8,255		8,255
'11	341					9,354		9,354
'12	340					10,853		10,853
'13	431					12,974		12,97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연초 계획 물량 대비 연말 추진 물량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연초 계획 물량/연말 추진 물량	%	431	431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교육 여건 개선

12. 전라북도

1-2-2-4(계속)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전북)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담 당 자	안춘원
전화번호	063-280-2447	이메일	ancw@korea.kr

1. 사업목표

○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도모

2. 사업내용

○ 추진기간 : 연중

○ 진행상황 : 계속

○ 전담인력 : 126명

○ 추진실적 : 취약가구 120,081가구 145,200명

○ 예 산 액 : 3,312백만원(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 3순위 : 다문화가정, 빈곤아동 지역아동센터, 미인가시설

·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 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

- 사업규모(사업량) : 120,081가구 145,200명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장애인, 허약노인, 임신·출산여성, 영유아 등 건강관리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 허약노인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 관리

○ 추진기간 : 연중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개 시군				8,028	8,284		16,312
'11	14개 시군				1,546	1,632		3,178
'12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3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4	14개 시군				1,656	1,656		3,312
'15	14개 시군				1,656	1,656		3,312

<시행계획 추진실적>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585	1,585	1,670		3,255
2013				1,585	1,585	1,670		3,255
(증△감)				0	0	0		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방문건강 관리사업	투입 전담인력 수	전담인력 수	명	126	126	100
	방문간호사 대비 집중관리가구수	집중관리가구/방문간호사	가구	20	20	100
	방문인력 대비 방문횟수	방문횟수/방문인력	횟수	1,620	1,62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방문간호사 1인당 20가구 집중관리 및 방문인력 1인당 1,625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타 시도에 비하여 기초수급자 가구 수가 많은데 비하여, 전담인력 수가 부족하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건의사항

- 기간제 전담인력의 무기직 전환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연속성 보장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전라북도)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담 당 자	정용철
전화번호	(063)280-4154	이 메 일	jyc0618@korea.kr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13) : 1,040백만원(지방비 936, 자부담 104)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자격·시설·인력을 갖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규모 : 8개소

-남원지리산, 남원산내,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부안백산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90%(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부정기사업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필수사업) 영유아 보육

- (임의사업) 고충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등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통보 : '13. 12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14. 상반기, 하반기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 '15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대상자 선정 : '14. 10월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결정

○ 여성농업인센터(8개소)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 3~12월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전북도	8					936	104	1,040
남원	2					230	25	255
진안	1					117	13	130
임실	1					117	13	130
순창	1					117	13	130
고창	1					121	14	135
부안	2					234	26	260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전북도	8					936	104	1,040
남원	2					230	25	255
진안	1					117	13	130
임실	1					117	13	130
순창	1					117	13	130
고창	1					121	14	135
부안	2					234	26	26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추진 실적	개소	8	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적 수요 및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 영유아수 감소, 물가 상승 및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센터 운영 사업비가 편중되어 교육 및 문화활동 위축

○ 건의사항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노후화 개보수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

2-1-3-1(계속)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학생배치)	담 당 자	백 승 미
전화번호	239-3590	이메일	smbsm121@jbedu.kr

1. 사업목표

○ 기숙형고교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기숙형고교의 내실화 도모

○ 기숙사 보유 일반고교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및 저소득층 학부모의 기숙사비 경감

2. 사업내용

○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13교, 1,652,640천원

- 대상 : 교육부 선정 기숙형고교 한별고 등 13교
- 내역 : 기본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사감인건비

○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41교, 740,880천원

- 대상 : 기숙형고가 있는 군지역 및 도·농복합도시의 기숙사운영 일반고(안성고 등 41교)
- 내역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기숙사운영비 및 기숙사운영비의 일부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숙형 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60		6,160
'10	8교					619		619
'11	8교					875		875
'12	13교					1,360		1,360
'13	13교					1,653		1,653
'14	13교					1,653		1,65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8교					619		619
'11	8교					875		875
'12	13교					1,360		1,360
'13	13교					1,653		1,653

○ 일반 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64		2,064
'10	-					-		-
'11	-					-		-
'12	40교					582		582
'13	40교					741		741
'14	40교					741		741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					-		-
'11	-					-		-
'12	40교					582		582
'13	41교					741		74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고교 교육만족도	만족도	%	97	98	101

※ 만족도 조사는 기숙사 입사율로 측정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기숙형 고교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만족도 향상
- 지자체 지원 확대로 공부담 공교육비 경감
- 지역학생의 외지 유출 완화 및 우수 인재육성 중심학교로써 역할

○ 미흡한 점

- 기숙사 관리 및 기숙사 전담업무인력의 부재
- 구기숙사와 신기숙사의 시설환경 차이로 인한 갈등
- 기숙형고교 운영은 근무시간 후 학교 행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건의사항

-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기계설비, 전기, 기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요망
-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확충(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인성건강과(평생교육) 교육혁신과(방과후학교)	담 당 자	이태성 박성환
전화번호	063-239-3386 063-239-3337	이메일	ntomas@jbedu.kr basic68@jbedu.kr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문화·정보의 혜택에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 사업주체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 및 농어촌 학교마을 도서관

○ 사업규모 : 40개 기관(평생학습관 7개, 학교도서관 33개),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 운영

○ 지원형태 : 지방비(교육비특별회계) 100%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 및 학교도서관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명,개소)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3					867		867
'10	7					84		84
'11	30					112		112
'12	36					209		209
'13	42					224		224
'14	48					238		238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7					84		84
'11	30					112		112
'12	36					209		209
'13	40					548	103	65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운영 지원 경비	예산지원액	%	140	145	103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경비	예산지원액	%	84	506	6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지역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시, 되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분위 조성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인, 다문화 가정 등 농어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네이버문화재단의 지원방침(도서지원, 독서프로그램지원 등) 철회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건의사항

- 학교마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상 지속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함

2-1-6-1(계속)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정책공보담당관	담 당 자	오세현 주무관
전화번호	063-239-3652	이메일	shoh53@jbedu.kr

1. 사업목표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교육청

○ 사업규모 :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추진내용

- 교육시설 확충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추진근거 :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개최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0개소	비	예	산	사	업		
'11	0개소			〃				
'12	1개소			〃				
'13	1개소			〃				
'14	1개소			〃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0개소	비	예	산	사	업		
'12	1개소			〃				
'13	1개소			〃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 교육청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실적 : 교육청 연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각 지역교육청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여부	%	2	1	5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의 교육발전 방향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경비 지원방안 논의

○ 건의사항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요하는 각종 협의회 등이 주관청 또는 사업별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가 중복되는 실정임
- 법령 및 조례 등의 일제 정비를 통해 협의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3-1-1(계속)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담 당 자	주무관 전소현
전화번호	063-280-4154	이메일	mylife2005@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으로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127,771백만원)

○ 사업규모 : ('13) 4,945명 / 5,324백만원(도비 1,331, 시군비 3,993)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25% 시군비 75%[분권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8,364					8,649		8,649
'11	6,709					7,150		7,150
'12	5,504					6,054		6,054
'13	4,945					5,324		5,324
'14	4,902					5,392		5,39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8,364					8,649		8,649
'11	6,709					7,150		7,150
'12	5,504					6,054		6,054
'13	4,945					5,324		5,32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추진실적 : 도내 14개시군 4,945명에 5,324백만원 지원(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 도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지원학생수	(학자금지원학생수/예산계획서상 지원학생수)×100	명	4,945	4,945	100

5. 자체평가

○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2-3-2-2(계속)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담 당 자	주무관 전소현
전화번호	063-280-4154	이메일	mylife2005@korea.kr

1. 사업목표

○ 미래 농업 인력인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의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농업인 후계세대의 육성 및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3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3,834백만원)

○ 사업규모 : ('13) 419명 / 281백만원(도비 141, 교육청 140)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50% 교육청 50%

○ 사업시행주체 : 교육청

○ 추진근거 : 대통령지시사항/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351					147.9	147.9	295.8
'11	409					153.6	153.6	307.2
'12	418					136.4	136.4	272.8
'13	419					141	140	281
'14	429					180	180	36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51					147.9	147.9	295.8
'11	409					153.6	153.6	307.2
'12	418					136.4	136.4	272.8
'13	431					141	140	28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 도내 1개 학교 431명(기숙 163명, 비기숙 301명) 281백만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학생수	(급식비지원학생수/예산계획서상 지원학생수)×100	명	419	431	102.8

5. 자체평가

○ 도내 1개학교 431명(합숙 163, 비합숙 301)농업계 고등학생의 연간 200일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

2-3-2-4(계속)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 당 자	최성룡
전화번호	063-239-3596	이메일	jlovecsy@jbedu.kr

1. 사업목표

○ 교통소외지역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통학안전 보장

○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통학 부담해소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의한 통·폐합학교, 통학여건이 불편한 농어촌 및 도시 농촌동 공립 유·초·중
- 사업규모(사업량)

· 통학버스 : 303교, 399대(직영 215대, 전세 184대) 지원

· 통학택시 : 38교, 51대 지원

· 하 숙 비 ; 39명 지원(도서 지역)

- 지원내용 : 통학차량 교체비 18대 및 직영버스 운영비 215대, 전세버스 임차료 184대, 안전도우미 인건비 210명, 통학택시비 51대, 하숙비 39명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통학버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7,551		57,551
'10	315대					9,700		9,700
'11	317대					8,800		8,800
'12	346대					10,400		10,400
'13	393대					13,168		13,168
'14	423대					15,483		15,48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통학버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315대					9,830		9,830
'11	320대					9,131		9,131
'12	346대					10,962		10,962
'13	399대					13,420		13,420

4. 성과목표 달성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생통학지원	농어촌 무료통학지원	예산확보액		13,168	13,420	102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경제, 문화, 의료,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무료 통학지원 및 교육활동(현장학습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지역 교육활성화에 기여
- 통학로가 협소하여 버스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통학 택시 지원으로 통학불편 해소

○ 미흡한 점

- 통학여건이 불편한 읍·면·도시 농촌동 지역의 학교 통학버스 지원확대가 필요하나, 교육재정 부족으로 통학버스 증차 한계

○ 건의사항

-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무료 통학버스 지원 유지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에 따라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필요

7-1-2(계속)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전라북도)

담당부서	농식품인력개발원	담 당 자	황 현 정
전화번호	063-290-6402	이메일	hjung33@korea.kr

1. 사업목표

○ 농업·농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농장 및 기타 각종 체험·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모색

○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기본 이해 및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안내

2. 사업내용

○ 교육대상 : 도내 농업인 및 도시민

○ 교육인원 : 60명

○ 교육내용 : 교육체험농장에 대한 이해 및 농작물에 대한 기본 교육

○ 예 산 액 : 3,255백만원(기금 49%, 지방비 51%)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농업인들에게 6차 산업의 활성화를 계기로 체험교육농장의 필요성 및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마련
- 농한기를 이용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농가 및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추진기간 : 연중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명					3.4		
'11	20					0.2		
'12	20					0.2		
'13	60					1		
'14	60					1		
'15	60					1		

<시행계획 추진실적>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		1
2013						1		1
(증△감)						0		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교육체험농장	교육수료 실적	명	20	20	100
	도시농업활성화			40	4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도내 농업인에게는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전략 교육 실시
- 도시민에게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 마련

13. 전라남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보건한방과	담 당 자	김경화
전화번호	286-6054	이메일	eco34567@korea.kr

1. 사업목표

○ 방문전담 인력이 투입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체 관리능력 향상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헬기 운영으로 농어업인 등의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출동처치 및 이송을 통한 환자 생명 보호

2. 사업내용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20%

○ 사업범위 : 22개 시군

- 만성질환, 재가 암환자 등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 사업내용 : 방문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교육·상담 등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 추진체계

- 대상자의 건강문제,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방문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방문전담인력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대상자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도 향상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집중관리군 적정관리 가구수를 유지하여 서비스 질 및 등록관리율 향상

【무의도서 순회진료】

○ 사업대상 : 도내 무의도서주민

○ 사업범위 : 11개 시군 184개 도서 15,310명

○ 서비스내용 : 진료(일반, 한방, 치과),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초음파, 심전도 등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훈령 제4조(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규정), 전라남도병원선운영조례

○ 추진체계

- 매년도 말 병원선 순회진료 계획 수립하고 홈페이지 고시
- 매월 병원선 출항 전 세부 진료계획을 수립, 사전에 마을 이장 등에게 일정 통보하여 섬 주민이 진료당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병원선 접안이 불가한 도서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병원선 보트를 이용하여 의료진이 직접 방문 진료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운항지역 : 배치의료기관(목포한국병원) 반경 100km이내

○ 운항대수 : 1대

○ 운영방법 : 항공의료사업단에 위탁 운영(대한항공)

○ 지원금액 : 30억원(기금 70%, 도비 30%)

○ 지원내용 : 응급환자 발생하면 헬기 요청자(의사, 간호사, 119구급대 등)가 의료기관에 헬기 요청,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여 헬기 출동

3. 연차별 추진계획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추진내용 : 생애주기별 질활관리, 만성질환관리, 합병증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1월 ~ 12월

○ 사 업 비 : 25,400백만원(기금 12,700 시군비 12,700)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700	12,700		25,400
'10	22				2,300	2,300		4,600
'11	22				2,400	2,400		4,800
'12	22				2,500	2,500		5,000
'13	22				2,700	2,700		5,400
'14	22				2,800	2,800		5,6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2				2,300	2,300		4,600
'11	22				2,400	2,400		4,800
'12	22				2,500	2,500		5,000
'13	22				2,700	2,700		5,400

【무의도서 순회진료】

○ 추진내용 : 병원선 무료 진료(의과, 한방, 치과), 임상병리검사 흉부엑스선촬영, 초음파, 심전도 등

○ 추진일정 : 분기별 순회진료

○ 사 업 비 : 11,676백만원('10~'14년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676		11,676
'10	2척					2,446		2,446
'11	2척					2,308		2,308
'12	2척					2,257		2,257
'13	2척					2,345		2,345
'14	2척					2,320		2,32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척					2,476		
'11	2척					2,408		
'12	2척					2,257		
'13	2척	473				1,974		

※ 2013년부터 시설비(선박수리비) 중 2/3 국비(농특) 보조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사업개시 : '11. 9. ~ 계속

○ 지원금액 : 30억원(기금 70%, 도비 30%)

○ 지원내용 : 취약지역 응급환자 현장 처치 및 신속 후송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대				7,350	3,150		10,500
'11	1대				1,050	450		1,500
'12	1대				2,100	900		3,000
'13	1대				2,100	900		3,000
'14	1대				2,100	900		3,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1대				1,050	450		1,500
'12	1대				2,100	900		3,000
'13	1대				2,100	900		3,00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가구 적정등록관리율	보건소통합정보 시스템 통계자료	%	50	51	102
※산출기초= { 등록관리가구/(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 건강보험하위 20% 가구수) } ×100						
무의도서 순회진료	도서지역의료 서비스 제공율	(실적/목표) ×100	%	97	135	139
※목표 진료 인원: 15,310명, 진료 실적 인원: 21,532명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환자이송 실적	(실적/목표) ×100	%	100	94	94
※'13년도 출동실적 203건(임무완수 190건, 중단 13건), 이송률 947% ※ 중단사유: 헬기 출동 중 환자의 사망 및 기상 악화 등에 의한 회항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거동불편한 노약자는 직접 병원선 의료팀이 방문 진료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섬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보장

- 응급의료 장비 장착 및 의료진 탑승한 응급헬기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환자의 생존율 향상

○ 미흡한 점

- 미인가 시설 및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노인 여성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부족

- 최근 잦은 해양기상악화로 진료일정 변경이 많아 만성질환자의 적정관리시기 미흡

- 응급헬기 인계점 미지정 지역에 대한 환자이송 불가능

○ 건의사항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전담인력 충원

- 대상자 발굴은 시군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선정관리토록 개선 필요

- 섬 주민 순회진료 소요예산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형편상 병원선 지속적 운영에 따른 병원선 운행 유류비 국비지원 요청

- 동부권(여수,순천,광양)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한 응급헬기 배치 운영

- 섬지역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헬기착륙장 신설 및 인계점 확대

1-3-3-7(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문연안
전화번호	286-6244	이메일	moonya00@korea.kr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13) : 520백만원(지방비 442, 자부담 78)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4개소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70%(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부정기 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14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42	78	520
나주	1					110.5	**19.5**	**130**
고흥	1					110.5	**19.5**	**130**
무안	1					110.5	**19.5**	**130**
장성	1					110.5	**19.5**	**130**

4. 추진실적

<'13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42	78	520
나주	1					110.5	**19.5**	**130**
고흥	1					110.5	**19.5**	**130**
무안	1					110.5	**19.5**	**130**
장성	1					110.5	**19.5**	**130**

5.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고충상담, 보육, 방과후 학습,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등 센터별 프로그램운영으로 목표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 프로그램 수 및 이용인원	명	4개분야 28천명	4개분야 28천명	100.0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전라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과	담 당 자	장학사 박성욱
전화번호	061-260-0314	이메일	propsw@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실질적 교육력 제고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0개군, 기숙형고교

○ 사업규모 : 23교, 4,433명, 총 2,350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기숙사 운영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

○ 지원조건 : 기숙사 정원×10개월×3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숙사정원 10%) 기숙사비(식비포함) 전액지원: 170천원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및 급식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교특)	기금등			
합계								
'10	23교			2,283			0	2,283
'11	23교			997			0	997
'12	23교			801			28	829
'13	23교						2,350	2,350
'14	23교						3,062	3,06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3교			2,283			0	2,283
'11	23교			997			0	997
'12	23교			801			28	829
'13	23교						2,350	2,35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23교(1인당 30만원, 4,430명) / 23교(1인당 30만원, 4,430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률	%	23교	23교	100
	1인당 지원금액	계획 대비 실적	%	30만원	30만원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기숙형고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기숙사비 부감 경감
- 토·일요일 및 방학중 기숙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 미흡한 점

- 지자체의 기숙사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제정 부족
- 사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 한계로 기숙사 입사생들의 자기부담률 경감을 위한 유치 병행 부족
- 학습 프로그램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전남교육청 행정과

담당부서	행정과(평생교육팀)	담 당 자	조 정 희
전화번호	061-260-0877	이메일	iamjunghee@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주체 : 전라남도교육청

○ 사업주관 : 전라남도평생학습관 21관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제28조의2, 평생교육법 21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762	3,525	4,287
'10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4	705	859
'11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4	705	859
'12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4	705	859
'13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0	705	855
'14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0	705	85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4	705	859
'11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4	705	859
'12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4	705	859
'13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21관)					150	705	855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 100% 달성

○ 21관, 340개 강좌, 79,408명 참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율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관수/ 전체평생학습관수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21개 평생교육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무학력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맞춤형 서비스 운영으로 소외계층 역량강화

○ 미흡한 점

- 농한기, 농번기등 농촌지역의 환경적 여건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변동

○ 건의사항

- 평생학습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필요

2-1-6-1(계속)	시·군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담당부서	정책기획관(교육청)	담 당 자	박윤경
전화번호	061-260-0296	이메일	yun7210@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미래의 교육시책 수립 및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1.1.~2013.12.31. (1년간)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미래위원회 (22청별)

○ 추진근거 : 전라남도교육미래위원회 규칙 제14조

○ 사업비(2013) : 자부담 65,953천원

○ 사업내용 :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 위원회 주요 기능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함】

-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교육 발전 방안과 미래의 교육시책 수립
- 교육지원청 수준 교육개혁 과제의 실천방안 수립
- 그 밖에 교육시책 등에 관하여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연차별 추진실적

○ 2010년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규정 정비 (22개청)
- 교육미래위원회 제1기 위원 구성 (22개청, 1청별 20명 이내)
- 교육미래위원회 연찬회 실시 (2개청-순천, 해남)

○ 2011년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22개청, 청별 연간 2~4회)
- 교육미래위원회 연찬회 실시 (1개청-순천)

○ 2012년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22개청, 청별 연간 2~5회)
- 교육미래위원회 제2기 위원 구성 (22개청, 1청별 20명 이내)
- 교육미래위원회 연합 연찬회 실시 (도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 2013년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22개청, 청별 연간 2~5회)
- 교육미래위원회 연합 연찬회 실시 (도교육청 및 22개 교육교육청)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청						3.98	3.98
'10	22청						0.09	0.09
'11	22청						0.89	0.89
'12	22청						1.37	1.37
'13	22청						0.83	0.83
'14	22청						0.80	0.8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청						2.61	2.61
'10	22청						0.08	0.08
'11	22청						0.75	0.75
'12	22청						1.13	1.13
'13	22청						0.65	0.6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율	(회의개최수 /교육청수)*100	%	44회	49회	111
	교육미래위원회 구성률	(위원회구성 교육청수 /지역교육청수)*100	%	22청	22청	100

5. 자체평가

○ 각계 각층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구성

-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

○ 교육미래위원회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합 교육미래위원회 연찬회 실시

○ 관주도가 아닌 자발적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문제 주도적 해결

2-3-1-1(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전라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도)	담 당 자	신양효
전화번호	061-286-6226	이메일	syh222@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1년간)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추진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

○ 사업비(2013) : 11,400백만원

○ 사업내용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전액)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 농외소득기준 및 영농규모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면제)받는 경우
  예)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원자녀, 특성화고 재학생 등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받는 경우
- 농어업 이외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

3. 연차별 추진실적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천원)

	사업규모 (명)	도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22개시군	13,735,543	48,698,740		62,434,283
'10	13,256	2,556,017	9,222,232		11,778,249
'11	14,105	3,064,164	10,863,853		13,928,017
'12	14,105	3,064,164	10,863,853		13,928,017
'13	12,000	2,508,000	8,892,000		11,400,000
'14	12,000	2,508,000	8,892,000		11,400,00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천원)

	사업규모 (명)	도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22개시군	21,766,146	77,170,882		98,937,028
'10	12,733	2,459,944	8,826,480		11,316,445
'11	11,862	2,246,924	7,966,538		10,213,462
'12	10,716	1,873,080	6,640,920		8,514,000
'13	6,657	1,420,943	5,037,895		6,458,83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고교생 학자금지원	수업료또는 입학금	농외소득기준 및 영농규모조건을 만족한 농업인자녀	명	12000	6657	80

※ 학자금 지원 감액 사유

교육청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지원 제외로 도비 1,087백만원 감액

5. 자체평가

○ 2010년 감사원 감사시, 농외소득 및 영농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농업인 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기준 신설 (2012년)

- 일정조건(농외소득,영농규모)이상의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3-2-2(계속)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전라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도)	담 당 자	신양효
전화번호	061-286-6226	이메일	syh222@korea.kr

1. 사업목표

○ 영세농업인의 학비부담 경감과 과학적인 농업을 영위하는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젊고 우수한 농압 전문 인력 확보와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1년간)

○ 사업주체 : 전라남도교육감

○ 추진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84.11. 3)

○ 사 업 비 : 206,610천원

○ 사업내용 :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급식비 자기부담 포함 1식당 2,500원 지원(자부당 500원 포함)

○ 지원대상 :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생

- 우리도 :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구. 강진농고)

○ 지원절차

-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도 교육청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도 교육청에서 전남도에 사업비 신청
- 도비 지원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정(교육청: 시업추진상황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3. 연차별 추진실적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천원)

	사업규모 (명)	도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1,735	753,181	634,541	118,640	1,506,362
‘10	420	170,893	170,893		341,786
‘11	436	174,174	174,174		348,348
‘12	447	193,294	115,976	77,318	386,588
‘13	213	103,305	61,983	41,322	206,610
‘14	219	111,515	111,515		223,030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천원)

	사업규모 (명)	도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1,216	552,282	317,949	90,282	960,513
‘10	402	170,893	83,667		254,560
‘11	272	156,558	99,383		255,941
‘12	374	148,650	89,190	59,464	297,304
‘13	168	76,181	45,709	30,818	152,708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기숙사생 급식	1식당2500원 3식	명	213	168	27

5. 자체평가

○ 집단생활과 통제된 기숙사 생활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기피로 인한 기숙사생 감소

○ 3학년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한 급식학생수 및 급식 일수 감소

2-3-2-5(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총무과(교육청)	담 당 자	우범석
전화번호	061-260-0693	이메일	umum111@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학생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를 위한 통학차량 교체 및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2. 사업내용

○ 최단운행 기준연한(7~8년)을 경과하고 최단거리 12만km 이상 차량을 교체하며, 통학버스 운영학교 중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신청학교 전체에 대해 지원

○ 추진근거 :「전라남도립학교 차량관리 운영규정」및「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943		16,943
'10	27대, 207명					2,333		2,333
'11	49대, 250명					4,273		4,273
'12	51대, 270명					4,317		4,317
'13	49대, 300명					4,355		4,355
'14	8대, 320명					1,665		1,665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0	27대, 207명					2,333		2,333
'11	48대, 303명					4,633		4,633
'12	45대, 297명					4,212		4,212
'13	19대, 305명					2,915		2,91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노후 차량 교체 : 목표 49대 → 실적 19대

※ 교체 기준 변경 : (2012년 계획 수립 당시) 최단운행 기준연한 (내용연수 초과) 및 해수침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 → (변경) 최단운행 기준연한(7~8년)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최단 주행거리 12만km로 이상 차량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상 차량 감소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목표 300명 → 실적 305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노후차량 교체	교체 실적	대	49	19	38.7
	통학버스안전 도우미 지원	지원 실적	명	300	305	101.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노후차량 교체 및 안전도우미 지원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정화 도모

○ 건의사항

-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전체 학생에 대한 무료 통학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필요

14. 경상북도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상북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승권, 손승민
전화번호	053)950-2416 053-950-2966	이메일	psk999@korea.kr sonwind79@korea.kr

1. 사업목표

○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오·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및 행복경북 구현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취야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2. 사업내용

○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 등
- 지원내용 : 검진차량 이용 이동 무료검진
  · 주요장비 : 검진차량 3, 승합차 3, 의료장비 15종, 비품 등 6종
  · 검진항목 : 기초검진, 초음파, X-선촬영, 골밀도·심전도·이화학적 검사 등
- 지원조건 : 오벽지 및 의료취약계층
- 사 업 비 : 360백만원(도비 100%)
- 운영방법 : 3개 지방의료원에서 권역별로 주 2회 운영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방문건강관리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센터) 등의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 사 업 비 : 5,4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23개 시·군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209명 방문건강관리사
- 추진내용 : 건강문제 기초조사(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방문요구도조사), 결과에 따른 생애주기별, 질환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 오벽지를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취약계층 건강관리에서 일반주민으로의 건강관리 범위 확대

○ 보건소내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

○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국비			
합계						2,726		2,726
'10								
'11								
'12	3개소					2,366		2,366
'13	3개소					360		360

○ 방문건강관리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방문횟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40,000				10,095	10,095		20,190
'10	470,000				2,401	2,401		4,802
'11	480,000				2,408	2,408		4,816
'12	490,000				2,571	2,571		5,142
'13	500,000				2,715	2,715		5,430

<시행계획 추진실적>

○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3개소/ 8,896명	-	-	-	-	360	-	360

○ 방문건강관리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500,000				2,715	2,715		5,430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실적 (진료인원)	계획 대비 실적	%	3,700	8,896	240
방문건강관리	방문서비스 횟수	계획대비 실적	%	500,000	496,504	99.3%

※ 찾아가는 행복병원 추진실적 증가 사유

- 혹서기와 혹한기는 차량 운영 및 검진대상자 건강상 문제 등으로 행복병원 운영을 제한하였으나 검진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 의료원별 자율적 판단 운영토록 하여 실적이 증가

5. 자체평가

○ 잘된 점

- 의료혜택이 적은 오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사후관리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이용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미흡한 점

- 의료원내 행복병원 운영 전담인력 부재로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미흡

· 전담인력 배치 및 의료원과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로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피드백시스템 구축 필요

○ 건의사항

- 찾아가는 행복병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운영 예산 국비 지원 요청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상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윤수정
전화번호	053-950-3708	이메일	ysjid@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 및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2개소(안동시, 영양군)

○ 사 업 비 : 226백만원(도비 34, 시군비 158, 기타 34)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70%, 기타 15%

○ 지원기준 : 개소당 113백만원

○ 사업내용 :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문화 및 교육활동지원 등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768	136	904
'11	2					192	34	226
'12	2					192	34	226
'13	2					192	34	226
'14	2					192	34	22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1	2					192	34	226
'12	2					192	34	226
'13	2					192	34	22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지원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	85	97	114
	여성농업인센터수 (개소수)	센터운영수	개	2	2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20-30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한 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문화·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연령이 고루 이용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 영유아수 감소, 물가 상승 및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센터 운영 사업비가 증가되어 교육 및 문화활동 위축이 우려됨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경상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김형만
전화번호	053-603-3703	이메일	khm5305@gyo6.net

1. 사업목표

○ 농어촌, 도농복합도시 교육낙후지역에 기숙형 고교를 지정, 기숙사 시설여건 개선과 특화된 학교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자율성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추진근거

- 국정과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2008년)

※ 제17대 MB정부 교육부문 공약 사항

2. 사업내용

2013. 기숙사 운영학교 총 지원금(공립22, 사립3) : 4,956백만원

○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기숙사 운영비 : 11억7,837만원(교당 평균 4,713만원)

※ 기숙사 운영비에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 지원비 1억7,050만원 포함됨

- 2013년 자치단체 총 대응투자액: 14개 자치단체, 12억5,080만원 지원

○ **기숙형고 프로그램비 지원**

- 총 25개교, 7억4,000만원 지원(정원기준 차등 지원: 교당2,600만원~3,200만원)

○ **기숙사 비품구입비 지원**

- 기숙사 비품구입비 : 11억8,800만원(교당 평균 4,752만원)

○ **기숙사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 기숙사 시설유지보수비 : 18억5,000만원(교당 평균 7,400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 : 기숙사 증개축비 29,782백만원, 기숙사 운영비 859백만원, 기숙사비품구입비 2,130백만원

○ ‘10년 : 기숙사 증개축비 40,298백만원, 기숙사 비품구입비 1,880백만원, 저소득자녀 기숙사지원비 117백만원, 교육프로그램운영비 130백만원

○ ‘11년 : 교육프로그램운영비 724백만원, 기숙사 운영비 822백만원, 저소득자녀 기숙사지원비 175백만원

○ ‘12년 : 교육프로그램운영비 740백만원, 연구학교운영비 27백만원

기숙사운영비 1,030백만원, 저소득자녀 기숙사지원비 152백만원

○ ‘13년 : 기숙사 운영비 1,178백만원, 기숙사비품구입비 1,188백만원, 기숙사시설유지보수비 1,850백만원, 교육프로그램운영비 740백만원

○ ‘14년 : 기숙사 운영비 1,108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4,930		84,930
‘09	25개교					32,771		32,771
‘10	25개교					42,425		42,425
‘11	25개교					1,721		1,721
‘12	25개교					1,949		1,949
‘13	25개교					4,956		4,956
‘14	25개교					1,108		1,108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25교					4,956		4,956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전년대비 금년도 기숙형고교 기숙사 학생 충원율 : 139%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 지정 · 육성	기숙사 학생 충원율	(금년도기숙사학생충원율/전년도기숙사학생충원율)*100	%	71	98.5	13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 노후화되는 기숙사 시설 수선비의 별도 지원이 요구됨
-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경상북도)

담당부서	인재양성과	담 당 자	김영란, 유경진
전화번호	053-950-3705 053-950-3717	이메일	dudfks@korea.kr ykj0810@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실현

○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실시

○ 사업주체 :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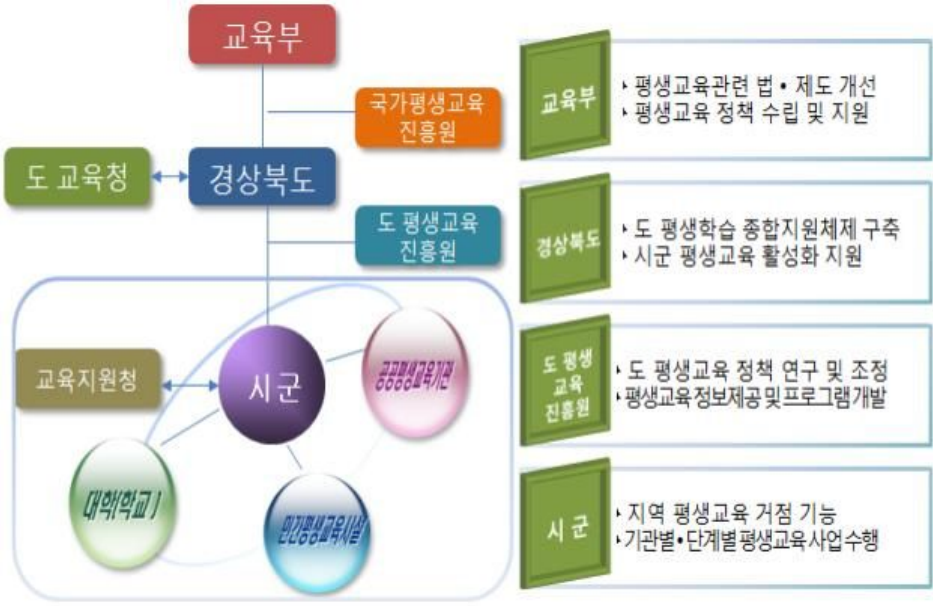

○ 추진내용

- 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 운영(300백만원)
  · 2013. 6월 경북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 22개 시군 순회(25회/8,380명), 지역 요구 수렴 맞춤형 교육 운영
- 지역인재육성 사업(200백만원)
  ·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150백만원)
  · 시군 성인대상 기초한글교육 지원
-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128백만원)
  · 시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교육 지원
- 평생학습마을 지정사업(240백만원)
  · 시군 문화소외 읍면동 맞춤형 교육 지원, 12개 읍면동 지원
-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학지도 교육(40백만원)
  · 농어촌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진로교육, 2회 운영
-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380백만원)
  · 2013. 9. 27 ~ 29, 구미시 일원, 도 내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참여
-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운영(32백만원)
  · 자율적인 마을평생교육사업 지원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평생교육법 제12조 근거 운영
- 평생교육 포럼 운영
  · 평생교육전문가 23명 구성, 2회
- 평생교육기관 · 단체 워크숍
  · 평생교육 관계자 역강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347		6,347
'10	23개 시군					877		877
'11	23개 시군					1,158		1,158
'12	23개 시군					1,215		1,215
'13	23개 시군					1,631		1,631
'14	23개 시군					1,466		1,466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3개 시군					789		789
'11	23개 시군					1,150		1,150
'12	23개 시군					1,186		1,186
'13	23개 시군					1,651		1,651

- '13년 경북평생교육진흥원 개원·지정 후 사업 운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인문해교육 150백만원, 12개 시군 운영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24회 22개 시군, 8,380명 참여
- 평생학습마을 12개읍면동 지정, 240백만원 지원
-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7개 시군, 138백만원 지원
- 지역인재육성사업 11개 사업, 261백만원 지원
- 경북평생교육진흥원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활용사업 9개 시군, 140백만원
- 경북평생교육진흥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175백만원

※ 목표 미달 및 초과달성 사유

- 도-시군 네트워크 사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 및 탄력적 운영
-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지정·개원에 따른 추가 사업 진행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백만원	160	150	93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참여 인원	명	5,400	8,380	155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	사업비	백만원	260	240	92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사업비	백만원	140	278	198
	지역인재육성사업	사업비	백만원	200	436	21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중앙-광역-시군-민간기관 및 단체에 이르는 평생교육 기반 마련
- 23개 시군의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강화
- 경북평생교육진흥원의 개원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경북형 평생교육 개발 및 총괄지원 체제 구축
- 광역 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 평생학습문화 확산
- 23개 시군 및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의 지속적 지원으로 질 높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 전국 최초의 마을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으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및 교육 소외 극복, 학습공동체 구현

○ 건의사항

- 시도별 평생교육이 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비교가능한 기준 및 성과지표 개발 제시 필요

2-1-6-1(계속)	시군교육발전협의회 설치(경상북도교육청)

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	담 당 자	김현욱
전화번호	053-603-3677	이메일	khw0212@korea.kr

1. 사업목표

○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74백만원

○ 사업주체 : 본청 및 23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운영 : 연 1회

○ 시・군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운영 : 연 1회

4. 성과목표 달성도

○ 시・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23개 시・군, 23회)

○ 시・군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예산 지원(23개청, 74백만원)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2-3-1-1(신규)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경상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황 경 욱
전화번호	053-950-2613	이 메 일	dreamh1124@korea.kr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 시·군·구 : 농정업무 총괄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등

·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사업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4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적용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 **학교장**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사업대상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은 제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의 범위 : 2013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제출시 지원가능

○ 추진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79%

○ 사 업 비 : 10,384백만원(도비 2,181, 시군비 8,203)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273					46,951		46,951
'10	10,187					9,576		9,576
'11	10,210					9,002		9,002
'12	9,600					10,177		10,177
'13	11,000					10,384		10,384
'14	8,276					7,812		7,81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8,500					8,870		8,870
'11	8,200					8,540		8,540
'12	7,500					7,620		7,620
'13	7,012					6,619		6,61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교육비경감) 만족도 조사	면접조사	%	80	85	106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시켜줌

○ 미흡한 점

-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수혜대상 학생수 지속적 감소

2-3-2-2(신규)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경상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황 경 욱
전화번호	053-950-2613	이 메 일	dreamh1124@korea.kr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후계자를 육성하여 우수한 농업전문 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 자영수산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어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우수한 어업 전문인력의 어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경상북도(도 교육청)

- 도 : 보조금을 교육청에 교부, 사업추진상황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 도 교육청 : 교육청 분담금을 확보하여 학교 배정, 사업추진상황 감독 및 사업결과를 정산하여 도에 제출
- 학교 : 자체부담금 확보, 사업비 집행 및 교육청 정산 보고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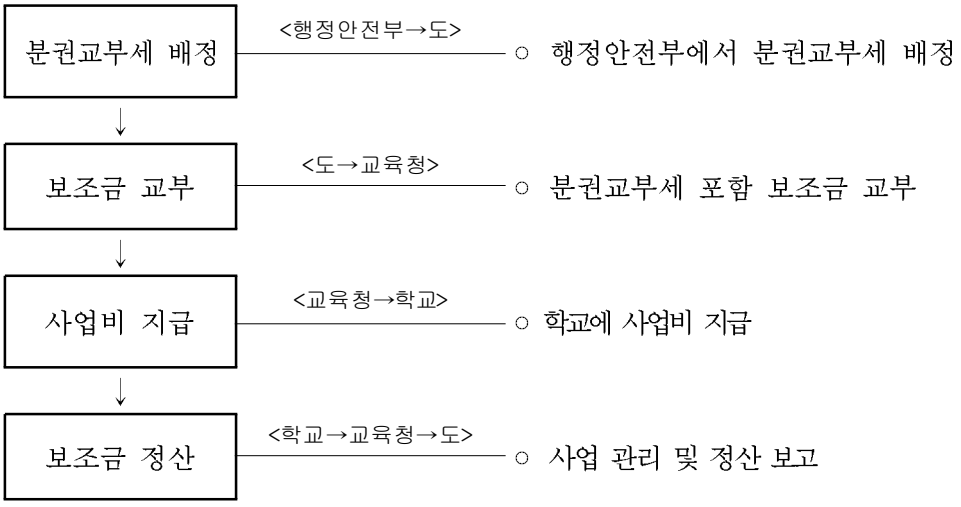

○ 추진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내용

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재학생(안동시 하이마로 385번지)
- 지원내용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의 80% 수준 지원
  * 자영농과생 : 식량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3개학년
- 지원단가 : 기숙사 입사생(4,200원/1일), 비입사생(1,400원/1일)
- 지원일수 : 연간 230일 범위내

나.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
- 사 업 량 : 90명
- 지원일수 : 연간 254일
- 지원내용 : 자영수산과 재학생 급식비의 50%지원
  · 학생 : 3,500원 × 90명 × 254일 = 80백만원
- 지원비율 : 교육청 38%, 도비 12%, 자담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자영농과생급식비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도비 50%, 도 교육청 30%, 자부담 20%
- 사 업 비 : 217백만원(도비 109, 교육청 65, 기타 43)

○ 자영수산과급식비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재원비율 : 분권교부세 38%, 도비 12%, 자담 50%
- 사 업 비 : 80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45					642	249	891
'12	315					214	83	297
'13	315					214	83	297
'14	315					214	83	297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2	315					214	83	297
'13	315					214	83	29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자영농과생 농촌지역 정 착률	정착학생수/졸업학생수*100	%	20	21	105%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지원인원수	계획대비 실적	명	90	9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자영농수산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
- 급식비지원으로 차세대 핵심농어업인 후계 세대 육성함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경상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김형만
전화번호	053-603-3703	이메일	khm5305@gyo6.net

1. 사업목표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 교외활동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7,729백만원

○ 사업규모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253개교) : 2,593,400천원
-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26개교) : 1,098,177천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5개교, 6대) : 475,380천원
- 공립병설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453개원) : 9,407,000천원
-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409명) : 4,056,677천원
- 기간제 운전원 인건비 지원(5명) : 98,040천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통학버스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37					73,376		73,376
'13	724					17,729		17,729
'14	671					18,549		18,549
'15	671					18,549		18,549
'16	671					18,549		18,54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724					17,729		17,72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율 :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율	지원학교/신청 학교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기여(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미흡한 점

- 노후화된 직영차량 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필요

15. 경상남도

1-2-2-4(계속)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강화(경상남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담 당 자	노 혜 영
전화번호	211-6833	이메일	rhy1222@korea.kr

1. 사업목표

○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출산장려 실현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모자보건법 제3조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계속사업)

○ 사업대상 : 5개군(다문화가족 포함)

○ 대상인원 : 1,100명 정도(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및 가임여성)

○ 대상지역 :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 주요 사업내용

- 산전 진찰 : 임신부 대상 표준 산전 의료서비스(1인 총 13회차)
  · 태아초음파, 의사상담, 임신초기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 태아기형아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 진단)
  · 임신성당뇨선별검사, 임신말기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 가임여성 임신전 건강검진
  · 빈혈, 풍진, 간염, 에이즈, 갑상선, 매독, 당뇨, 간기능, 신장기능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 자궁난소초음파, 자궁난소암 종양표지자검사

○ 추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 이동 산전 진찰반 구성 운영 : 5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 소요예산 : 480백만원(도비 10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412 명(6 개군지역)					1,998	-	1,998
'10	3,019 명(6 개군지역)					358	-	358
'11	2,583 명(6 개군지역)					400	-	400
'12	2,500 명(6 개군지역)					400	-	400
'13	2,200 명(5 개군지역)					480	-	480
'14	2,200 명(5 개군지역)					360	-	360

(※ 진료인원은 연인원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2,200 (5개군자역)	-	-	-	-	480	-	48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대상지역 1개소 감소로 목표대비 연 200명 목표 미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연간 진료실적	진료인원	%	2,400명	2,200명	91.7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의료사각지대의 임신부들을 위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획기적 사업 평가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에 대한 양질의 산전·산후 체계적 관리
- 찾아가는 이동 진료로 임신부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등 해소
- 특히, 농어촌지역의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신부 관리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 및 한국사회 조기 정착 유도
-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의 가임여성을 위한 임신전 건강검진 확대 실시로 질병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 함으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 기대
- 노후된 초음파 기기를 최첨단 고해상도 입체 초음파기기로 교체 진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임산부 만족도 증가

1-2-2-4(계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상남도)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 당 자	강 지 숙
전화번호	211-4992	이메일	jskang63@korea.kr

1. 사업목표

○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순회진료

- 도서별 월 1회 순회 진료 실시(진료계획인원 연 120천명)

○ 추진근거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호)
-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2. 사업내용

○ 진료기간 : 2013. 1월 ~ 12월

○ 진료대상 : 7개시·군 49개마을(주민수 2,849명)

○ 진료방법

- 도서별 월 1회 순회진료 실시
- 진료부분 : 일반진료(내·외과 등), 치과, 한방과, 보건교육, 상담
- 가정방문 진료 : 거동불편 및 노약자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질환자 지속관리(매월 30일분 투약 및 관찰)
- 진 료 비 : 전액무료

○ 진료계획 : 연 120천명

○ 소요예산 : 731백만원(국비 127, 도비 604)

- 의약품 구입비 70백만원, 검사비 222, 운영비 등 439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경상남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4,703					3,667	-	3,941
'10	131,103(50 개도서)					564	-	564
'11	133,600(50 개도서)					641	-	641
'12	125,000(49 개도서)					664	-	664
'13	120,000(41 개도서)	127				604	-	731
'14	115,000(41 개도서)	67				574	-	641
'15	115,000(41 개도서)	80				620		700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117,476 (41개도서)	127	-	-	-	604	-	73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매년 도서지역의 주민수 자연 감소에 따른 진료인원 축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병원선 순회진료	연간 진료실적	진료인원	%	120천명	118천명	97.9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고혈압 환자(연 86,761명), 당뇨환자(연 6,491명)에게 매월 30일분 투약처방으로 지속적 관찰 관리 실시
- 거동불편 노약자(연 5,114명)에 대한 직접 방문진료 실시

○ 미흡한 점

- 남해안 대부분의 도서가 수심이 얕아 병원선(162톤)의 접안이 어려워 보조정을 이용 병원선에 이송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병원선 내원 진료 불편

  ⇒ 방문진료 확대 및 마을회관 등 활용 진료 강화

○ 건의사항 : 없음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김현숙
전화번호	055-211-3625	이메일	hs2879@korea.kr

1. 사업목표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 및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농촌 건설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조례 제13조

2. 사업내용

○ 사 업 량 : 7개소(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거창, 합천)

○ 사 업 비 : 870백만원(도비 130.5/15%, 시군비 652.5/75%, 자부담 87/10%)

- 개소 당 130백만원(고성은 보육사업 미추진으로 9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농업인 고충상담, 방과 후 학습지도
- 여성농업인 취미·교양교육, 지역민 문화·복지 활동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		-	-	-	39	5	44
‘11	7		-	-	-	8	1	9
‘12	7		-	-	-	8	1	9
‘13	7		-	-	-	8	1	9
‘14	7		-	-	-	8	1	9
‘15	7		-	-	-	8	1	9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7		-	-	-	8	1	9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를 개소 당 130백만원 지원)

※ 보육시설 미운영 센터(고성)는 90백만원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지원센터수	운영비 지원 센터 수	개소	7	7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적 수요 및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매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관계자(센터 대표, 시군 담당자) 간담회 개최 : 2회
- 사업추진상황 점검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박홍범
전화번호	055-268-1163	이메일	hong9866@korea.kr

1. 사업목표

○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격차 해소

○ 기숙형 고교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의 새로운 모델 창출

○ 추진근거

- 정부 시책(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교육감 공약사업(신개념 기숙형학교 운영 지원)

2. 사업내용

2013. 기숙사 운영학교 총 지원금(공립 18, 사립 24) : 3,292,598천원

○ 기숙형고 운영 지원(공립13, 사립7) : 2,506,290천원

- 기숙사운영프로그램 지원 : 786,000천원
- 사감보조인력 지원 : 645,240천원
-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 : 465,850천원
- 기숙사 공공요금 지원 : 609,200천원

○ 농어촌 기숙사운영학교 지원(공립5, 사립17) : 786,308천원

-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 : 301,308천원
- 기숙사 공공요금 지원 : 485,000천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10년 : 신규 기숙형고 10교 기숙사 건립비 및 비품비 387억원(국고 193억, 자체 194억), 기존 기숙형고 10개교 기숙사 운영비 12억원

○ ‘11년 : 20개교 기숙형고 운영 지원 21.96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지원 6.43억원

○ ‘12년 : 20개교 기숙형고 운영 지원 26.82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지원 7.27억원

○ ‘13년 : 20개교 기숙형고 운영 지원 25.06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지원 7.86억원

○ ‘14년 : 20개교 기숙형고 운영 지원 22.19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지원 8.72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380		32,151		52,531
‘10	10개교			19,300		20,600		39,900
‘11	42개교			392		2,447		2,839
‘12	42개교			688		2,721		3,409
‘13	42개교					3,292		3,292
‘14	42개교					3,091		3,091

※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합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42개교					3,292		3,292

※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전환으로 5억 추경 편성액 및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합산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학부모 만족도 : 100%, 학생 만족도 : 7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 지정 · 육성	학부모 만족도	(만족부모/입사생)*100%	%	85	85	100
	학생 만족도	(만족학생/입사생)*100%	%	85	70	82

- 입사생에 대한 강력한 생활지도로 인한 만족도 떨어짐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숙형고 선호도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

○ 미흡한 점

- 기숙형고에 대한 지속·안정적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기숙형고 지원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적극적 관심 부족

○ 건의사항

- 노후화되는 기숙사 시설 수선비의 별도 지원이 요구됨

2-1-5-1(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과학직업과 (평생교육팀) 초등교육과 (초등장학팀)	담당자	강선미, 정은영,최말숙
전화번호	055-268-1235	이메일	ksm9850@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9조, 제40조, 부칙 제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연중실시

○ 사업주체: 경상남도교육청/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학교도서관 등

○ 지원조건: 경남교육비특별회계 100%

○ 추진내용:

-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공모
-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프로그램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50			107		2,747		2,854
'11	104			39		564		603
'12	113			40		531		571
'13	115			40		554		594
'14	114			30		513		543
'15	115			예정불가		513		513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프로그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114			27		567		594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주민개방형 학교 마을도서관은 목표달성 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외계층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실적	수료인원수 / 등록인원수*100	수료율	70	70	100
	지원기관 수	지원기관수 / 대상기관수*100	지원비율	2.4	2.4	100
평생학습도시지원	지원기관 수	2013. 지원수	기관수	8	8	100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기관 수	2013. 지원수	기관수	10	10	100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지원기관 수	2013. 지원수	기관수	10	1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함
-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화에 대한 지원이 2012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미흡한 점

- 농번기에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함.
- 농어촌 지역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가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

○ 건의사항

- 지자체나 그 지역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강사 육성 과정 개설 희망

2-3-2-4(계속)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설립추진단	담 당 자	정혜선 주무관
전화번호	055-268-1437	이메일	hyesunj@korea.kr

1. 사업목표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 교외활동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총사업비 : 97억원

○ 사업규모

- 통학버스 지원 : 초등학교(201교 340대),
  중학교(22교, 26대)
- 통학비·하숙비 : 초등학교(통학비 : 153명, 하숙비 : 24명)
  중학교(통학비 : 175명, 하숙비 : 2명)

○ 지원형태 : 차량운영비, 차량구입비, 용역비, 통학편의 확대 운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통학비 및 하숙비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사업시행주체 : 경상남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통학버스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61					611		611
'12	395					105		105
'13	387					116		116
'14	390					125		125
'15	393					130		130
'16	396					135		13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3	366					97		97

○ 통학비·하숙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통학비	하숙비	통학비	하숙비	
금액	245,216	81,000	140,949	6,000	473,16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비·하숙비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통폐합학교 통학버스(비) 지원 비율	통학버스(비) 지원학교/통폐합 학교수	%	100	100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타교학생들을 위한 통학편의 확대
- 통학버스 통합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의 30% 추가 지원
-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지원

○ 미흡한 점

2-3-1-1(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진우근
전화번호	055-211-3614	이메일	woo4245@korea.kr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담 도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시·군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540					28,049		28,049
'11	8,296					7,531		7,531
'12	7,740					7,429		7,429
'13	6,972					6,982		6,982
'14	7,532					6,107		6,107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계	19,126					16,089		16,089
'11	6,973					6,224		6,224
'12	5,806					5,174		5,174
'13	6,347					4,691		4,69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지원인원 기준 9% 감소

- 목표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은 학자금 지원대상 고교생 감소에 따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계획인원대비 지원인원	계획대비 지원실적	%	100	91.0	91.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2-3-2-2(계속)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진우근
전화번호	055-211-3614	이메일	woo4245@korea.kr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및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남자영고 재학생

○ 추진절차 : 경남자영고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도 교육청, 경남자영고)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준비 → 예산지원(도 → 도 교육청 → 해당학교) → 사업시행 및 정산

○ 지원금액 및 형태 : 재학생 급식비 지원(중식 및 조·석식)

○ 지원조건 : 지방비 100%(도비 50%, 교육청 50%)

○ 사업시행주체 : 경상남도교육청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60					1,532		
'10	220					290		
'11	220					290		
'12	230					330		
'13	235					330		
'14	255					29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계	905					1,240		
'10	220					290		
'11	220					290		
'12	230					330		
'13	235					33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지원인원 기준 목표대비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계획인원대비 지원인원	계획대비 지원실적	%	100	100	100

16. 제주특별자치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강 미 애
전화번호	064-710-2932	이메일	kmaas68@korea.kr

1. 사업목표

○ 취약계층의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대 상 자 : 25,000명

○ 사업예산 : 1,305백만원(국비 653, 지방비 652)

○ 사업내용

- 전담인력 지역 담당제 실시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지역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가노인 및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 영위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8,000	-	-	-	3,232	3,337	-	6,569
'10	25,000	-	-	-	698	698	-	1,396
'11	25,000	-	-	-	698	698	-	1,396
'12	25,000	-	-	-	653	652	-	1,305
'13	25,000	-	-	-	653	652	-	1,305
'14	18,000	-	-	-	530	637	-	1,167

* 단위 : 억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5,000	-	-	-	698	698	-	1,396
'11	25,000	-	-	-	698	698	-	1,396
'12	25,000	-	-	-	653	652	-	1,305
'13	23,042	-	-	-	653	652	-	1,30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원계획/지원실적	지원계획/지원실적	%	25,000	25,000	100

1-3-3-7(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 당 자	오 용 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 메 일	yhoh68@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 및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 학습 지도

○ 농한기 교육 강좌, 문화활동과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교류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 업 비('13) : 929백만원(지방비 790, 자부담 139)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센터

○ 사업규모 : 8개소(함덕, 성산, 하원, 안덕, 대정, 김녕, 애월, 한경)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 농업·농촌의 체험과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추진

○ 사업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어업인의 생활전반과 농작업, 자녀교육 등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 독서 및 생태교실 운영, 오름등반 등 여성농업인 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 영·유아 보육활동 등

- (임의사업)

·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체험

·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산야초 연구활동 지원

· 주말을 이용한 368개 제주오름 탐방행사 지원

· 효소·유용미생물 등의 제조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또는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사업 시행

○ 기타 농업·농어촌체험사업 등을 임의적으로 읍·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유도

<'13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	-	-	-	790	139	929
제주	8	-	-	-	-	790	139	929

※ '13년도 시행계획을 각 시·도별로 기재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	-	-	-	790	139	929
제주	8	-	-	-	-	790	139	92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추진 실적	개소	8	8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여성농업인의 영농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으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미흡한 점

- 호봉 상승, 운영비 등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건의사항

- 농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심체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가 보다나은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50%)를 국비에서 지원요망

2-3-1-1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오 용 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사업목표

○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가 부담경감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2～12월

○ 대 상 자 : 2,800명

○ 사업예산 : 3,340백만원(분권 1,002, 지방비 2,338)

○ 사업내용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시행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00	-	-	-	6,111	11,546	-	17,657
'10	3,500	-	-	-	1,084	2,475	-	3,559
'11	3,500	-	-	-	1,223	2,595	-	3,818
'12	3,000	-	-	-	1,800	1,800	-	3,600
'13	2,800				1,002	2,338	-	3,340
'14	2,800	-	-	-	1,002	2,338	-	3,340

* 단위 : 억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3,494	-	-	-	1,084	2,475	-	3,559
'11	3,495	-	-	-	1,223	2,595	-	3,818
'12	3,495	-	-	-	1,080	2,520	-	3,600
'13	2,350	-	-	-	716	1,671	-	2,387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원계획/지원실적	지원계획/지원실적	%	2,800	2,350	84

2-3-2-2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오 용 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사업목표

○ 자영생명산업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2～12월

○ 대 상 자 : 207명

○ 사업예산 : 148백만원(분권 37, 지방비 37, 교육청 44, 자담 30)

○ 사업내용 :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 시행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 11. 3)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국무회의 의결 확정(1985년 2월)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00	-	-	-	6,111	11,546	-	17,657
'10	209	-	-	-	41	41	89	171
'11	220	-	-	-	48	48	96	192
'12	212	-	-	-	42	42	83	167
'13	207				37	37	73	147
'14	207	-	-	-	37	37	73	147

* 단위 : 억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209	-	-	-	36	36	70	142
'11	212	-	-	-	40	40	78	158
'12	211	-	-	-	33	33	65	131
'13	185	-	-	-	33	33	73	139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지원실적	지원계획/지원실적	%	207	185	90

2-3-2-4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친환경농정과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농업경영	담당자	오 용 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사업목표

○ 도내 농어촌 고등학교(읍·면지역 소재)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통학편의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9월~2014년 2월

○ 사 업 비 : 350백만원(지방비)

- 집 행 액 : 111백만원·10개교*

*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 함덕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성산고, 대정고, 대정여고, 표선고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내용 : 농어촌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 도비를 확보하여 교육청 배정, 사업 추진 상황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검사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별 배정, 사업 추진상황 감독 및 사업 결과 정산

- 학 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 읍·면지역 고등학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함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00	-	-	-	-	1,050	-	1,050
'13	2,400	-	-	-	-	350	-	350
'14	4,800	-	-	-	-	700	-	700

* 단위 : 억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3	504					111	-	111

-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2학기) 교통비 지급으로 사업실적 저조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학생 수/지원실적	농어촌지역학생 수/지원실적	%	2,400	504	21

-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2학기) 교통비 지급으로 사업실적 저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농어업인의 실질적 도움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미흡한 점

- 통학생 중 농어업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적어 지원 안되는 경우가 많음

⇒ 지원대상을 농어촌학교 통학생(통학버스)로 확대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 농어업인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신청을 꺼려함

⇒ 홍보활동 강화로 농업경영체 등록 유도

○ 건의사항

- 농어촌지역 학교의 통학버스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1,400백만원이 소요되므로, 국비 지원 요망

17. 세종특별자치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세종시 보건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 당 자	변향순
전화번호	044-301-2124	이메일	hrja1117@korea.kr

1. 사업목표

○ 의료이용 접근성이 비교적 낮고 빈곤,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

○ 총사업비 : 210백만원(기금 97백만원, 시비 113백만원)

○ 사업규모 : 3,100가구

○ 지원형태 : 국고보조(기금)

○ 지원조건 : 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보건소의 방문전문인력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각종 보건프로그램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4,444	-	-	-	80	100	-	180
'11	2,523	-	-	-	80	100	-	180
'12	3,422	-	-	-	98	107	-	205
'13	3,100	-	-	-	97	113	-	210
'14	3,150	-	-	-	98	165	-	263

* 단위 : 억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444	-	-	-	80	100	-	180
'11	2,523	-	-	-	80	100	-	180
'12	3,422	-	-	-	98	107	-	205
'13	3,300	-	-	-	97	113	-	210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3년도에는 3,100가구를 목표로 하여 3,158가구를 등록하여 101.8%를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대상가구등록	등록가구수	3,100가구	가구	3,100	3,158	101.8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세종시 출범이후 증가하는 농어촌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냄

- 확대된 읍면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규등록하여 대상자를 관리함으로써 소외된 의료 계층의 건강서비스 기회를 확대함

- 농어촌의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운동, 영양, 구강관리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증진강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미흡한 점

- 연초에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다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14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운영할 계획

- 인력 부족으로 보다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 관내 전 지역의 주민이 보건교육의 경험 및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유지

2-1-3-1(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 당 자	한 경 희
전화번호	044-300-3143	이메일	matilda@korea.kr

1. 사업목표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월

○ 지원실적

- 관내 기숙형 고교현황 : 세종고등학교
- 지원내용 : 기숙형 고교 운영비(급식비) 120,000천원

○ 그 외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 대상학교 : 조치원여자고등학교
- 지원내용 :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공공요금, 시설보수) 50,000천원.
  주말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0천원

○ 관련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관내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 및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0		620
'12	2개소					180		180
'13	2개소					185		185
'14	2개소					255		255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2개소					180		180
'13	2개소					185		18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급식비 지원 : 목표 : 120백만원 → 실적 : 120백만원
- 운영비 지원 목표 : 65백만원 → 실적 : 65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	지원액	백만원	120	120	100
	기숙사운영지원	지원액	백만원	65	6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전년대비 지원액 증가,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 미흡한 점

- 기숙형 고교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열악

○ 건의사항

-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필요

2-1-5-1(신규/계속)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담 당 자	박 송 미
전화번호	044-300-3142	이메일	ssong7807@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통기타스케치, 실버외국어교실 등 총 13개 프로그램 운영
- 2013. 4 ~ 12월 / 39백만원

○ 세종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 2013. 1~12월 / 20백만원

○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 2013. 1 ~ 12월 / 20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 '14년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추진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7		237
'12	4					75		75
'13	15					81		81
'14	17					81		81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4					75		75
'13	15					81		81
'14	17					81		81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기반 확충 프로그램 운영 : 목표 15개 → 실적 15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평생교육 기반 확충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수	개	15	15	10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노력

○ 미흡한 점

- 광역자치 행정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행·재정적 지원 미흡

○ 건의사항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확대 필요

2-3-1-1(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담 당 자	담당 전병선
전화번호	044-300-4311	이메일	jbs0474@korea.kr

1. 사업목표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으로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 총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9,802백만원)

○ 사업규모 : ('13) 683명 / 172백만원(시비 172)

○ 지원형태 : 장학금 및 학자금

○ 지원조건 : 분권 56%, 시비 44%

○ 사업시행주체 : 세종시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700					419		419
'11	900					210		210
'12	900					280		280
'13	1,000					280		280
'14	1,000					372		372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1,687					419		419
'11	847					210		210
'12	870					280		280
'13	683					175		17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추진실적 : 관내 농업인자녀 683명, 175백만원 지원(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 도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고고생자녀 학자금지원	학자금지원학생수	(학자금지원학생수/예산계획서상 지원학생수)×100	명	1,000	683	68%

5. 자체평가

○ 세종시 출범에 따른 농업인 감소로 지원대상 학생 감소

2-3-2-4(계속)	농산어촌 학교버스 지원(세종시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학교지원팀)	담 당 자	이창희
전화번호	044-320-1012	이메일	adtime@korea.kr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교육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2014

○ 사업주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추진체계 : 예산지원(교육청)-학교버스 운영(각급학교)

○ 추진내용

- 읍·면지역 이하의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버스 총 32대 지원
- 통학버스 안전 도우미 수당 : 16개교

○ 추진근거 : 교육감 공약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					2,840		2,840
'12	22					740		740
'13	29					751		751
'14	25					581		581

※ 사업규모 : 당해 연도 전체 차량수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2	22					740		740
'13	32					1,305		1,305

4.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노후버스 교체로 인한 예산액의 증가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버스 확대 배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학교버스지원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	계획대비 실적	대	29	32	11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잘된 점

- 학교버스 배치교와 인근 학교간 학교버스의 공동활용으로 학교버스의 활용이 증대됨

○ 미흡한 점

- 학교버스 배치교 학생이라도 모든 학생이 학교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상대적인 소외감 발생

○ 건의사항

- 학교 등·하교 시간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농어촌 지역에 확대 조정하여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